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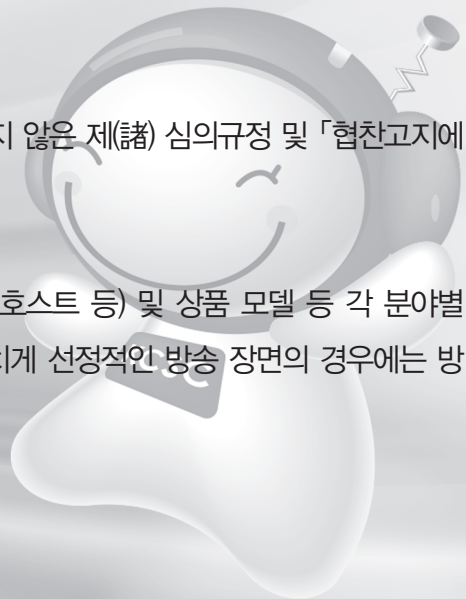
The Deliberations of 2013 Broadcasting Contents

방송심의 사례집

2014. 2

일 러 두 기

1. 본 사례집에 수록된 2013년 심의·의결 현황과 방송심의사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현황과 사례임.
2. 지상파방송 심의사례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의 조항 순에 따라, TV·라디오·지상파DMB의 순으로 수록하되, 같은 조 내에서는 ‘권고’부터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까지 제재수준 순으로 배열함.
3. 유료방송 심의사례는 ‘보도교양부문’과 ‘연예오락부문’으로 나누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의 조항 순에 따라, PP·SO·위성방송사업자의 순으로 수록하되, 같은 조 내에서는 ‘권고’부터 ‘과징금’까지 제재수준 순으로 배열함.
4.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심의사례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의 조항 순으로 수록하되, 같은 조 내에서는 ‘권고’부터 ‘경고’까지 제재수준 순으로 배열함.
5. 본 사례집에 수록된 각 사례에 직접 적용되지 않은 제(諸) 심의규정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조항 등은 수록하지 않았음.
6. 연예인, 방송인(아나운서·기자·MC·쇼핑호스트 등) 및 상품 모델 등 각 분야별 유명인 등을 제외한 일반인 출연자와 지나치게 선정적인 방송 장면의 경우에는 방송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수록함.



I

심의현황

◆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07
◆ 유료방송 심의현황	16
◆ 상품판매방송 · 방송광고 심의현황	25

II

심의사례

◆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31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109
◆ 유료방송 심의사례(보도교양부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117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203
◆ 유료방송 심의사례(연예오락부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209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281
◆ 상품판매방송 심의사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287
◆ 방송광고 심의사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위반	319

I 심의현황

- ◆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 ◆ 유료방송 심의현황
- ◆ 상품판매 및 방송광고 심의현황



지상파방송 심의현황

1. 지상파방송 심의동향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82건의 제재조치와 164건의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의결했다.

〈표 1〉 2013년 지상파방송 제재조치·권고 현황

(단위: 건)

		보도교양		연예오락		소 계		계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제 재 조 치	징계및경고	3	1	6	1	9	2	11
	경 고	7	3	10	3	17	6	23
	주 의	14	5	21	8	35	13	48
	소 계	24	9	37	12	61	21	82
	권 고	45	29	43	47	88	76	164
	계	69	38	80	59	149	97	246

이를 방송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의 경우 제재조치가 33건, 권고가 74건이었고, 연예오락 부문의 경우 제재조치가 49건, 권고가 90건이었다. 매체별로는 제재조치의 경우 텔레비전방송에 대해 61건, 라디오방송에 대해 21건이 의결됐고, 권고의 경우 텔레비전방송에 대해 88건, 라디오방송에 대해 76건이 의결됐다.

1] 이하에서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12.4.22~'13.1.18)와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13.2.12~'13.5.24)의 심의·의결 내역을 제외함. 참고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13년에 '경고' 1건, 권고 1건을 의결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경고' 1건, '주의' 1건, 권고 2건을 의결했음.

방송 부문별 제재조치 의결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도교양 부문에 대한 제재 조치 총 33건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4건, '경고'가 10건, '주의'가 19건을 차지했다. 연예오락 부문에 대한 제재조치 총 49건 중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7건, '경고'가 13건, '주의'가 29건이었다.

제재조치 의결 세부 내역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텔레비전방송의 경우 총 61건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9건, '경고'가 17건, '주의'가 35건이었고, 라디오방송의 경우에는 총 21건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2건, '경고'가 6건, '주의'가 13건이었다.

전년도인 2012년과 비교해보면, 제재조치(64건 \Rightarrow 82건)와 권고(132건 \Rightarrow 164건) 의결 건수가 모두 증가함에 따라 전체 제재조치·권고 의결 건수는 25.5%(196건 \Rightarrow 246건) 증가했다.

이를 다시 방송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의 경우 제재조치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던 데(30건 \Rightarrow 33건) 반해, 연예오락 부문의 경우에는 크게 증가했다(34건 \Rightarrow 49건). 매체별로는 텔레비전방송(54건 \Rightarrow 61건)보다 라디오방송(10건 \Rightarrow 21건)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역시 제재조치와 마찬가지로, 보도교양 부문에서는 전년도와 유사한 의결 건수(72건 \Rightarrow 74건)를 나타낸 반면, 연예오락 부문에서는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60건 \Rightarrow 90건), 매체별로도 텔레비전방송(85건 \Rightarrow 88건)보다 라디오방송(47건 \Rightarrow 76건)에 대한 의결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지상파방송 제재조치·권고 심의·의결 현황을 최근 3년간의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연도별 건수는 2011년 187건에서 2012년 196건, 2013년 24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텔레비전방송 부문은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151건 \Rightarrow 139건 \Rightarrow 149건)한데 반해, 라디오방송 부문의 의결 건수가 꾸준히 증가(36건 \Rightarrow 57건 \Rightarrow 97건)한데 따른 것이다.

<표 2>는 2013년 지상파방송의 사유별 심의·의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고효과와의 제한'(방송심의규정 제46조: 62건, 19.4%) 조항 위반이 전년도(22.2%)에 이어 2013년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품위 유지'(방송심의규정 제27조: 30건, 9.4%) 조항, '수용수준'(방송심의규정 제44조: 30건, 9.4%) 조항, '객관성'(방송심의규정 제14조: 29건, 9.1%) 조항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순위는 다소 바뀌었으나 상위 4개 위반 조항은 동일했다. 그 외 ‘협찬고지규칙 위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28건, 8.8%)과 ‘유료정보서비스’ (방송심의규정 제54조; 17건, 5.3%) 조항의 순위가 상승했는데, 주로 라디오방송에서의 위반 건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표 3〉은 2013년 지상파방송사별 제재조치·권고 심의·의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재조치·권고 심의·의결 건수가 가장 많은 방송사는 지역 계열사를 포함한 (주)문화방송으로 87건이었으며, 한국방송공사가 51건, (주)에스비에스가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 계열사를 제외한 경우에도,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주)문화방송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지상파방송 3사를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제재조치·권고의 심의·의결 총 건수는 한국방송공사만 감소(57건 ⇒ 51건)했고, (주)문화방송(63건 ⇒ 87건)과 (주)에스비에스(34건 ⇒ 42건)는 모두 증가했다. 심의·의결 유형별로는, 제재조치의 경우, 한국방송공사와 (주)에스비에스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주)문화방송은 상당히 증가(20건 ⇒ 29건)했다. 권고의 경우에는 (주)문화방송(43건 ⇒ 58건)과 (주)에스비에스(17건 ⇒ 24건)는 증가했으며, 한국방송공사(40건 ⇒ 34건)는 다소 감소했다.

〈표 2〉 2013년 사유별 지상파방송 제재조치 · 권고 현황²⁾

(단위 : 건, %)

종류	부문	보도교양		연예오락		소 계		누 계	비율(%)
		TV	R	TV	R	TV	R		
광고효과제한		12	11	31	8	43	19	62	194
품위유지		6	4	10	10	16	14	30	94
수용수준		2	1	22	5	24	6	30	94
객관성		22	3	4	-	26	3	29	91
합찬고지규칙 위반		-	7	1	20	1	27	28	88
방송언어		1	1	9	6	10	7	17	53
유료정보서비스		-	4	-	13	-	17	17	53
사생활 보호		10	-	5	-	15	-	15	47
명예훼손 금지		9	1	1	-	10	1	11	35
공정성		7	3	-	-	7	3	10	31
어린이 · 청소년의 정서함양		1	-	7	-	8	-	8	25
윤리성		-	-	6	1	6	1	7	22
사상품		-	2	-	5	-	7	7	22
통계 및 여론조사		4	2	-	-	4	2	6	19
준법정신의 고취		2	-	4	-	6	-	6	19
폭력 묘사		-	-	5	-	5	-	5	16
비과학적 내용		4	-	-	-	4	-	4	13
오보정정		3	-	-	-	3	-	3	10
건강한 생활기풍		1	-	2	-	3	-	3	10
충격혐오		2	1	-	-	2	1	3	10
출처명시		1	-	1	-	2	-	2	06
사회통합		-	1	-	1	-	2	2	06
양성평등		-	1	1	-	1	1	2	06
문화의 다양성 존중		1	-	-	1	1	1	2	06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1	-	-	-	1	-	1	03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1	-	-	-	1	-	1	03
인권침해의 제한		-	-	1	-	1	-	1	03
생명의 존중		-	-	-	1	-	1	1	03
범죄 및 악물묘사		-	1	-	-	-	1	1	03
자연기법의 사용		1	-	-	-	1	-	1	03
의료행위		-	1	-	-	-	1	1	03
출연		-	-	1	-	1	-	1	03
정보전달		1	-	-	-	1	-	1	03
외국어 등		1	-	-	-	1	-	1	03
소 계		93	44	111	71	204	115		
총 계		137		182		319		319	100

〈표 3〉 2013년 지상파방송사별 제재조치·권고 현황

(단위 : 건)

방송사업자		제재조치(권고)	방송사업자	제재건수(권고)
한국방송공사	본사	16(22)	(주)광주방송	2(0)
	지역	1(12)	(주)대전방송	1(2)
(주)문화방송	서울	21(26)	(주)KNN	1(0)
	지역	8(32)	(주)강원민방	0(2)
(주)에스비에스		18(24)	(주)청주방송	0(2)
한국교육방송공사		2(0)	(주)전주방송	0(1)
CBS 경인TV(주)		0(3)	(주)울산방송	0(1)
(재)극동방송		6(4)	교통방송(TBN)	1(6)
(재)평화방송		2(2)	경인방송	1(2)
(재)CBS		0(13)	YTN	1(0)
(재)불교방송		0(4)	경기방송	0(3)
(재)원음방송		0(1)	서울시교통방송	0(2)
영주FM(공동체라디오)		1(0)		
총 계			82(164)	

〈표 4〉 지상파방송 3사 제재조치·권고 현황 비교(지역 제외)

(단위 : 건 %)

방송사업자	2012년		2013년	
	제재조치(권고)	비율(%)	제재조치(권고)	비율(%)
한국방송공사	16(33)	25.0(25)	16(22)	19.5(13.4)
(주)문화방송	12(31)	18.7(23.4)	21(26)	25.6(15.9)
(주)에스비에스	17(17)	26.6(12.9)	18(24)	22.0(14.6)
소 계	45(81)	70.3(61.3)	55(72)	67.1(43.9)
연간전체 제재건수	64(132)		82(164)	

2] 연간 1건당 복수의 위반 사유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 제재종류별 건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하의 유료방송·상품판매방송·방송광고 등에서도 동일함.

2. 지상파방송 심의 관련 특기사항

가. 허용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간접광고

2010년 도입된 ‘간접광고’는 현재 드라마를 비롯한 각종 오락프로그램과 음악프로그램 등에서 활발히 등장하고 있으며, 지상파방송 3사의 경우, 2010년 29억 7천만원, 2011년 174억 1천만원, 2012년 262억 5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매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광고 시장 성장의 이면에는 과도한 간접광고로 시청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방송의 상업화가 가속화돼 공적 매체인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이 훼손된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위원회는 이처럼 현행 법령을 위반해 방송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줌으로써,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저해하는 간접광고에 대해 ‘광고효과의 제한’ 조항을 적용해 심의하고, 위반 정도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간접광고의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등장인물이 상품의 고유한 기능이나 특수 기능 등을 시연에 가깝게 보여주는 방식, 대사나 과도하게 근접 촬영된 포스터의 홍보 문구 등을 통해 상품의 특징이나 장점을 언급하는 방식, 등장인물끼리 상품을 보여주며 구매나 이용을 서로 권유하는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제재조치 결정이 있었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MBC-TV <우리 결혼했어요>의 경우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을 방문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광고 문구와 관련 제품들을 노출하고 해당 매장의 특정 서비스(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신발을 직접 제작)를 체험하는 모습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의결됐다.

KBS-2TV <상어>의 경우에는 남녀주인공들이 간접광고 상품인 스마트폰의 특수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시연에 가깝게 노출하거나, 다른 간접광고 상품인 스마트TV의 동작인식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방송해 ‘경고’가 의결됐다.

또한 SBS-TV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는 남자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방문해 초콜릿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장 직원의 대사 등을 통해 간접광고주 상품의 특징·장점을 언급해, '주의'로 의결됐다.

이외에도 KBS-2TV <해피선데이 - 남자의 자격>, SBS-TV <일요일이 좋다 - 맨발의 친구들>, MBC-TV <섹션TV 연예통신> 등의 오락프로그램과 KBS-2TV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MBC-TV <보고싶다>, <엄마가 뭐길래>, SBS-TV <청담동 앨리스>, <가족의 탄생>, <원더풀 마마> 등 다수의 드라마들도 상품의 특수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시연에 가깝게 노출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의 특징이나 장점을 언급하는 등 법령에 위반되는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간접광고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경고', '주의' 등의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나. 편법적인 협찬 광고효과

위법한 간접광고와 함께, 방송의 급격한 상업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편법적인 협찬³⁾이다. 위원회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협찬주에게 과도한 광고효과를 줌으로써, 방송의 품격을 훼손하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저해한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제재했다.

제재조치가 결정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SBS-TV <다섯손가락>의 경우 등장인물이 협찬주 스마트폰의 특수 기능을 시연에 가깝게 사용하는 모습과 협찬주의 영양제를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의결됐다.

MBC-TV <보고싶다>와 SBS-TV <내 연애의 모든 것>의 경우에는 대사와 부자연스런 상황 설정 등을 통해 협찬주의 사업 또는 상품 브랜드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각각 '경고'와 '주의'가 의결됐고, KBS-2TV <상어>와 <비밀>에서는 등장인물이 일하는 곳으로 설정된 협찬주 매장의 메뉴 포스터 및 협찬주의 것과 유사한 형태의 로고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각각 '경고'와 '주의'가 의결됐다.

3) '협찬'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임. '협찬'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서는 정해진 고지방법 외의 방식으로 광고효과를 줄 수 없음.

그밖에 KBS-2TV <최고다 이순신>, <직장의 신>, <일말의 순정>, SBS-TV <내 사랑 나비부인>, <가족의 탄생> 등 다수의 드라마들도 협찬주를 주요 배경으로 설정해 주된 줄거리로 전개하거나, 협찬주명이나 상품명을 일부 변경해 인식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하고, 대사를 통해 협찬주나 상품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는 등 협찬주에게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방송돼, '경고'·'주의' 등의 제재조치가 의결됐다.

한편, 라디오방송의 경우에는 출연자가 해당 분야의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방송 소재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심의·제재가 이뤄졌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KFM(경기방송) <행복을 드리는 라디오 평생학습관>의 경우, 학습과 음악을 접목한 공부법을 소개하면서, 방송 주제를 출연자의 저서명과 거의 동일하게 하고, 매 회 출연자 소개 시 반복적으로 출연자의 저서명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가 의결됐고, 대전PBC(평화방송)-FM <생방송 평화를 빕니다>에서는 특정 병원의 건강검진센터 관계자가 출연해 소속 병원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해당 병원 건강검진 서비스의 특징·우수성·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권고가 의결됐다.

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프로그램의 선정성·폭력성

방송심의규정은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된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 등에서 어린이·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폭력적 내용이 지속적으로 방송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제재가 이뤄졌다.

제재조치가 결정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된 일일드라마인 MBC-TV <오로라 공주>의 경우 부부간의 성적인 대화 장면, 불륜관계의 딸에게 계모가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장면, 등장인물이 욕설이 섞인 대사를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의결됐다.

또한 SBS-TV <수상한 가정부>의 경우에는 7세 여아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반복된 자살 시도

장면과 어린이·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을, MBC-TV <여왕의 교실>에서는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장시간 구타하는 장면과 초등학생이 교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담임교사를 칼로 위협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해 각각 ‘경고’가 의결됐다.

MBC-TV <투윅스>의 경우에도 등장인물이 칼에 수차례 찔려 괴로워하며 살해당하는 장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해 ‘주의’가 의결됐고, KBS-2TV <미래의 선택>에서는 등장인물의 욕설 장면과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해 역시 ‘주의’가 의결됐다.

한편, 제재조치 수준의 위반은 아니나, 방송심의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해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 결정이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면, 남녀 간의 다소 과도한 애정행위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한 MBC-TV <남자가 사랑할 때>, KBS-2TV <비밀>, 여성 가수들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거나 선정적인 안무를 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방송한 SBS-TV <SBS 인기가요>, MBC-TV <쇼! 음악중심>, KBS-2TV <뮤직뱅크> 등에 대해 권고가 의결됐다.

3. 맺음말

최근 종합편성PP 등 유료방송에서 높은 시청률과 사회적인 화제를 불러일으킨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지상파방송의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평가가 자주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은 여전히 강력한 매체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청자들이 가장 즐겨 보는 매체라는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앞서 지적한 부적절한 간접광고, 편법적인 협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프로그램의 선정성·폭력성은 이러한 지상파방송의 위상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KBS·MBC 등 공영방송사가 포함된 지상파방송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공공성·공익성을 유지하고 공적책임을 다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것이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 향상도 모 등 「방송법」이 정한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심의현황

1. 유료방송 심의동향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유료방송⁴⁾에 대해 264건의 과징금·제재조치와 137건의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를 의결했다.

〈표 5〉 2013년 유료방송 과징금·제재조치·권고 현황

(단위 : 건)

	보고교양			연예오락			계	
	PP	SO	위성등*	PP	SO	위성등		
과징금	2	-	-	11	-	-	13	
제 재 조 치	프로그램 중지 및 징계	7	-	-	-	-	7	
	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1	-	-	1	-	2	
	프로그램 수정 및 경고	1	-	-	-	-	1	
	징계 및 경고	15	4	-	20	-	39	
	프로그램 중지	5	-	-	-	-	5	
	경 고	21	3	-	74	-	1	99
	주 의	26	10	-	62	-	-	98
	소 계	76	17	0	157	0	1	251
권 고**	45	23	-	67	2	-	137	
총 계	123	40	-	235	2	1	401	

* 위성등 : 위성, 위성DMB, IPTV, '방송과 유사한 정보' 포함

** 권고 : 「방송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시청등급 조정 요구' 포함

4) 여기서의 유료방송이란 지상파방송 외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방송심의의 대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 종계유선 방송, 전광판방송 등이 여기에 해당됨.

이를 방송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의 경우 과징금·제재조치가 95건, 권고가 68건이었고, 연예오락 부문의 경우 과징금·제재조치가 169건, 권고가 69건이었다. 매체별로는 과징금·제재조치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에 대해 246건, 종합유선방송(이하 'SO')에 대해 17건, 위성방송 등에 대해 1건이 각각 의결됐고, 권고의 경우 PP에 대해 112건, SO에 대해 25건이 각각 의결됐다.

방송 부문별 제재조치 의결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도교양 부문에 대한 과징금·제재조치 총 95건 중 과징금이 2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7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경고'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수정 및 경고'가 각각 1건,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19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가 5건, '경고'가 24건, '주의'가 36건 등이었다. 연예오락 부문에 대한 과징금·제재조치 총 169건 중에는 과징금이 11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경고'가 1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20건, '경고'가 75건, '주의'가 62건 등이었다.

제재조치 의결 세부 내역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PP의 경우 '과징금'이 13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7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경고'가 2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수정 및 경고'가 1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35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가 5건, '경고'가 95건, '주의'가 88건이었다. SO의 경우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4건, '경고'가 3건, '주의'가 10건, 위성방송 등의 경우에는 '경고'가 1건이었다.

이와 같은 심의·의결 동향을 전년도(2012년)와 비교하면, 전체 과징금·제재조치 의결 건수는 전년대비 상승(204건 ⇒ 26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도교양 부문에 대한 과징금·제재조치는 소폭 증가했고(84건 ⇒ 95건), 연예오락 부문의 경우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120건 ⇒ 169건). 또한, 매체별로 살펴보면, PP에 대한 과징금·제재조치는 큰 폭으로 증가했고(186건 ⇒ 246건), SO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18건 ⇒ 17건).

한편, 행정지도성 조치인 권고의 경우, 보도교양 부분은 증가한(56건 ⇒ 68건) 반면, 연예오락 부문에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78건 ⇒ 69건). 매체별로는 PP에서 증가한(95건 ⇒ 112건) 반면, SO에서는 감소했다(39건 ⇒ 25건)

이와 같은 유료방송 과징금·제재조치 심의·의결 현황을 최근 3년간의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연도별 전체 건수는 2011년 290건에서, 2012년 338건, 2013년에는 401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6〉은 2013년 유료방송에 대한 과징금·제재조치·권고 심의·의결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광고효과의 제한' (방송심의규정 제46조; 115건, 18.4%) 조항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품위 유지' (방송심의규정 제27조; 94건, 15.0%) 조항, '수용수준' (방송심의규정 제44조; 91건, 14.6%) 조항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품위유지' 조항 위반 건수(45건 ⇒ 94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도교양 부문에서 위반 건수가 크게 증가한데(10건 ⇒ 48건) 따른 것이다.

〈표 6〉 2013년 사유별 유료방송 과징금·제재조치·권고 현황

(단위 : 건, %)

	보도교양			연예오락			누계	비율
	PP	SO	위성등	PP	SO	위성등		
광고효과의 제한	23	26	-	64	1	1	115	18.4
품위유지	40	8	-	46	-	-	94	15.0
수용수준	10	-	-	80	1	-	91	14.6
성표현	-	-	-	44	-	-	44	7.0
방송언어	3	1	-	26	-	-	30	4.8
건전한 생활 기풍	10	-	-	16	-	-	26	4.2
객관성	19	-	-	6	-	-	25	4.0
충격·혐오	9	-	-	15	-	-	24	3.8
폭력묘사	1	-	-	22	-	-	23	3.7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및 표시규칙 (등급분류기준)	-	-	-	17	-	-	17	2.7
명예훼손 금지	15	-	-	2	-	-	17	2.7
비과학적 내용	12	-	-	3	-	-	15	2.4
협찬고지규칙 위반	2	2	-	10	-	1	15	2.4
공정성	10	-	-	-	-	-	10	1.6
사생활 보호	3	4	-	2	-	-	9	1.4
심의결과의 존중	1	-	-	5	-	1	7	1.1
준법정신의 고취	4	-	-	2	-	-	6	1.0

	보도교양			연예오락			누계	비율
	PP	SO	위성등	PP	SO	위성등		
상품판매	5	-	-	-	-	-	5	08
범죄 및 악물 묘사	5	-	-	-	-	-	5	08
유료정보서비스	4	-	-	-	-	-	4	06
의료행위	1	-	-	3	-	-	4	06
출연	-	-	-	4	-	-	4	06
정보전달	4	-	-	-	-	-	4	06
윤리성	2	-	-	2	-	-	4	06
어린이·청소년의 정서함양	1	-	-	3	-	-	4	06
양성평등	2	-	-	2	-	-	4	06
재연기법의 사용	3	-	-	-	-	-	3	05
생명의 존중	1	-	-	2	-	-	3	05
방송광고의 제한	-	-	-	2	-	-	2	03
방송의 공적책임	2	-	-	-	-	-	2	03
통계 및 여론조사	2	-	-	-	-	-	2	03
사회통합	-	-	-	1	-	-	1	02
중계방송	-	-	-	1	-	-	1	02
시상품	-	-	-	1	-	-	1	0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	-	-	1	-	-	1	02
문화의 다양성 존중	1	-	-	-	-	-	1	02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조 (법규정의 준수)	1	-	-	-	-	-	1	02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공정성)	1	-	-	-	-	-	1	02
소 계	197	41	0	382	2	3	625	100
총 계	238			387			625	100

2. 유료방송 심의 관련 특기사항

가. 종합편성PP에서의 공정성·객관성 등

2012년 대통령선거 방송을 기점으로 종합편성PP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출연자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개진하는 시사·토크 프로그램이 다수 편성되고, 이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거나 일방의 입장만을 전달하는 등 공정성·객관성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는 탈북자들이 출연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전언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당시 남파 특수군이 침략했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의결됐다.

또한 JTBC <미각스캔들>의 경우 콩고기의 불투명한 제조 과정과 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장 내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제조과정과 첨가물 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가 의결됐다.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의 경우에는 총리 후보자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진행자가 단정적으로 발언하고,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소장 재임시절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을 아들의 병역 문제와 연관 지어 이야기하는 내용을 방송해 '주의'가 의결됐다.

나. 사생활 보호 및 명예훼손

시청률 경쟁이 심화되면서, 취재과정 중 개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내용을 방송해 사생활·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자극적인 표현과 부적절한 비유 등을 사용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제재조치 등이 의결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TV조선 <문갑식의 신통방통>에서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배우 아들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배우가 어린 나이에 아들을 낳아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수정 및 경고’가 의결됐다.

MBN <MBN 뉴스 8>의 경우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가족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전 대변인 아내의 울음소리 등 해당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가 의결됐다.

다. 방송의 품위유지 · 방송언어 등

오늘날 어린이 ·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방송 시청이 늘어나는 등 시청행태의 변화가 보편화되고 있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뿐 아니라, 모든 방송 시간대에 방송의 품위를 해치는 언어와 표현은 최대한 지양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은 어린이 ·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시청자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연예 · 오락프로그램 등에서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내용들에 대해 다수의 제재조치 등이 의결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tvN <SNL 코리아 4>에서는 출연 연예인이 어린이의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고, 어린이들과 베개싸움을 하면서 어린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며, 아이들에게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지시한 후 달아나는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어린이와 함께 여성의 치마를 들춰 치마 속을 바라보는 장면 등을 방송해 ‘과징금(일천만원)’이 의결됐다.

또한, m.net <슈퍼스타K4>의 경우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자가 성기를 연상시키는 가사가 포함된 성인 에로가요(쓰세지 타령)를 부르는 장면을, D.ONE <기막힌 외출 네버다이 : 시즌6>의 경우에는 출연자들이 상대방에게 강제로 흡을 먹이거나, 기저귀를 채우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지나치게 가학적인 장면을 방송해 각각 ‘경고가 의결됐다’.

MBC SPORTS+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에서도 프로야구 경기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에서, 관중의 상의에 욕설이 적힌 장면을 생방송 · 재방송으로 여과 없이 방송해 ‘경고’가 의결됐다.

그 밖에도 JTBC <대한민국 교육위원회>에서는 출연자들이 속칭 '이쁜이 수술'에 대해 거론하며 한 출연자가 본인의 배우자에게 이 수술을 시켰다고 발언하고, 수술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해 '주의'가 의결됐다.

라. 영화 프로그램 등의 선정·폭력성

위원회는 2013년에 지나치게 잔혹한 살상 장면이나 과도한 폭력묘사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포함된 영화 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특히, 그러한 내용을 어린이·청소년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청소년시청시간대에 낮은 연령 등급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심의·제재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OCN <박쥐>에서는 흡혈귀가 된 신부(神父)가 친구의 아내와 기성을 내며 성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손목과 혀를 유리조각으로 그어 친구아내에게 피를 먹이는 장면 등을, OCN <비밀리에(愛)>의 경우에는 유부녀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와 전라상태에서 기성을 지르며 성행위를 하는 등 부도덕하고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해 각각 '경고'가 의결됐다.

또한, 씨네프 <크레이지 핸드>의 경우 원형 톱날에 잘린 머리가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는 장면이나, 등장인물이 자신의 오른손을 칼로 절단하는 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해 '주의'가 의결됐다.

그밖에도, 궁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그린 영화프로그램인 스크린 <후궁 : 제왕의 첩>, 남편의 외도로 별거하게 된 여자주인공이 포르노비디오를 배달하는 청년과 성관계를 맺고, 이후 청년과의 성관계가 찍힌 비디오로 협박을 받게 돼 포르노배우로 전락하게 되는 내용 등에서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을 방송한 Mplex <도색부인>에 대해, 각각 '경고'가 의결됐다.

마. 광고효과의 제한

선정·폭력성과 함께 유료방송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특정 상품·브랜드 등을 노출시키는 '광고효과의 제한' 규정 위반이다. 특히, 2013년에는 생활·경제·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서 '광고효과의 제한' 위반으로 다수의 과징금·제재조치가 의결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에서는 출전선수들(6명)과 다수의 응원단원이 협찬주의 명칭과 상품명 등이 적힌 모자와 의상 등을 착용하고 있는 장면 등을 장시간 여과없이 방송해 '과징금(삼천만원)' 이 의결됐다.

J Golf <Volvik 제4회 동호회 챔피언십>에서는 출연자들이 협찬주명이 새겨진 모자·티셔츠·자켓 등을 착용하고, 협찬주명이 새겨진 입간판과 티마커를 배경으로 티샷을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과징금(이천만원)' 이 의결됐다.

또한, 이데일리TV <시장을 즐겨라! 증시와 樂 1, 2부>에서는 주식전문가가 사이트 명칭 및 주소를 컴퓨터 커버에 부착해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자신의 저서를 노출하며 그 내용을 장시간 설명하거나, 자신의 주소 등을 하단 자막과 함께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해 '과징금(이천만원)' 이 의결됐다.

이밖에도, 특정 화장품의 기능을 노골적으로 강조하면서 제품명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특정 성형기술의 효능만을 강조하고, 출연한 의사의 가운을 통해 해당 병원명을 노출한 ETN <심은진의 Feeling up>과 특정 식당의 상호명·메뉴명을 자막과 내레이션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프로그램의 흐름을 방해하는 노골적인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MBC MUSIC, MBC Every1, MBC Queen, MBC 드라마넷의 <손담비의 뷰티풀데이즈>에 대해 각각 '과징금(일천만원)' 이 의결됐다.

3. 맺음말

최근 유료방송은 다수의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를 선보이며 주목받는 등 수십 년간 방송시장에서 입지를 지켜온 지상파방송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공정성·객관성이나 방송의 품위와 같은 공적매체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려, 종종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료방송이 더욱 치열해진 방송시장에서 시청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적매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시청자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품격 있는 프로그램들을 방송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 역시 시청자의 정서함양과 정보제공 등 방송의 순기능이 더욱 확대되도록 사후심의를 물론, 방송사 자체심의를 내실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심의현황

1.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심의동향

위원회는 2013년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과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한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해 131건의 제재조치, 119건의 권고를 의결했다.

〈표 7〉 2013년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제재조치·권고 현황

(단위 : 건)

의결현황		부문	상품판매방송	방송광고	계
		제 재 조 치	경고		2
주의			22	73	95
소계			24	107	131
권고			36	83	119
총계			60	190	250

이를 방송 부문별로 살펴보면, 상품판매방송의 경우 제재조치가 24건, 권고가 36건이었고, 방송광고의 경우 제재조치가 107건, 권고가 83건이었다. 전년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전체 제재조치 의결건수(103건 ⇒ 131건)와 권고 의결건수(76건 ⇒ 119건)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부문별 제재조치 및 권고 의결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판매방송의 경우 제재조치 총 24건 중 ‘경고’가 2건, ‘주의’가 22건을 차지했는데, 이를 2012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 제재조치 건수는 10건이 감소했고(34건 ⇒ 24건), 과징금 및 제재조치 병과와 같은 중징계(3건 ⇒ 0건)와 그 밖의 제재조치 모두 감소(32건 ⇒ 24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권고의 경우는 2012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28건 ⇒ 36건). 최근 3년간의 과징금·제재조치·권고 전체 의결 건수 또한 2011년 52건에서 2012년에 63건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60건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광고의 경우 제재조치 총 107건 중 ‘경고’가 34건, ‘주의’가 73건이었는데, 이를 2012년과 비교해 보면, 전체 제재조치 건수는 38건이 증가했고(69건 ⇒ 107건), ‘해당 방송광고의 중지’ 등의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으며(7건 ⇒ 0건), ‘경고’와 ‘주의’가 각각 19건(15건 ⇒ 34건)과 26건(47건 ⇒ 73건) 증가했다. 권고의 경우에는 35건이 증가했다(48건 ⇒ 83건). 최근 3년간의 제재조치·권고 전체 의결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172건에서 2012년 117건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에 다시 19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8〉은 2013년도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등에 대한 사유별 심의·의결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진실성’ 관련 조항(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5조, 방송광고심의규정 제18조)을 위반한 경우가 전년도와 같이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각 73.8%, 62.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성’ 위반에 따른 심의·의결 건수와 비중을 2012년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상품판매방송은 13건 증가하고(32건 ⇒ 45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32.8%p(41% ⇒ 73.8%) 증가했으며, 방송광고도 44건(75건 ⇒ 119건)이 증가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0.9%p(51.4% ⇒ 6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판매방송 부문에서는 ‘진실성’ 위반 다음으로, ‘비교의 기준’(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34조) 조항, ‘소비자보호’(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6조) 조항,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15조) 조항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원산지 등 표시’(상품판매방송심의규정 제14조) 조항 위반의 경우 전년도에는 9건이었던데 반해, 2013년에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표 8〉 2013년 사유별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제재조치·권고 현황

(단위: 건 %)

사유	부문	상품판매방송		방송광고	
		계	비율	계	비율
진실성		45	738	119	623
어린이·청소년		-	-	9	47
품위		-	-	6	31
소비자보호		3	5	-	-
청약철회 등의 고지		1	1.6	-	-
비교의 기준		8	13.1	-	-
경품류 및 할인특매		-	-	11	58
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2	3.3	-	-
언어		-	-	5	26
음악		-	-	13	68
화장품		-	-	1	0.5
의료기기		1	1.6	-	-
건강보조기구		1	1.6	-	-
건강기능식품		-	-	2	1.1
대부·상조·보험		-	-	2	1.1
여행·관광		-	-	1	0.5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	-	10	52
방송광고시간의 제한		-	-	5	26
방송광고의 제한		-	-	7	37
총 계		61	100	191	100

한편, 방송광고 부문에서는 ‘진실성’ 위반 다음으로, ‘음악’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2조) 조항, ‘경품류 및 할인특매’ (방송광고심의규정 제24조),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방송광고심의규정 제6조) 조항 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음악’ 조항 위반의 경우 전년도에는 위반 사례가 없었던데 반해, 2013년에는 13건으로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송광고 부문에서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조항 위반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화제가 되는 방송프로그램을 광고에 활용하는 일명 ‘패러디 광고’가 인기를 끌게 되면서, 방송사가 해당 프로그램 직전·후 또는 중간광고에 이를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 심의 관련 특기사항

가. 허위·과장 내용에 대한 심의

상품판매방송 및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해야 하며, 시청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는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 제품의 성분, 효능 등에 있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개인적 사례를 일반화 시키는 내용에 대한 엄격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제재조치 등을 의결했다.

상품판매방송에서는 해당 방송일 이후 더 많은 구성으로 방송되거나, 방송 종료 후 방송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동일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방송엔 이 구성보다 적다’, ‘오직 방송중’ 등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한 롯데홈쇼핑 <실크테라피>에 대해 ‘경고’가, NS홈쇼핑 <세제혁명 지엘>, 홈앤쇼핑 <싱거 미싱 2250>에 대해서는 ‘주의’가 의결됐다.

또한, 상품판매방송에서 정수기, 가스레인지, 온수매트, 화장품 등에서 자사 상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동종·유사 상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한 사례도 다수 적발돼 GS SHOP <LG 헬스케어 정수기>, <동양매직 가스레인지>, CJ오쇼핑 <스팀보이 온수매트>에 대해 ‘주의’, 롯데홈쇼핑 <삼원온스파 온수매트>, <제트솔레 썬 스프레이>, 홈앤쇼핑 <미네랄 썬킬>, NS홈쇼핑 <에르페 썬컷 미네랄 파우더>에 대해서는 권고가 각각 의결됐다.

한편, 방송광고의 경우에는 이용 시즌에 따라 여행상품의 가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일부에만 적용되는 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고, 상품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비용 및 숙박 기준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리빙TV <제주 명품 2박3일 여행> 방송광고에 대해 ‘경고’, 연봉에 대한 개인적 수령예상 금액을 언급해 해당 연봉이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YTN 등 4개 방송사의 〈부모사랑 상조〉 방송광고에 대해 ‘경고’, 일반인 체험자가 나와 개인의 체험을 언급하며, 공인되지 않은 실험기기(매직링)의 측정 결과를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한 tvN 등 2개 방송사의 〈SK-II 피테라 에센스〉 방송광고에 대해 ‘경고’가 각각 의결됐다.

나. 냉방·난방 상품 등 계절상품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계절상품의 경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매년 다수의 제재조치 등이 의결돼왔다. 2013년에도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제품의 효능·기능 등을 오인하게 하거나 허위·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들이 다수의 심의·제재를 받았다.

겨울철 계절상품의 경우, 방한 부츠 제품에서 미끄럼 방지 기능에 대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외피의 일부만 소가죽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막·화면 등을 통해 외피 전체가 소가죽인 것으로 오인하게 한 방송 내용과 보온시트의 보온력 시연과정에서 온도계 등 단순계측기를 이용한 임의 시험 장면을 방송해 일반적인 효과로 오인하게 한 방송 내용 등을 심의해, 상품판매방송 부문에서 GS SHOP 〈3M 스카치 보온시트〉, CJ오쇼핑 〈락앤락 플라워 보온시트〉 2건에 대해 권고가 의결됐고, 방송광고 부문에서는 월드이벤트TV 등 23개 방송사의 〈아놀드파마 방한부츠〉에 대해 ‘경고’, 스토리온 등 8개 방송사의 〈세루빅 천연소가죽 양털부츠〉, 비즈니스엔 등 5개 방송사의 〈옴파로스 소가죽 방한화〉, 실버TV 등 3개 방송사의 〈캡스위스 명품 밍크 부츠〉 이상 16건에 대해 ‘주의’가 각각 의결됐다.

한편, 여름철 계절상품의 경우에는 2012년에도 많은 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는 쿨링 수건 제품에 대해, 단순 계측기로 제품표면의 온도를 측정한 후 도출된 수치를 노출해 일반적인 체감온도 및 온도저하 효과로 오인하게 한 리빙TV 등 7개 방송사의 〈매직아이스〉 방송광고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다.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구별

「방송법」은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방송광고심의규정도 시청자가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 간에 혼동을 느낄 수 있는 기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광고가 늘어나면서 해당 프로그램 직전·

직후 또는 중간광고에 편성해,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 간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방송광고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MBC-TV 드라마 〈금 나와라 뚝딱〉의 고정출연자를 등장시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한 방송광고를 중간광고로 편성한 QTV 등 2개 방송사의 〈olleh ALL-IP〉 방송광고에 대해 '주의' 가, tvN 드라마 〈이웃집 꽃미남〉의 일부 장면을 사용한 방송광고를 드라마의 직전·직후에 방송한 tvN 〈마켓오 리얼초콜릿〉 방송광고에 대해 '권고' 가 각각 의결됐다.

또한, 뉴스 촬영현장에서 대화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뉴스 직전에 편성한 SBS-TV 〈기아 자동차〉 방송광고에 대해 권고가, 축구 경기 후 국가대표팀 감독과 인터뷰하는 형식의 기법을 사용한 KBS-2TV 등 3개 방송사의 〈후시딘〉 방송광고에 대해 권고가 각각 의결됐다.

3. 맺음말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는 방송이라는 매체의 영향력을 활용해, 상품 관련 정보 등 상업적 메시지를 시청자에게 전달하므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시청자의 경제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방송광고에 허위·과장 내용을 포함하여 시청자를 오도하거나, 계절 특수를 노리고 객관적 근거 없는 내용을 방송하거나, 인기 있는 방송프로그램의 후광효과를 노리고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방송광고물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는 것은 아니나, 방송사는 자사의 방송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소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심의회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 심의사례

◆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 유료방송 심의사례(보도교양부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 유료방송 심의사례(연예오락부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 상품판매방송 심의사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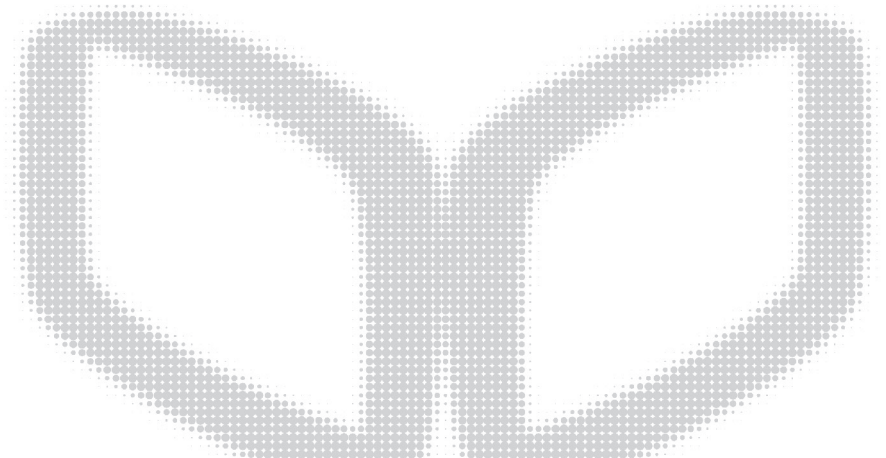
◆ 방송광고 심의사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위반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공정성

제9조(공정성) ①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0)
- 방송프로그램 : MBC-TV <뉴스데스크>(2012.10.16, 20:55-21:5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제4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의 MBC 간부 관련 발언을 3일에 걸쳐 보도하면서, 특정 지역 비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발언을 ‘지역감정 조장’이라 언급하며 추측성 보도를 하고, 당사자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고 MBC 자사의 입장을 위주로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7)
- 방송프로그램 : MBC-TV <뉴스데스크>(2012.10.13, 19:55-20:4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제2항·제4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 간부들 간의 대화내용을 다룬 한겨레신문 기사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MBC 자사의 입장에서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는 내용 등을 7일간 10여 회에 걸쳐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 객관성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출처명시) ①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하여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청자가 보관자료임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①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오보정정)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 방송을 하여야 한다.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7.25)
- 방송프로그램 : MBC-TV <뉴스투데이>(2013.6.1, 06:00-07: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단독입수했다고 보도하면서, 범인이 아닌 사람(피해자를 마지막으로 태웠던 택시기사)을 지목하며, ‘CCTV 속 범인의 모습과 일치한다’ 고 보도함.

< 관련자료 : MBC-TV ‘뉴스투데이’ >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1.21)
- 방송프로그램 : SBS-TV <SBS 8 뉴스>(2013.9.27, 20:00-20:4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연세대와 고려대의 농구경기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세대학교를 비하하기 위해 변형한 이미지(연세대학교 심볼 마크의 ‘ㅇ’을 ‘ㅇㅂ’으로 변형)를 연세대학교 심볼 마크 인 것처럼 노출함.

< 관련자료 : SBS-TV ‘SBS 8 뉴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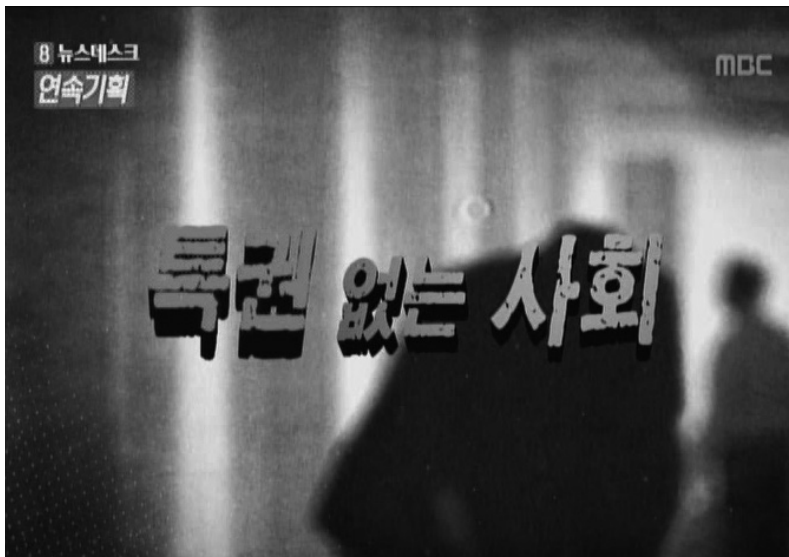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7.11)
- 방송프로그램 : MBC-TV <MBC 뉴스데스크>(2013.6.3, 19:30-20:2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9조(공정성)제1항·제2항, 제12조(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제2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사회 지도층의 특권주의에 대해 보도하면서, 작년 6월 부산지방변호사회에 휴업증명원을 낸 민주통합당의 한 국회의원이 마치 보도 당시까지 범무법인 변호사를 겸직하며 별도 급여를 받은 것처럼 소개하고, 서른 명 가까이 되는 교수 겸직 국회의원 중 민주통합당 특정 국회의원의 사례만을 예로 들며 마치 국회의원으로서 예우를 받아 연구실을 지원받은 것처럼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MBC 뉴스데스크'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4.17)
- 방송프로그램 : SBS-TV <자기야>(2013.3.7, 23:20-24: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출처명시)제1항, 제14조(객관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다녀에게 당신의 직업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부 출연자들이 O, X, △ 뜻말로 답한 후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타 방송사에서 임의로 구성한 주관적 순위(‘대물림하고 싶은 직업 순위’)를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소개함.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3)
- 방송프로그램 : MBC-TV <여성토론 위드>(2013.5.27, 11:00-12: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당연 육아휴직제(의무화) 실시 여부’에 대해 시청자 문자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의무 시행 의견이 96%, 자율시행 의견이 4%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소개하는 등 조사대상의 대표성과 조사내용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청자 의견을 조사하여 방송함.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3.7)
- 방송프로그램 : MBC-TV <뉴스 24>(2013.1.17, 00:35-01:0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오보정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포항대학교(포항 소재 2년제 대학으로 포항공대와 무관) 총장이 국고보조금 횡령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5억 원대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포항공대 총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어젯밤 포항공대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라는 앵커 멘트와 ‘국고보조금 횡령혐의 포항공대 총장 구속’이라는 자막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뉴스 24’ >



사례 7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8.28)
- 방송프로그램 : SBS-TV <생방송 투데이>(2013.7.9, 18:05-19:1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7조(오보정정), 제14조(객관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자녀의 아토피를 극복한 여성의 노하우를 소개하던 중, 해당 여성이 사용하는 세제에 방부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사용 모습을 보여주며 ‘방부제 없는 세제로 빨래하는 것이 아토피 극복 노하우’ 라고 소개함.

라디오 부문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8.14)
- 방송프로그램 : TBN대전교통방송-FM <정보드라이브 2부>(2013.7.17, 16:30-16:52)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 제14조(객관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오늘의 지역 뉴스> 코너에 지역 신문사 기자가 출연하여 KBS 대전방송총국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충청권 시·도지사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필수 고지항목 중 ‘조사기관’만을 고지하고, ‘의뢰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는 고지하지 않았으며, 박병석 의원(11.5%)—권선택 前의원(4.6%), 이상민 의원(5.1%)—권선택 前의원(4.6%), 정용기 구청장(4.7%)—권선택 前의원(4.6%)의 격차가 각각 6.9%p, 0.5%p, 0.1%p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4.0\%p$)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민주당 후보로 알려져 있는 권선택 前의원이 박병석 부의장, 이상민 의원에게도 뒤쳐질 뿐 아니라 정용기 대덕구청장보다도 낮은 4.6%를 기록했습니다”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19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4.24)
- 방송프로그램 : G1-TV <G1 뉴스 820>(2013.4.9, 20:35-20:5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민주통합당의 강원도당위원장 선거 후보 공모가 마감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후보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노출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10)
- 방송프로그램 : MBC-TV <컬투의 베란다쇼>(2013.6.14, 21:30-22: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연예인 팬클럽의 조공(租貢)이라는 팬덤(fandom) 문화의 부정적 면을 부각시켜 소개하면서, 특정 연예인의 팬클럽 카페 게시글을 무단 발췌하여 사용하고, 이 과정에서 팬클럽명은 물론 게시자의 닉네임과 실명까지 노출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4.24)
- 방송프로그램 : KBS-2TV <추적 60분>(2013.4.3, 23:20-24:2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14조(객관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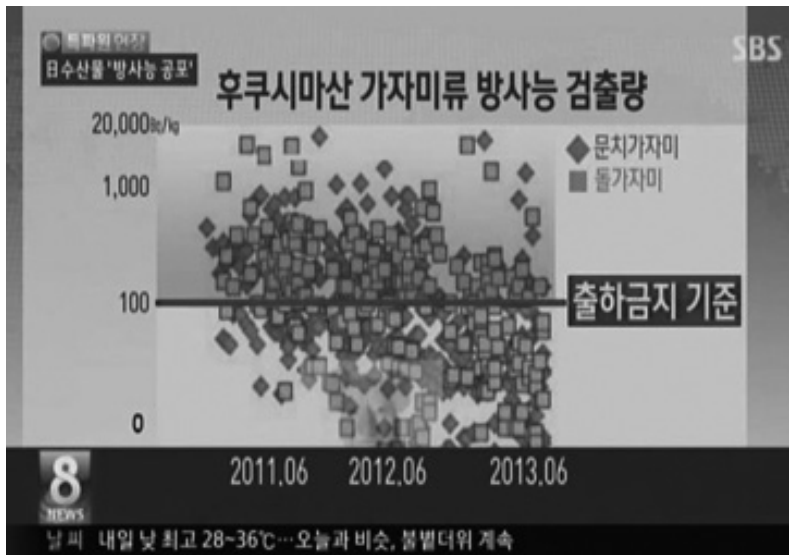
계약직인 전문상담사의 해고와 그에 따른 정규직 전문상담교사의 신규 배치에 대해 방송하면서, “전문 상담사들은 진짜 상담을 전공한 그런 전공자들이고요, 전문성이 있고요. 지금 새로 배치된 상담교사들은 그거 한두 달 연수받아서 자격증 받은 분들이고.”라는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을 방송함.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0.10)
- 방송프로그램 : SBS-TV <SBS 8 뉴스>(2013.8.20, 20:00-20:4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14조(객관성)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 여부에 대해 보도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이미지가 포함된 자료화면(방사능 검출량 조사 결과)을 약 6초간 노출하고, 해당 자료의 방사능 검출량 수치와 날짜를 원본과 다르게 표시함.

< 관련자료 : SBS-TV 'SBS 8 뉴스' >



라디오 부문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9.4)
- 방송프로그램 : KBS광주-1R <라디오 정보시대>(2013.7.22, 11:10-11: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청취자를 전화 연결하여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취자와 출연자(변호사)가 채무자의 실명과 사업체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5조(윤리성) ①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생명의 존중) ①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② 방송은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3.7)
- 방송프로그램 : MBC-TV <백년의 유산>(2013.1.5, 21:50-23:1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주말드라마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며느리에게 남편의 새 신붓감을 직접 고르게 하는 등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과 사회윤리에 반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13)
- 방송프로그램 : KBS-2TV <왕가네 식구들>(2013.9.1, 19:55-21:0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2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주말드라마에서, 어머니의 비정상적인 편애와 행동, 조카가 삼촌에게 “너네 엄마(할머니)가 먼저 우리 엄마 건들잖아!”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 부잣집 딸이 유부남을 유혹하며 1억 원짜리 신용카드를 주는 장면, 초등학교생들에게 나이트클럽 전단지 나눠주는 장면 등과 함께 불륜을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주된 내용으로 방송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4.4)
- 방송프로그램 : MBC-TV <사랑했나봐>(2013.1.24, 07:50-08:2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복수와 돈에 집착하는 한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아침드라마에서, 과거가 탄로나 이혼 위기에 처한 여주인공이 다른 사람의 초음파 사진을 훔친 후 남편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는 장면과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뺑소니 사고를 꾸미고 무고(誣告), 성추행, 방화, 살인 등을 교사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사랑했나봐'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7.25)
- 방송프로그램 : MBC-TV <오로라 공주>(2013.5.20, 19:15-19:5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부잣집 4남매를 중심으로 한 일일드라마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몸에 걸쳤던 수건을 펼쳐 보이며, “내 친구 미옥인 천만 원 들여서 가슴 부풀렸어! 다들 부러워하고 감탄해! ... 다른 집 남자들은 들어오면 주물러 터트려서 귀찮아 죽겠네. 토끼 주제에!”라고 말하고, 이에 남편이 “식어빠진 사발면을 그럼 1-2분이면 해치우지, 20-30분 걸려 먹냐?”라고 말하는 장면, 불륜관계에 있다가 이별을 통보받은 딸에게 계모가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장면, 등장인물이 형들에게 ‘팔자 좋은 년’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오로라 공주’ >



라디오 부문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2)
- 방송프로그램 : MBC-AM <조영남, 최유라의 지금은 라디오시대>(2013.8.30, 16:05-18: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생명의 존중)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초대손님이 출연하여 청취자가 보내온 사연을 읽어주는 <사랑의 체험수기-어느날 사랑이> 코너에서, 결혼을 예정한 애인이 갑자기 실종되어 수소문해 보니 그녀를 좋아하던 건달이 여관으로 납치해 간 것이었고, 여관에서 건달과 함께 있는 그녀를 찾아냈으나 다시 사귀지는 못했다는 사연을 소개한 후, 남성 진행자가 “에이, 좋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납치라고 볼 수가 없죠”, “아이, 여자가 아니면(좋아하지 않으면) 납치가 되지도 않아요”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7조(품위 유지) ①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9조(사회통합) 방송은 지역간, 성(性)간, 세대간, 계층간, 인종간, 종교간 차별과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방송은 제작·편성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청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3)
- 방송프로그램 : KBS-2TV <개그콘서트>(2013.6.9, 21:15-22:5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코미디프로그램에서, 다른 출연자나 방청객의 얼굴에 침 뱉는 시늉을 하거나 뺨을 때리는 모습 등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산낙지를 통째로 얼굴에 올려 꺾을 하거나 살찐 체형의 출연자를 짐승에 비유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23)
- 방송프로그램 : MBC-TV <코미디에 빠지다>(2013.9.1, 24:05-25: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한 남자가 여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상황을 코믹하게 구성한 <변태감성의 옴므파탈> 코너에서, 남자가 여성 출연자와 방청객에게 “내가 너한테 이 옷을 사준 이유는 너한테 잘 어울려서가 아니라 너한테 짝 달라붙어서야... 옷이 마음에 안 들면 갈아입어, 내 앞에서!”, “뜨거운 물로 씻지마, 습기 차서 안보이니까!” 등의 대사를 하고, 다소 선정적인 몸짓과 행동을 하는 장면을 방송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6.26)
- 방송프로그램 : MBC-TV <MBC 뉴스데스크>(2013.5.31, 19:55-20: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자료화면으로 특정 인터넷 사이트를 보여주던 중,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속되게 이르는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 제목을 그대로 노출하여 방송함.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4.4)
- 방송프로그램 : MBC-TV <세바퀴>(2013.1.5, 23:10-24:3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연예인·운동선수 등이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여성 출연자가 남성 출연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얼굴에 입술을 갖다 대는 모습 등을 ‘거침없이 들이대기’, ‘그렇게 좋으세요’ 등의 자막과 함께 보여주고, 청양고추를 억지로 먹여 괴로워하는 모습과 씹던 엿을 주거나 받거나 하며 먹는 모습 등을 콩트 형식으로 보여주는 한편, 출연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 “정말 사골을 넣어서 12시간을 고아”, “매장에서 드시는 것보다 더 푸짐하게 포장을 해드린다”고 발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세바퀴’ >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6.13)
- 방송프로그램 : KBS-2TV <우리동네 예체능>(2013.4.23, 23:20-24:3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연예인들이 탁구팀을 구성하여 훈련을 하고 일반인들과 경기를 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연예인 출연자 중 1명이 자신의 '개인기' 라며 여성의 신음소리를 연상시키는 비트박스를 하고, 별칙이라며 엷드린 출연자의 엉덩이를 탁구채로 연달아 때리는 모습을 방송함.

< 관련자료 : KBS-2TV '우리동네 예체능' >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0.24)
- 방송프로그램 : SBS-TV <자기야 - 백년손님>(2013.7.11, 23:20-24:4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진정한 생활기풍)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사위들이 아내 없이 처가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한 출연자가 처갓집과 카페 등에서 일명 ‘성화봉송주’라고 불리는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모습과 다른 출연자들이 이를 받아 마시는 모습을 수회에 걸쳐 보여주며, ‘폭탄주 마시는 자세는 인간 문화재급’, ‘폭탄주 원샷! 중년서방의 패기!’, ‘잔뜩 기대 성화봉송주 체험 하고 싶어 대기 중’, ‘폭탄주 제조상공의 황금비율’ 등의 자막을 방송함.

< 관련자료 : SBS-TV ‘자기야 - 백년손님’ >



사례 7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7.11)
- 방송프로그램 : MBC-TV 〈MBC 뉴스데스크〉(2013.5.24, 19:55-20: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칸에 나타난 가짜 싸이(한국계 프랑스인)에 대해 보도하면서, “베껴 만드는 데는 선수인 중국, 급기야 가짜 싸이까지 나타났습니다.”라는 앵커 발언과 ‘가짜 싸이가 중국계 프랑스인’ 이라고 소개하는 기자 발언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MBC 뉴스데스크’ 〉



사례 8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23)
- 방송프로그램 : KBS-2TV <해피선데이>(2012.11.25, 17:00-19: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1박 2일> 코너에서 ‘오픈카 투어링’이라는 명목으로, 제작진이 준비한 트럭의 화물 적재함에 7명의 출연자와 일부 제작진이 탑승한 채 해안도로를 달리며, 가사도를 일주하는 장면(도로교통법 위반)을 방송함.

사례 9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6)
- 방송프로그램 : KBS-2TV <굿모닝 대한민국 2부>(2012.12.25, 07:00-08: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한 애견카페 운영자에 대해 소개하면서, “가게 차별화 비결”, “고객들에게 직접 예방접종까지 실시하는 진 대표” 등의 내레이션과 함께, 수의사가 아님에도 운영자가 직접 예방주사를 놓고, 예방접종 시기 및 일정 등에 대해 고객과 대화하는 장면(수의사법 위반)을 방송함.

라디오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10.24)
- 방송프로그램 : 영주FM <빙2쇼>(2013.8.31, 12:00-14: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제2항,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51조(방송언어)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진행자들이 음악을 소개하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후지산 하루 빨리 터져가지고. 일본이 가라앉았으면 좋겠어요”, “오△화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니까, 그냥 나쁜 년이죠”, “개나리 십장생이죠, 뭐. 수박 씨발라먹고”, “똥물을 퍼붓고 싶지만 똥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싸 가지고 얼굴에 문델게요”, “아베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만나자고, 싸가지 없어, 어디”, “어디 쪽발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래! 건방진 것”, “인터넷 댓글에서 봤는데, 김△희는 이렇게 예쁘고 완벽한데, 어떻게 측우기 신세냐, 딱 이러는 거예요. 측우기가 뭐냐 하면, 빗물받이”, “빗물받이. 이거 야한 건데”, “기자 뭐 열심히 공부하면 뭐해? 대가리에 똥밖에 안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엘리트는 머리에 똥만 차면 되는 것 같네요”, “진짜 똥 찬 게 확실하네요. 저도 머리에 똥 좀 찼는데, 제가 뭐, 뉴스 기자나 좀 할까요, 저도?”, “오늘 뽀 받으셨어. 까다보니까 재미있네” 등과 같이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5.23)
- 방송프로그램 : YTN-FM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2013.4.2, 07:10-09: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2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최근 대중매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여성의 이미지와 그로 인한 여성혐오 현상에 대해 진행자와 고정 출연자(문화평론가)가 대답하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무한결스는 아마도 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자를 싫어한다. 여자들을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주로 하는 예능이 잘 될 리가 없다’ 라고 제가 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 얼마 안 있어서 무한결스는 망했구요. 사람들이 요즘에 여자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여자 자체를 근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는 여자들이 보호를 받아도 너무 심하게 이미 받은 거 아니냐. 남자들이 오히려 이제는 보호받아야 될 때인데 여성 총학생회는 시대착오적인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학내에서 많이 나오면서 여성 총학생회가 없어지고 있는 거죠.”, “네티즌들이 요즘에, 방송용으로 적합한 단어는 아닌데, ‘보슬아치’ 라고 해서 여자들이 항상 남자들 등쳐 먹는다 그런 식으로 항상 악플을 달기도 하고”, “사람들이 남자에게 휴머니즘이라든가 따뜻한 정을 느끼는 반면에, 여자들한테는 그런 걸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등과 같이 말하는 내용과 진행자가 성희롱의 기준에 대해 “제가 조금 방향을 달리 해서 성희롱이 참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희롱이 어떻게 되느냐, 판례를 보면요.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을 뺨히 보는데 당사자가 수치심을 안 느끼면 성희롱이 안 되는데, 수치심을 느끼면 희롱이 되는 것. 이거 좀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미국만 하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에서 성추행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런데 여성이 짧은, 그 제가 하나 읽은 건데, 짧은 가죽으로 된 미니스커트를 입고 학교에 계속 등교를 했었는데 이 여성을 배심원들이 많이 잘못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만큼 남성에게 그럴 가능성을 열어 놔다는 거예요. 학교 학생이 학생답게 차리고 다녀서 성적 도발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일으켰다는 거죠.”와 같이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1.21)
- 방송프로그램 : KBS-1AM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2013.9.27, 08:35-09:57)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9조(사회통합)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최종 확정된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해, 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는 <포커스 1> 코너에서, 현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시행이 된다면 기초연금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젊은 네티즌들의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출연 교수가 “65세가 될 시점에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면 인생을 잘 못 사신 겁니다.”라고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35조(성표현)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③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 성도착·혼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괴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6조(폭력묘사) ①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자살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자살방법을 암시하는 표현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①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 살인, 자살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마약류의 사용 및 이로 인한 환각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자연기법의 사용) ①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자연기법으로 다룰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자연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자연상황이 실제상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료행위 등) ①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의료목적으로 다룰 때에도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시청자가 증상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3.6)
- 방송프로그램 : SBS-TV < 짝 > (2013.1.30, 23:15-24:3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일반인 남녀가 출연하여 일주일간 함께 생활한 후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하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여자와의 1박 2일 데이트권을 얻기 위해 남자 출연자들이 얼어붙은 계곡 물 속에서 오래 버티기 경쟁을 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0.8)
- 방송프로그램 : MBC-TV <투웍스>(2013.8.10, 13:30-14:2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살인 누명을 쓰게 된 남자가 아픈 딸을 살리기 위해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에서, 자신의 애인이 검사의 스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조직폭력배가 애인을 찾아와 칼로 8회 찔러 죽이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하면서, 칼이 몸을 찌르는 소리와 함께 여자가 눈을 부릅뜬 채 단말마의 신음소리를 내며 괴로워하는 모습, 여자의 등 뒤 2곳에서 피가 배어나와 흘러내리는 모습, 시체 주변에 낭자한 피 등을 보여줌.

< 관련자료 : MBC-TV '투웍스' >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13)
- 방송프로그램 : KBS제주-1TV <제주KBS 뉴스9>(2013.10.1, 21:35-21: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2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여객선에서 바다로 투신하여 실종된 승객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여객선 갑판에 서 있던 승객이 바다를 향해 스스로 뛰어 내리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CCTV장면을 미흡한 화면처리 상태로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송함.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20)
- 방송프로그램 : KBS창원-1TV <KBS 뉴스광장>(2013.1.10, 07:38-07:48)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4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주택 화재 소식을 보도하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다리를 위로 향한 채 쓰러져 있는 노인의 불탄 시신을 노출하여 방송함.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3.13)
- 방송프로그램 : SBS-TV <궁금한 이야기 Y>(2013.1.18, 20:50-21:5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음란사진 촬영으로 조사를 받던 사진사가 동반자살을 시도하다 여중생만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방송하면서, 사진사가 자살사이트를 통해 동반자살 참여자를 초대하고, 펜션으로 이동 후 창문 틈새를 청테이프로 막은 뒤 연탄에 불을 붙이고, 수면유도제를 나눠 먹는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재연함.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10.24)
- 방송프로그램 : 춘천MBC-TV <생방송 강원 365>(2013.8.14, 08:30-09:3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지역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범상치 않은 행동을 보여주는 스님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는 신도를 찾아가 곳으로 치료해주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천도제 도중 환자가 펄쩍펄쩍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걷는 것도 힘들어하던 환자가 별안간 뛰기 시작’, ‘접신한 듯 보이는 모습’, ‘산 자의 몸을 빌려 말을 전하는 조상신’ 등의 자막을 고지하는 한편, 다음 날 환자가 “굿하고 나서 편안해졌어요.”라고 인터뷰한 장면을 보여준 후 “접신의 기억과 함께 말끔히 사라진 병세. 굿 이후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진 모습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장면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춘천MBC-TV ‘생방송 강원 365’ >



라디오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9.11)
- 방송프로그램 : SBS-AM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2013.8.9, 05:05-06: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회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한국성교육연구소 소장이 출연하여 여름철 부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짧아야 좋다면 여름은 글썄요 남성들한테, 조루 증세가 있는 남성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여름에 특별히 좋은 체위가 있을까요?” 등과 같이 말하는 내용, 출연자가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는 그 쪽에서 먼저 전희를 시작을 해서 굉장히 욕구가 강하게 되면 침대로 간다든가, 또는 그냥 욕실에서 그냥 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꼭 마주보고 한다기보다는 뭐 뒤에서 한다든가 하면 최소한의 살과 살이 닿는 면적이 좀 줄어들겠죠?”, “마주보고 하면 살과 살이 닿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고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여름에는 그런 면적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왕이면 늘 똑같은데서 하는 것 보다는 바꾸는 것도 좋겠구요. 또 여름에는 텐트를 치고 한다든가 이럴 때도 좀 색다른 느낌 거기다가 주위에서 혹시라도 들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짜릿하게 느끼는 이런 것도 있구요. 욕실이나 거실이나 이런데서 좀 바꿔보고, 또 어떤 부부들은 바닷가에 갔을 때 해가 질 무렵 또는 깜깜한 때 솔밭에서 했더니 너무 좋더라 이런 것도 있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8.22)
- 방송프로그램 : SBS-FM 〈이숙영의 파워 FM〉(2013.7.11, 07:00-09: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매일 아침 주요 뉴스를 소개하는 〈이작가의 조간브리핑〉 코너 중 10대 청소년의 살인 및 시신 훼손 과정에 대해 방송하면서, “이후 심 군은 밖에 나가 성폭행 시 위협할 목적으로 문구용, 공업용 커터 칼 하나씩을 샀습니다. 심 군은 오후 7시쯤 친구 최 군이 모텔을 떠난 뒤 김 양을 성폭행했으며 김 양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 군은 이후에 모텔 화장실에서 16시간에 걸쳐 김 양의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도려낸 살점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유기했습니다. 이같은 일을 수십 차례 반복했습니다. 나머지 뼈는 비닐 봉투에 담기 좋게 토막을 냈습니다. 심 군은 커터 칼이 부러지자 인근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 칼을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9일 오후 1시쯤 김장용 대형 비닐 봉지를 구입해 모텔로 돌아가 훼손한 시신을 담았으며 이후 콜택시 뒷자석에 시신 봉지를 싣고 자기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심 군은 집 마당의 주거용 컨테이너 속 장롱 안에 시신을 숨겼습니다.”와 같이 상세히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2.21)
- 방송프로그램 : 극동울산FM <사랑의 뜰안>(2012.12.26, 10:00-11: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5항, 제46조(광고효과와 제한)제1항 · 제2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시상품 협찬사(건강기능식품사)의 지사 이사와 팀장이 출연하여, 자세한 기업 소개를 부탁하는 질문에 대해, “저도 △△(회사명) 만나기 전에는 희귀병인 베체트로 입안에 염증, 또 두드러기,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던 중에, 남편이 큰 교통사고로 어깨뼈가 약 2cm정도 썩었어요. 병원에서는 그 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회사명) 식품을 먹고 썩어 들어간 뼈의 염증이 깨끗하게 녹아내리는 기적 같은 증후를 보면서, 아! 나도 식품 먹으면 좋아질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전 놀랍게도 입안의 염증, 두드러기, 알러지 등이 다 좋아지고 건강 찾아서, 건강전문상담사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14개의 직영지사와 9개의 개인 로드숍, 또 22개의 해외지사가 있으며, 누구나 먹기만 하면 놀랍게 효과를 보니까 해외로도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기업의 사훈과 신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창업자이신 저희 △△△님께서 아주 어려서부터 허혈성 심장질환, 어린 이 소아마비, 또 부정맥 등 이런 병약한 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의사인 아버지의 노하우인 최고의 원료, 배합기술, 상품의 궁합을 전수받아서 연구 개발하여, 지금 △△(회사명), △△식품 건강전문회사로 왔습니다. 이게 딸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귀하겠어요. 인체원리 중심으로 오장육부 기능이 강화되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희귀병이나 이런 암병, 당뇨병, 아토피 등 병원에서 안 되는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많이 회복시킨 28년 된 회사입니다.”라고 하며, 본 프로그램 협찬 상품인 비누와 치약세트에 대해, “요즘 같은 겨울철에 감기로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손만 깨끗이 씻어도 80%는 질병을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이처럼 저희 △△비누와 치약엔 천연항생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주므로, 우리 아이들 겨울철에 피부가려움증, 아토피, 구강염증에 또 시린 이에 잇몸에 피가 난 다든지 하는 것에 확실한 효과를 보거든요. PD님도 저희 △△비누 사용해 보시구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등과 같이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6절 어린이·청소년 보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수용수준) ①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②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출연)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여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6.19)
- 방송프로그램 : MBC-TV <남자가 사랑할 때>(2013.5.9, 22:00-23:2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수·목 드라마에서, 남녀 등장인물이 포옹을 한 채 격렬한 키스를 하며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 누워있는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격렬하게 키스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6)
- 방송프로그램 : KBS-2TV <비밀>(2013.10.3, 09:50-10:5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수·목 드라마에서,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던 남자주인공이 여성을 유혹해 함께 호텔방으로 들어간 장면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키스하는 모습, 여성이 겹옷부터 속옷까지 차례로 탈의하며 욕실로 들어가는 모습, 유리에 비친 여성의 나신(裸身) 실루엣 장면, 샤워를 마치고 나온 여성이 남자 주인공을 찾으며 몸에 두른 수건을 벗는 모습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12.5)
- 방송프로그램 : SBS-TV <수상한 가정부>(2013.9.28, 13:15-14:2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아빠의 불륜과 이로 인한 엄마의 자살로 붕괴 위기에 직면한 가족이 새로 들어온 가정부로 인해 이를 극복한다는 내용의 드라마에서, 7세 여아를 비롯한 등장인물들의 반복된 자살 시도 장면과 어린이·청소년 등장인물들의 비속어 사용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함.

< 관련자료 : SBS-TV '수상한 가정부'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9.12)
- 방송프로그램 : MBC-TV <여왕의 교실>(2013.6.15, 14:40-15:3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6조(광고효과
의 제한)제2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의 독특한 교육과 이에 따른 아이들의 갈등 · 반발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
에서,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을 장시간 구타하는 장면, 초등학생이 교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담임교
사를 칼로 위협하는 장면, 간접광고주의 제품광고 포스터를 노출한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여왕의 교실' >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27)
- 방송프로그램 : SBS-TV <SBS 애니갤러리>(2013.1.25, 16:00-16:2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7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탐정이 되고 싶은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
 메이션을 방송하면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시체의 모습을 여과 없이 노출함.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4.10)
- 방송프로그램 : OBS-TV <OBS 뉴스 M>(2013.3.17, 19:45-20:0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경찰이 술과 성매매를 함께 제공하는 이른바 ‘풀살롱’ 업소를 단속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면서, 경
 찰이 급습한 성매매 현장에 상의를 탈의한 채 서 있는 남자와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서 있는 여자(흐
 림 처리)의 모습 및 성관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피임기구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사례 7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10)
- 방송프로그램 : SBS-TV <SBS 인기가요>(2013.6.9, 15:40-17:1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여성 가수가 원피스 수영복 형태의 흰색 바디수트(Body Suit) 위에 벨트와 코트를 착용한 무대 의상을 입고 노래하는 모습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사례 8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24)
- 방송프로그램 : MBC-TV <쇼! 음악중심>(2013.6.15, 15:55-17: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여성 가수들이 폴 댄스(pole Dance)를 추는 모습 및 다리를 약간 벌리고 선 채 허벅지 안쪽에 양손을 대고 엉덩이를 한쪽으로 천천히 흔들면서 튕기거나, 치마를 펼쳤다 접으며 치마 속 핫팬츠를 노출하는 모습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라디오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30)
- 방송프로그램 : KBS-2AM <이소라의 메모리즈>(2013.10.1, 19:00-20: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High on diesel and gasoline, psycho for drum machine shaking their bits to the hits(독한 마약에 취해, 나이트클럽에 빠진 미치광이들이 리듬에 맞춰 그들의 몸을 흔들지)”, “Drag acts, drug acts, suicides(여장, 마약, 자해를 하고)”, “Cracked up, stacked up, 22, psycho for sex and glue, lost it to Bostic, yeah(미칠대로 미쳐버린 타락한 22세, 섹스와 약물에 취한 미치광이들이 본드에 취해 허우적대고)”, “Shaved heads, rave heads, on the pill, got too much time to kill, get into bands and gangs(건달들, 마약에 취해 광란으로 보내는 이들이 시간이 남고 남아서 밴드나 갱단에 들어가지)”, “Loved up, doved up, hung around, stoned in a lonely town, shaking their meat to the beat(마약에 취해 인적 드문 곳에서 배회하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어 대고) “등 유해약물 관련 가사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효력발생일 : 2012. 5. 31)된 영국 밴드 Suede의 노래 <Beautiful ones>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1.21)
- 방송프로그램 : iTV-FM <노명호, 양희성의 시사자유구역>(2013.10.14, 18:00-20: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뭣 참아 어떻게 손만 잡아. 딱딱하게 말하지 마. 니가 나를 딱딱하게 만들었잖아.”, “피곤해 그냥 나 잘래. 니 품에서 꿈꾸고 싶어 밤새. (에이 거짓말) 그만 좀 보채 오늘날 날이 아니잖아 좀 참아.” 등 선정적 가사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효력발생일 : 2011. 12. 8)된 리쌍의 노래 <TV를 꺾네>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7절 광고효과의 제한 등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① 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 협찬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적법한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정보전달) ①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을 소개할 때에는 경쟁업체나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입종 또는 신상품에 관한 생활정보를 소개할 때에는 관련된 업체 및 상품을 필요이상으로 부각시켜서는 아니되며,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야 한다.

제48조(중계방송) ① 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때에는 기존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특정업체나 상품의 로고 또는 현수막 등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보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자는 중계방송을 위해 주최측과 공동으로 새로이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여 이를 부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법 제73조제2항제6호의 가상광고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시상품) ① 출연자, 방청인 및 시청자 등에 대한 상품 또는 상금은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② 방송내용에서 시상품 등을 소개할 때에는 해당상품에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시상품의 종류 및 가격대를 선정할 때에는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50조(상품판매) ①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② 제46조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23)
- 방송프로그램 : SBS-TV <주군의 태양>(2013.9.5, 22:00-23:1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귀신을 보는 여자와 어릴 적 사고로 난독증에 걸린 재벌 2세 남자와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에서, 특정 동화책을 근접촬영 등으로 수차례 반복 노출하고, 책 제목과 줄거리 등을 대사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6.27)
- 방송프로그램 : KBS-2TV <최고다 이순신>(2013.5.5, 19:55-21:1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주말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여자 친구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데이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면서, 협찬주의 차량을 반복 노출함.

< 관련자료 : KBS-2TV '최고다 이순신' >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7.11)
- 방송프로그램 : SBS-TV <내 연애의 모든 것>(2013.5.9, 22:00-23:1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국회의원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해 협찬주(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단) 사업과 판매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협찬주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와인 족욕과 와인시음 등을 체험하는 장면을 방송함.

< 관련자료 : SBS-TV '내 연애의 모든 것'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8.8)
- 방송프로그램 : SBS-TV <너의 목소리가 들려>(2013.6.20, 22:00-23:1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수·목 드라마에서, 첫 데이트를 하러 가던 남자주인공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초콜릿 전문점)에서 초콜릿을 사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설레는 첫 데이트~ 로이즈초콜릿이 없다면, 그건 완벽한게 아니다!' 라는 문구가 인쇄된 광고판을 근접 촬영하여 보여주고, 매장 직원이 "저희 생초콜릿은 차갑게 드셔야 맛있기 때문에 아이스 포장을 해드리고 있거든요."라고 말한 뒤 쿨링백 안에 생초콜릿과 아이스젤팩을 함께 넣는 모습을 방송함.

< 관련자료 : SBS-TV '너의 목소리가 들려' >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2.5)
- 방송프로그램 : KBC-TV <KBC 건강캠페인>(2013.9.24, 20:54-20:5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를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허리가 편하면 인생이 FUN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광고시간대에 반복 편성된 캠페인에서, 지역 소재 척추전문병원의 상호 및 건물 내·외관을 노출하고, 병원명·원장 이름 소개자막과 함께 해당 원장이 허리 시술법에 대해 인터뷰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KBC-TV ‘KBC 건강캠페인’ >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3.21)
- 방송프로그램 : SBS-TV <청담동 앨리스>(2012.12.22, 22:00-23:0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결혼으로 신분상승을 꿈꾸는 가난한 여자와 순수한 사랑을 갈구하는 상류층 남자 간의 사랑을 다룬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간접광고 스마트폰의 ‘이지클립(easy clip)’ 기능을 이용해 이미지를 편집하는 장면과 여주인공 동생이 간접광고주의 매장(안경점)에서 안경을 판매하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하나씩 안경 바꿔보는 거 어때요?”, “가격도 싸요. 다 만원대. 괜찮죠?” 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SBS-TV ‘청담동 앨리스’ >



사례 7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3.21)
- 방송프로그램 : MBC-TV <보고싶다>(2013.1.3, 21:55-23:15)
- 적용조항 : 「방송심의를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첫 사랑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핸드폰이 울리면서 “홍삼 드실 시간이에요. 자기야 진안 홍삼(협찬주) 먹어”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오고 이에 등장인물이 주머니에서 홍삼액을 꺼내 마시면서 “먹으면 뭐 하나? 누구처럼 손아귀 힘이라도 어디 쓸데가 있어야지”라고 말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둘만의 결혼식을 올린 남녀 주인공이 간접광고 상품인 카메라를 이용해 자신들의 모습을 촬영한 후 이메일로 전송하고 다른 등장인물들이 전송된 사진을 보는 과정에서 사진 상단에 있는 ‘삼성 스마트 카메라 NX1000에서 업로드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노출된 장면을 수차례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보고싶다’ >



사례 8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8.8)
- 방송프로그램 : KBS-2TV <상어>(2013.6.11, 22:00-23:1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제2항·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복수하려는 남자와 그를 사랑하는 여자 검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간접광고 스마트폰으로 사진 단서를 촬영하고 '사운드앤샷(sound & shot)' 기능을 이용해 사진에 음성을 녹음한 후 형사에게 보내고 형사가 이를 확인하는 장면과 범죄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주인공이 간접광고 텔레비전의 동작인식 기능을 이용해 원거리 조사를 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협찬주(음료판매점)의 메뉴 포스터와 유사한 형태의 로고 등을 매회 노출함.

< 관련자료 : KBS-2TV '상어' >



사례 9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1.24)
- 방송프로그램 : SBS-TV <다섯손가락>(2012.11.24, 21:55-23:0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기구한 운명으로 얽힌 어머니와 그녀의 두 아들 사이의 애증 관계를 그린 드라마에서, 어머니가 협찬주 스마트폰의 '퀵 커맨드(quick command)' 기능을 이용해 아들에게 전화하는 장면을 방송하고, 등장인물이 쇼핑백에서 협찬주의 영양제(제품명 일부 가림처리)를 꺼내들고 “이건 영양제. 다 떨어졌길래 몇 통 더 샀어. 나이 거꾸로 먹게 예뻐진 대니까 꾸준히 먹어”라고 말하는 장면과 이후 등장인물이 그 제품을 꺼내 먹는 장면에서 제품명 중 일부 글자(이전 장면에서 가림 처리했던 글자)를 노출한 장면을 방송함.

< 관련자료 : SBS-TV '다섯손가락' >



사례 10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1.24)
- 방송프로그램 : KBS-2TV <해피선데이 - 남자의 자격>(2012.11.25, 17:00-18:1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고정 출연자, 연예인, 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패밀리 합창단이 부산국제합창대회에 참가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합창단원들이 간접광고 상품인 스마트폰으로 기념 촬영을 한 후, '페이퍼 아티스트' 라는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된 사진을 꾸미면서 감탄하는 장면과 대회 전날 마지막 연습을 마치고 같은 스마트폰으로 어린이 단원들의 사진을 찍은 후 '포토 노트(photo note)' 라는 기능을 선택하여 사진 뒷면에 메모하는 장면을 방송함.

< 관련자료 : KBS-2TV '해피선데이 - 남자의 자격' >



사례 11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1.24)
- 방송프로그램 : MBC-TV <우리 결혼했어요>(2012.11.10, 17:10-18:2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가상 결혼생활 중인 출연자들이 명동에서 길거리 데이트를 하던 중 간접광고주의 매장(운동화 판매점)에 들어가 커플 운동화를 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출연자들이 광고 문구(‘커스텀 스튜디오 명동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플 신발을 커스텀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들어 보세요’)가 인쇄된 현수막을 발견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이어, ‘개인의 취향대로 디자인한 개성 넘치는 운동화’ 라는 자막과 함께 매장에 진열된 다양한 운동화를 보여주고, ‘마음대로 꾸밀 수 있게 준비된 다양한 도구들’ 이라는 자막과 함께 붓, 펜, 장식 단추 등을 노출하는 한편, 출연자들이 직접 운동화를 선택한 후 밑그림을 그리고, 인쇄 후 운동화를 꾸미며, 커플 운동화를 만드는 모습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우리 결혼했어요’ >



사례 1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25)
- 방송프로그램 : SBS-TV <모닝와이드 2부>(2013.6.6, 06:30-07:3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정보전달)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IT 퍼즐〉 코너 중 최근 저가형 제품 출시로 UHD-TV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특정 회사의 UHD-TV 특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능시연 장면 및 해당 업체 관계자의 인터뷰 등을 방송함.

라디오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3.21)
- 방송프로그램 : 극동FM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2013.2.1, 13:00-13:45)
- 적용조항 : 「방송심의를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광주의 한 호텔 회장이 출연해, 신앙 간증과 함께 호텔 설립 계기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호텔의 차별화된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화를 이어가는 내용을 방송함.

 - ▷ 진행자 : 권사님, 홀리데이 그 광주 호텔이 본사 브랜드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다른 호텔하고 어떤...?
 - ▷ 출연자 : △△호텔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호텔에도 외국 분들이 광주에 오시면 이렇게 △△호텔, 저희 호텔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 ▷ 진행자 : 예, 최고의 호텔로 지금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됐습니까? 광주에 호텔이 세 워진지가?
 - ▷ 출연자 : 작년 10월, 아니 11년 10월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세계적인 인터콘티넨탈 외국에서도 그렇고 서울 인터콘티넨탈이나 프라자 호텔 이런 데서 실력을 갖춘 직원들이 이렇게...
 - ▷ 진행자 : △△호텔을 광주에서 하시면서 많은 기독교 모임도 거기서 하시고 저희 극동방송 모임은 거의가 다 광주 △△호텔에서 하는데, 그것도 우리 권사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가격도 적게 받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호텔 방이 몇 개나 됩니까?
 - ▷ 출연자 : 지금 현재 205개
 - ▷ 진행자 : 205개 객실에, 거기에 인제...
 - ▷ 출연자 : 네, 스위트룸이 12개 객실을 가지고 있고요
 - ▷ 진행자 : 그리고 거기 인제 뭐 홀도 있을 거고, 결혼식도 할 거고, 뭐 뭐해요 그 호텔에서?

▷ 출연자 : 뭐, 여러 가지 다, 결혼식도 하고 대 연회장이 대, 중, 소로 갖춰져 있고요, 레스토랑과 라운지 바, 또 수영장 사우나, 휘트니스 또 비즈니스센터 이렇게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최초 인터내셔널 특급 호텔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 국적을 두신 외국인 총 지배인을 주축으로 해서 서울지역 특급호텔, 또 해외 특급호텔에서 풍부한 호텔 서비스 경험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돼 있고요, 또 국제대회나 국제행사로 인하여 국제화 되어가는 문화의 도시 광주에 걸맞은 격조 높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20)
- 방송프로그램 : KFM <행복을 드리는 라디오 평생학습관>(2013.1.5, 11:47-11:57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2013년 1월의 주제 <랩으로 통암기하는 공부법>에 대해, <랩으로 통암기하는 영어교과서>의 저자와 <랩으로 통암기하는 국사교과서>의 저자 등 2인이 출연해 음악과 접목한 공부 방법을 소개하면서, 방송 주제를 출연자의 저서명과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소개하고, 매 회 출연자 소개 시 반복적으로 출연자의 저서명을 언급하는 내용, 출연자가 자신의 교재 구성 내용과 동일한 공부방법을 소개하는 내용, 출연자가 저술한 교재의 특·장점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5.15)
- 방송프로그램 : 평화대전FM <생방송 평화를 빕니다>(2013.4.16, 11:05-12: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를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세상속의 작은 삶> 코너에서, 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팀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하며, 출연자가 소속 병원명을 6회 언급하고, 출연자 소속 병원 및 소속 병원의 건강검진상품에 대해 소개하면서, “저희 △△병원은 천주교 ○○교구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모범적 사랑의 실천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우수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최첨단 시설과 장비, 그리고 아름답고 포근한 실내 인테리어를 갖춘 △△병원으로서 2개의 검진센터가 있고요.”, “종합검진은 크게 종합형과 알뜰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이 종합검진, 종합형인데요. 30대 중반 이후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검사로 건강 전문 교수님이 꼭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 검사로, 남자는 35만원, 여자는 40만원입니다. 알뜰형은 20대 및 3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필요한 항목을 합축한 검사로 남자 29만원, 여자 32만원입니다.”라고 하고, 건강검진비용 감면 혜택에 대해, “천주교 신자분들하고 저희 교직원분들 소개, 지인 분들한테는 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20%에서 30% 정도의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건강보험공단 검진 대상자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추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청취자들에게 건강검진을 권유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건강검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등과 같이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8절 방송언어

제51조(방송언어) ①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린이·청소년을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바른 표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외국어 등) 방송은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국어순화의 차원에서 신중하여야 하며, 사투리를 사용할 때는 인물의 고정유형을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텔레비전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2)
- 방송프로그램 : KBS-2TV <굿닥터>(2013.8.5, 22:00-23:1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이런 식혜 위에 잣 같은!”, “이런 18층에 사는,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야!” 라고 말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6)
- 방송프로그램 : MBC-TV <스캔들 :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2013.8.29, 13:25-14:2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주말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이 “그 새끼 목에서 시빨진 피가 철철 흐르는 걸 내가 꼭 봐야겠어. ... 그 새끼 잘못했다고 울부짖으며 개처럼 짖는 꼴을 ... 이 상놈이 새끼!”, “개상놈의 새끼!”, “그 호랑말꾸 상놈의 새끼가 누구냐니까?”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7.25)
- 방송프로그램 : SBS-TV <너의 목소리가 들려>(2013.6.6, 22:00-23:1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수·목 드라마에서, 극중 주인공인 변호사가 살인(미수) 피의자들을 변호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등장인물들이 “이 x발”, “x만한 년아”, “아이 씨 x됐다”, “야 이 xx년아”, “x나 빨라”, “x새끼” 등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을 일부 효과음 처리하여 방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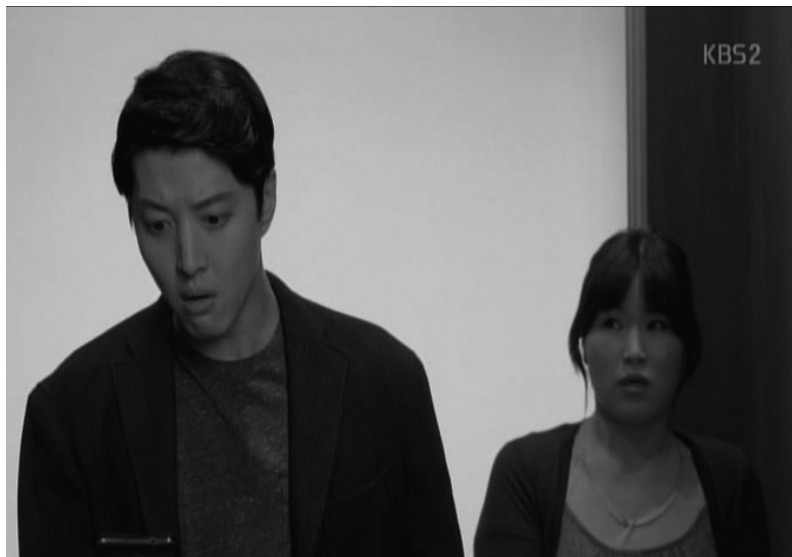
< 관련자료 : SBS-TV ‘너의 목소리가 들려’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2.5)
- 방송프로그램 : KBS-2TV <미래의 선택>(2013.10.19, 13:40-15:4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방송작가와 아나운서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에서, “이 ××끼”, “정말 ×같은”, “××멋있어 보이는 줄 아냐?” 등 남자주인공의 욕설 장면을 일부 효과음 처리(일부 입모양 가림 처리)하여 방송하고, 해고되었던 여주인공이 방송작가가 될 기회를 얻게 되자 남자직원들이 “근데, 어떻게 꼬신 거야? 혹시 뭐 김신이랑 잤어?”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함.

〈 관련자료 : KBS-2TV '미래의 선택' 〉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2.5)
- 방송프로그램 : MBC-TV <황금어장 라디오스타>(2013.9.18, 23:20-24:3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연예인들이 출연해 진행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코믹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야, 이 ××새끼야.”, “저 ××새끼가 오줌 똥다고, ××!” 등 출연자들의 욕설 장면을 일부 효과음 처리하여 방송하고, ‘설국열차의 패러디로 떡국열차’, ‘베드신을 함의로 하는지, 애드립으로 하는지’ 등 성애영화와 관련한 성적 발언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C-TV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5.8)
- 방송프로그램 : SBS-TV <궁금한 이야기 Y>(2013.3.22, 20:55-21:5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외국어 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경상남도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사 폭행사건을 재연하면서, 사건 발생 장소가 경상도이고, 가해 학부모(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설정) 또한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연장면에서는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묘사함.

라디오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7.25)
- 방송프로그램 : TBN인천교통방송-FM <브라보 마이웨이>(2013.6.7, 00:00-02: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인간탐구생활> 코너에서, 인간의 각기 다른 반응과 심리상태를 알아보는 내용을 진행자의 내레이션을 통해 방송하면서, ‘차 없이 사는 뚜벅이 인생탐구’를 주제로, “남자가 뚜벅이로 사는 건 지구의 오존층을 막기 위한 슈퍼 울트라 개념완성 환경보호 때문이 아니에요.”, “뚜벅이로 살다보면, 별 우라질네이션 같은 시추에이션을 많이 겪게 돼요.”, “봄날의 워킹데이트, 판타스틱 베이비”, “그래도 남자는 하체 튼튼, 뱃살 훌쩍, 요즘 건강이 좋아지고 있어 아싸! 가오리예요. 그런데 가끔 보행자 레알 왕 무시하는 운전자와 한 판, 두 판, 대판할 때가 많아요.”, “이런 된장 같은 이라고...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해. 이 십 원짜리 동전아.”, “남자는 이런 썸장! 경운기 대신 울트라 캡송 눈빛으로 썰어보며 말해요.”,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야.”(6월 7일 방송분) 등의 발언을, ‘야간 택시 기사의 인생탐구’를 주제로, “오늘도 손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빈 택시 불빛만 우라질네이션 도로를 빛내고 있어요.”, “서울 강남인지 어딘지는 승차거부로 단속을 하네마네 하는 열나 캡송 부러운 뉴스도 들리는데...”, “빈 택시로 혼자 멍하니 있다 보니 말 통하는 아싸라비아 손님이 반갑기만 해요.”, “유난히 큰 목소리로 ‘아빠, 아빠’ 하는 품이 이런 된장, 여자승객이 남자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무턱대고 나쁜 남자 취급하는 건 완전 슈퍼 울트라 억울해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으로 킹왕짱 기분 나빴어요. ‘나도 집에 당신 같은 딸 있어요’라며 안심시켜주고 싶지만, 셔터마우스하고 그냥 달려요.”, “회식은 개뿔따구, 척 보니 꾸리꾸리한 관계예요.”, “시베리아 별판에서 십 원짜리 동전 주을 인간이에요.”(6월 8일 방송분) 등의 발언을, ‘마트시식 판매 주부사원의 인생탐구’를 주제로, “시식행사는 오늘 같은 휴일에 열나 캡송 많이 열려요.”, “시식행사는 일단 호객용 멘트가 완전 레알 중요해요.”, “행사안내 멘트에서 열나 짱 왕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아이 칭찬으로 마음의 방어벽을 허무는 게 울트라 캡짱 중요해요.”, “오 마이 갓, 이런 된장 같은, 아이 엄마는 유기농이라는 말에 순식간에 위치 이동해 버려요.”, “이런 된장, 썸장, 고추장.”, “이 우라질네이션 식신은 사지도 앓으면서 굶는 족족 먹어치워 일생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야.”(6월 9일 방송분) 등의 발언을 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9.26)
- 방송프로그램 : KBC-FM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2013.8.2, 18:30-21:5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 및 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제10조(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제5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8월 2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기아 대 넥센' 프로야구 경기를 해설자가 생중계하는 과정에서, 시상품 협찬주의 상호명, 위치 및 해당 업체가 주최하는 오픈기념 행사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또 다른 시상품 협찬주의 기업표어 및 협찬주명을 2회 소개하는 내용, 시상품으로 제공하는 한우에 대해, “아, 거세 소가 자르지는 않고, 그걸 까버리는구나.”, “그걸 까버려 가지고 정자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시 소네, 내시 소. 거세 소가 아니고 내시 소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뭘 모르니까 아니 내가 소를 까봤어야 알죠. 내 것도 안 깎는데.”라고 말하는 내용, 타 구단에 대해 언급하며, “잘근잘근 조사 갖고 탕탕이 낙지 만들듯이 완전히 조사 부러 가지고 한번 조슬 때마다 1점씩 뽑아갖구요. 200 : 1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9절 기타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 ① 방송은 전화정보서비스를 포함한 유료정보서비스(이하 "유료정보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청자에게 비용부담의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디오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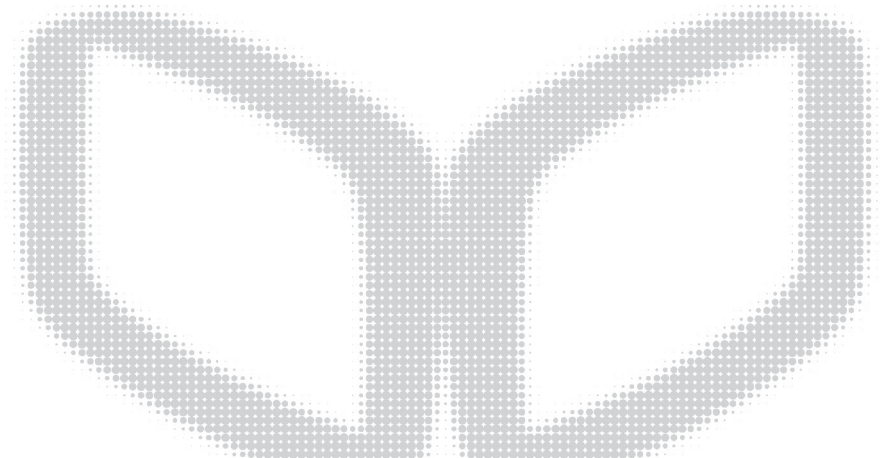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2.18)
- 방송프로그램 : 안동MBC-AM <즐거운 오후 2시>(2013.12.2, 14:15-16: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1·2부에 1회, 3·4부에 3회에 걸쳐 청취자의 문자메시지 사연과 신청곡, 퀴즈 정답 등의 참여를 안내하면서, 유료정보서비스인 문자메시지에 대한 비용부담 사실 및 구체적인 비용부담금액(부가정보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을 고지하지 않음.

지상파방송 심의사례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3장 방송사업자별 기준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이 영 제6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 할 수 있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제8조(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① 영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캠페인협찬(이하 '캠페인협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캠페인 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 ②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행사협찬(이하 '행사협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 ③ 영 제6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프로그램제작협찬(이하 '프로그램제작협찬'이라 한다)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 ④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고종료시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시상품 또는 경품의 협찬고지(이하 '시상품등의 협찬'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및 시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20초 이내로 제한한다.

⑥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의 협찬고지(이하 '장소등의 협찬' 이라 한다)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등의 경우 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제10조(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① 캠페인협찬의 고지는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

② 행사협찬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

③ 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을 밝힐 수 있다.

④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시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밝힐 수 있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시상품등의 협찬고지는 제공되는 시상품명 및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1회에 한해 고지할 수 있다.

⑥ 장소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해당부분 소개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협찬주명과 함께 2회 이내에서 고지할 수 있다.

텔레비전 부문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24)
- 방송프로그램 : KBS-2TV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2013.6.7, 20:50-21:50 등)
-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8조(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제5항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협찬주가 제공한 시상품의 소개 및 노출이 프로그램 말미 협찬고지 시에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중간에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을 시상품으로 소개하여 노출함.

라디오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27)
- 방송프로그램 : CBS-FM <오미희의 행복한 동행 2부>(2013.2.14, 21:00-22:00 등)
-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청취자에게 제공하는 시사품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의료법」제56조)에 의거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성형외과)을 협찬주로 고지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3.6)
- 방송프로그램 : BBS-FM <활력 충전 2시, 4시>(2013.2.4, 14:05-15:55 등)
-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0조(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제5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청취자에게 제공하는 시사품을 일괄 고지하는 과정에서, “모든 불자들의 건강과 활력을 기도하는 그 곳, 영도다리 옆에 위치한 ○○에서 문화상품권”과 같이 기업표어와 위치를 모두 고지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9.4)
- 방송프로그램 : MBC-AM <윤정수, 이유진의 2시 만세>(2013.8.12, 14:15-16:00 등)
-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0조(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제5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진행자가 청취자를 대상으로 퀴즈를 출제하고 정답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특정 협찬주를 2회 이상(12일 2회, 13일 2회, 15일 4회) 고지함.

유료방송 심의사례 (보도교양부문)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1절 공정성

제9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제작기술 또는 편집기술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합편성·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27)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2부>(2013.11.4, 17:10-18:1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진행자와 출연자가 인터넷 기사의 네티즌 댓글을 통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여론을 진단하는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뉴스> 코너에서, 특정 국회의원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일방의 주장만을 지지하는 댓글을 방송하고, 진행자와 출연자가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4.18)
- 방송프로그램 : JTBC <미각스캔들>(2013.2.16, 22:00-22: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음식 관련 소비자 검증 프로그램에서 콩고기의 불투명한 제조 과정과 원료의 문제점 등을 다루며, 콩고기의 제조과정이 건강 친화적이지 않다거나 콩고기의 원료인 글루텐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무관한 내용 등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콩고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주고, 문제의 방법으로 콩고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된 민원인의 회사를 잠입취재하면서, 민원인과 제작진이 대화를 나누거나, 민원인의 업체에 함께 방문하는 모습을 방송하여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JTBC '미각스캔들' >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6.13)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2013.5.13, 16:40-17: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제4항,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제로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5·18은 무장폭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당시 북한군 약 600명이 해상 등을 통해 광주에 침투했다는 내용, 출연자가 광주사태를 전후하여 북한의 게릴라인 2진이 들어왔고 땅굴을 통해 3진이 들어왔다고 발언하는 내용, 진행자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빨갱이·폭도 등으로 매도된 데 대한 의구심을 해결할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6.13)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2013.5.15, 16:50-18: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를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제4항, 제9조(공정성)제1항,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대담하면서, 5·18 당시 남과 특수군이라는 인물이 "광주폭동 참가했던 사람들은 조장, 부조장들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어요."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사실, 공공연한 사실', '한국, 5.18 진실 밝히는 탈북자 죄인 취급', '대부분의 탈북자들, 5·18 관련 보안각서 썼다' 등의 자막과 함께 출연자들이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주장과 북한군 침투 과정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3.27)
- 방송프로그램 : SBS CNBC <집중분석 TakeE>(2013.1.11, 07:45-09: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제2항, 제14조(객관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MB의 기부금, 331억〉이라는 주제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주식회사 다스 지분 5% 청계재단 기부한 정황', '청계재단의 인적구성', '청계재단 출연재산에 포함된 담보대출', '청계재단에 기부된 주식회사 다스 지분 5%의 효과', '다스 비지금에 대한 BBK사건 특별검사 수사 내용' 등 사회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당사자 측의 의견이 충분히 균형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사실관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 객관성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① 방송은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할 때에는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및 오차한계 등을 밝혀야 한다. 다만, 여론의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회적인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된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의견을 조사할 때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합편성·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5.15)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TV조선 주말뉴스 日>(2013.4.21, 18:30-20: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탈북자 상무, 기내 난동 파문> 아이템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내 모 대기업 상무의 기내 난동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대기업 상무를 탈북자로 자막 표기하여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9.25)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TV조선 뉴스쇼 판>(2013.8.6, 21:40-23: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출연자인 의사를 소개하면서, ‘1934년 대구生, 경북대 의대卒, 예일대 의대 정신과 박사, 화병을 세계 정신의학 용어로 등재시킨 정신과 전문의’라는 약력을 자막으로 방송하는 등 출연자의 최근 출판 저서와 현 소속 대학교에 기재된 학력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23)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뉴스 스테이션>(2013.9.28, 09:00-10: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이슈 IN〉 코너에서 진행자들과 출연자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추징금 환수 가능 여부’에 대해 대답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김우중 전 대통령’ 이라고 수차례 잘못된 호칭으로 발언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3.21)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2013.1.28, 16:50-18: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김용준 총리후보자 관련 의혹들에 대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과거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재직 시절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을 내렸음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군대를 다녀왔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감정적인 견해를 진행자가 밝히거나, 진행자가 후보자 아들의 몸무게를 비꼬며 “대한민국에서 20대 청년 가운데 170cm에 45Kg...이하가 있으면 저희 쾌도난마에서 초청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0.24)
- 방송프로그램 : 뉴스Y <뉴스와이 15 - 종합뉴스>(2013.9.7, 15:00-16: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미국·서방, 시리아 예상 공격 시나리오> 아이템에서, 미국과 서방의 시리아 예상 공격 루트를 그래픽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라크 영토 지역을 시리아로 표기하고, 아라비아해를 홍해로 표기하는 내용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뉴스Y '뉴스와이 15 - 종합뉴스' >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17)
- 방송프로그램 : JTBC <썰전>(2013.6.27, 23:10-24:1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새누리당의 차기 대권주자에 대해 예측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새누리당 내에서 차기 대권주자 해가지고, 여론조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번 6월 18일날 JTBC에서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새누리당 지도자감 누구냐 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9.9%로 1위였고, 정말 전통의 강자 정몽준 전 대표가 7.9%.”라며 새누리당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 대한 JTBC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의뢰기관과 조사기관 만을 구두로 고지하고, 조사기간 · 조사방법 ·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고 방송함.

사례 7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8)
- 방송프로그램 : MBN <시사마이크>(2013.9.25, 15:20-16: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제1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방송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진행자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3자회담 결렬 책임’, ‘국정원 대공 수사권에 대한 폐지’, ‘증세 필요성’, ‘대북정책’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기간 만을 고지하고, 의뢰기관 · 조사방법 · 조사기관 · 오차한계를 밝히지 않고 방송함.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31)
- 방송프로그램 : National Geographic Channel <원시 고래잡이 마을 라마레라>(2013.7.6, 15:00-15:4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원시 마을의 남자들이 배를 타고 고래사냥을 나갔다가 고래상어를 잡는 과정을 보여주며, 내레이션으로 “드디어 성공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래상어가 잡혔다는 것, 상어를 닦았다하여 이름은 고래상어이지만, 굉장히 순한 어종에 속한다.”라고 한 뒤, “한 시간여의 대치 상황 끝에 고래를 제압했다. 이제 고래를 단단히 밧줄로 고정시킨 후, 마을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오늘은 위풍당당하게 고래와 함께 마을로 돌아 왔다”라고 하고, 고래상어로 만든 요리에 대해 “별다른 양념 없이 고래에 소금을 넣고 끓인 고래고기야 말로 이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애타게 기다려 왔던 최고의 만찬인 것이다”라고 하는 등 상어에 해당하는 고래상어를 고래라고 표현하여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19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합편성·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6)
- 방송프로그램 : JTBC <연예특종>(2013.10.18, 21:50-22: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여가수 성폭행 사건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건 당일 두 사람의 행적을 되짚기 위해 여가수가 들른 주점의 주인을 대상으로 취재하면서, 주점 주인의 동의 없이 취재진 사이의 대화내용이나 운영 중인 가게의 전경 등을 촬영하여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13)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2013.10.1, 14:30-15:3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3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채동욱 前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대답하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세컨트’, ‘후첩’, ‘기동서방’ 이라고 발언하며,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대답 중 혼외 관계로 의혹이 제기된 여인과 가정부 사이에 작성된 채무이행 각서를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는 과정에서, 혼외 관계로 의혹이 제기된 여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일부를 여과 없이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7.11)
- 방송프로그램 : MBN <MBN 뉴스 8>(2013.5.13, 20:00-20: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윤창중 前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가족들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윤 前 대변인의 자택 현관 앞에서 “적막감이 감도는 가운데 윤 전 대변인의 아내의 울음소리가 하염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울음소리는 한 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어머니를 위로하는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라는 기자의 리포트와 함께, 자택 안에서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윤 前 대변인 아내의 울음소리를 녹음하여 방송(약 5초)하는 등 사건과 관계없이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N ‘MBN 뉴스 8’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2)
- 방송프로그램 : MBN <MBN 뉴스 8>(2013.9.6, 20:00-20: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한때 이석기 의원과 학생 운동을 함께 했던 국회의원들이 현재 이석기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80년대 친북 지하세력에 몸 담았다가 지금은 극우로 전향한 하태경 의원”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방송하여, 특정 정치인의 성향을 ‘극우’로 단정 지어 보도함.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23)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2013.9.6, 12:35-14:1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남·여진행자와 출연자가 논란이 된 이석기 의원의 구속수감과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치 비평·풍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정희·김재연 의원이 이석기 의원을 두고 ‘충성경쟁’을 하고, 세 사람은 ‘삼각관계’에 놓여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특정 정당의 정치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0.10)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2013.8.8, 15:15-16:0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제9조(공정성)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출연자들이 “박원순 시장이야 지금 계속되는 참사에... 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거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거짓말 했던 게 지금 자꾸 드러나 가지고 방통심의위 심의까지 받게 됐고.”, “책이 ‘즐거운 정치’ 요? ‘흥악한 정치’ 지... ‘음흉스런 정치’ 라든지.”라고 발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들에 대해 비판하며, “방통심의위에서 이번에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참 가관이었는데, 노골적으로 안철수 거짓말을 비호하다 보니까 헛소리들 정말 많이 했어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방송심의... 민주당의 충견 노릇들 해 봐야 나 참 그 사람들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런 짓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 >



사례 7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수정 및 경고(2013.9.26)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문갑식의 신통방통>(2013.8.5, 10:55-12: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유명 배우 아들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열아홉 살 때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특징은 아버지는 열아홉에 결혼을 하고, 아들은 스물네 살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고.. (아들은) 아주 못된 짓은 골라서 하고 있구만요... ○○○ 씨가 열아홉 살 때 애를 낳았다니까,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못시켰나요?... 자식교육이 정말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TV조선 '문갑식의 신통방통' >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6.13)
- 방송프로그램 : RTV <뉴스타파N(3회)>(2013.3.18, 20:00-20:4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제1항, 제14조(객관성)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미스터 따범, 권재진의 낯뜨거운 이입식>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권재진 전 법무장관은 이명박 정권 5년동안 검찰을 충견으로 길들여 보스인 이명박 대통령을 보호한 인물이었습니다”, “정권의 일등 공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에게 사면심사위원장으로서는 면죄부를 주는 일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특정인과 특정 조직에 대해 비하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를 주제로 다루며 KBS 보도에서 기자가 “군은 북한이 당장 도발할 징후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된 방송화면 만으로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방송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3)
- 방송프로그램 : (주)티브로드낙동방송 <티브로드 부산투데이>(2013.6.11, 14:00-14:3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지역 뉴스 및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에서, 야학 수강생 중 김정고시에 합격한 사례를 인터뷰하며, 특정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합격증서를 여과 없이 노출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5조(윤리성) ①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생명의 존중) ① 방송은 살인, 고문, 사형(私刑), 자살 등 인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긍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② 방송은 인신매매, 유괴, 매매춘, 성폭력, 노인 및 어린이 학대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묘사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내용전개상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상하는 장면을 다룰 때에는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①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 ②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8조(건강한 생활기풍) 방송은 건강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은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거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방송은 제작·편성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청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표절금지) 방송은 국내외의 다른 작품을 표절하여서는 아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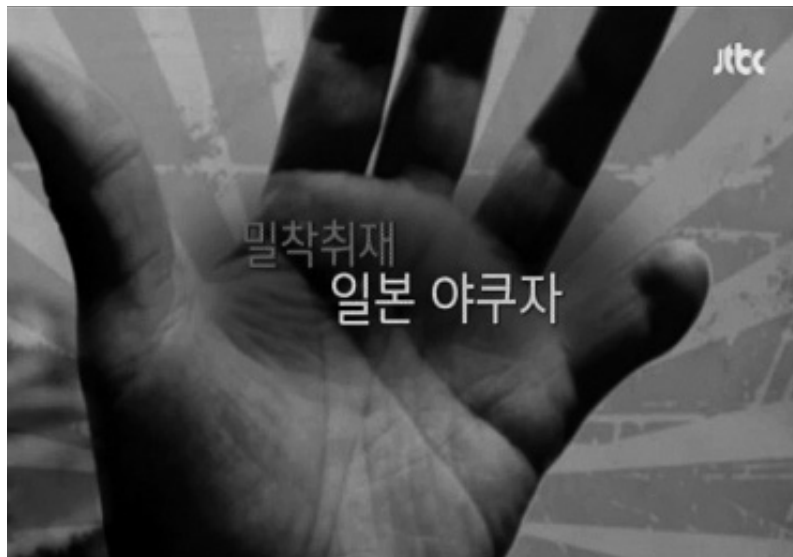
종합편성·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2012.10.10)
- 방송프로그램 : JTBC <JTBC 프라임>(2013.8.11, 08:10-09: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야쿠자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야쿠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자비를 베풁니다.”, “야쿠자가 요구하는 상납보호비는 소상공인들이 내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없다면 야쿠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봐야죠. 목숨을 바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절대 야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인은 돈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자존심이 우선이죠.”, “야쿠자는 암흑가에 드나들면서 마약을 다루는 악질의 외국 조직단과 맞붙기도 하죠.”와 같은 야쿠자 조직원의 인터뷰를 통해, 야쿠자 조직의 존재 필요성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JTBC 프라임’ >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2013.1.10)
- 방송프로그램 : MBN <추적 사각지대>(2012.12.2, 23:00-24:1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제2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고등학생인 아들의 폭행과 폭언으로 고통을 받는 가족의 사연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야, XX하지 마, XX. 어디서 연기야. X같은 XX야.”, “너 진짜 뒤질래?”와 같은 욕설을 하거나 “엎드려, X같은 XX아. 한 100대만 맞자. 니가 다리 한쪽 부러지고 그러면 내가 닥치고 있을 테니까 다리 하나만 부러지자. XXX아.”, “입 다물어, XXX아. 이걸로 니 입 쳐가지고 앞니 다 부숴 버리기 전에 닥치고 입 다물어. 대가리 들어”라고 하며, 아들이 몽둥이로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N ‘추적 사각지대’ 〉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27)
- 방송프로그램 : JTBC <쇼킹 70억>(2013.1.31, 18:40-19:3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생명의 존중)제3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5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키르기스스탄 유목민의 전통 기마 럭비 경기인 ‘콕보루’ 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염소 사체를 공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목민이 염소의 목을 칼로 자르자 목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 염소의 다리를 칼로 잘라내는 모습, 머리와 다리가 잘린 채 공으로 완성된 염소의 피 묻은 사체를 들어 보이는 모습, ‘콕보루’ 경기 중 말에 탄 선수가 염소 사체를 바닥에 끌며 달리고, 이어 골대에 집어던지는 모습 등을 일부 화면처리 하여 방송함.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23)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2013.9.5, 10:30-11: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프로그램 시작 전 진행자가 이석기 의원에 대해, “후안무치, 뻔뻔함의 극치를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석기 의원, 외대 용인캠퍼스 연극반에서 NL주사파 의식화를 교육받았다고 하는데 연극반 출신답습니다... 국가기관의 모습에는 박해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만면에 미소를 띠우고 있는 연극을 하고 있는 혼한 말로 다중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진행자가 방송에 부적합한 감정적·자극적인 용어·논조를 사용하여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30)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문갑식의 신통방통>(2013.8.27, 09:50-10: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논문 표절 적발에 대해, 출연자가 “계속 잡고 있는데... 안 걸리는 사람 없을 겁니다... 방통심의위원들도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자기 논문 표절 쓴 사람들이 남의 방송 이렇게 괴롭히는데 싹 다 전수 검사해 가지고 모두 쫓아 낼 겁니다.”라고 하고, 진행자가 “짜그리? 전수조사를?”라고 재차 묻자, 출연자가 다시 “방통심의위에서도 쫓아내고, 해당 대학에서도 쫓아내고 제가 그거 확실히 장담합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 출연자가 객관적이지 못한 발언을 감정적으로 사용하여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6.27)
- 방송프로그램 : MBN <미시의 시사데이트 1부>(2013.4.23, 12:50-13: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심리학 교수인 출연자와 남·여진행자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이른바 '뇌구조'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겠다는 마음을 아주 이분은 잘 드러내는 거죠... 내가 믿는 거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민이나 도민들은 잘못하면 언어맞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도 아마 오세훈 시장처럼 경남 도민은 아예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이 분을 그냥 날려버리는 방법도 한 번 제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MBN '미시의 시사데이트 1부' >



사례 7

- 결정 사항 : 주의(2013.7.11)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2013.5.3, 16:50-18: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 · 의결 내용

진행자와 前 국정원 고위간부였던 출연자가 <국정원의 추락, 원인은?>이라는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출연자가 “김만복 원장... 어찌다가 그놈의 출세욕에 눈이 멀어 가지고 이렇게 변했소?... 김만복이 편들었던 분들 반성 좀 하시오!... 김실장 당신 똑똑히 들어, 그래 국가정보원이 어린애들 뒷골목에서 노는 어린애 장난조직이야?... 청와대 어떤 자의 짓인지 밝혀! 너 못 밝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걸 물고 늘어질 거야... 국가정보원장이 아프가니스탄인가 어디 목사 구출작전에... 색안경 그거 쓰고 폼 잡고 말아야. 야, 이거 어린애 장난이냐? 정보관 교육 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 등 고성과 반말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



사례 8

- 결정 사항 : 주의(2013.9.12)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2013.7.17, 18:40-19: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내용

뉴스 오프닝 멘트에서, 앵커가 “귀태”, “히틀러”, “당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민주당이 이번에는 난데없이 성희롱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원내총무 의원은 기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그리고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은 너무 늦게 빼는 것이라면서 성적 농담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 >



사례 9

- 결정 사항 : 경고(2013.4.18)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2013.2.12, 16:50-18: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내용

시사평론가인 출연자가 진행자와 <민주당 5적(賊)>이라는 주제로 대담하면서, '나꼼수'가 '민주당의 5적'이라고 하며, 정봉주 의원을 자기 자랑이 심한 '깎대기'라고 비하하고, 노무현 前 대통령과 관련하여 자살한 사람에게 '서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발언하며, '새누리당 5적(賊)'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세력을 키운 상황을 만든 오세훈 시장을 지목하고, 정운찬 총리를 도덕관념이 없는 '여우'라고 칭하며, 전두환 前 대통령을 새누리당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5적이라고 발언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



사례 10

- 결정 사항 : 경고(2013.5.9)
- 방송프로그램 : JTBC <JTBC 뉴스 9>(2013.3.22, 20:50-21:36)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내용

‘고위층 성 접대 동영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동영상을 재연한 화면을 보여주며, 기자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여성이 남성에게 다가와 흥을 맞춥니다. 남성이 이 여성에게 가까이 가서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갑자기 하의를 벗습니다.”, “그리고 선 채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관계를 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실제 성행위를 한 것인지, 장난처럼 시늉만 하는 것인지도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속옷 차림의 남성이 노래를 부르다가, 여성이 다가오자 여성 뒤쪽에 바짝 붙어 서서 노래를 부르고, 이어 하의를 벗는 장면, 여성 뒤쪽에 속옷을 입은 남성이 바짝 붙어 서 있는 모습의 엉덩이 부분을 클로즈업한 장면, 여성의 허리를 남성이 손으로 감싸 잡는 모습을 클로즈업한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JTBC 뉴스 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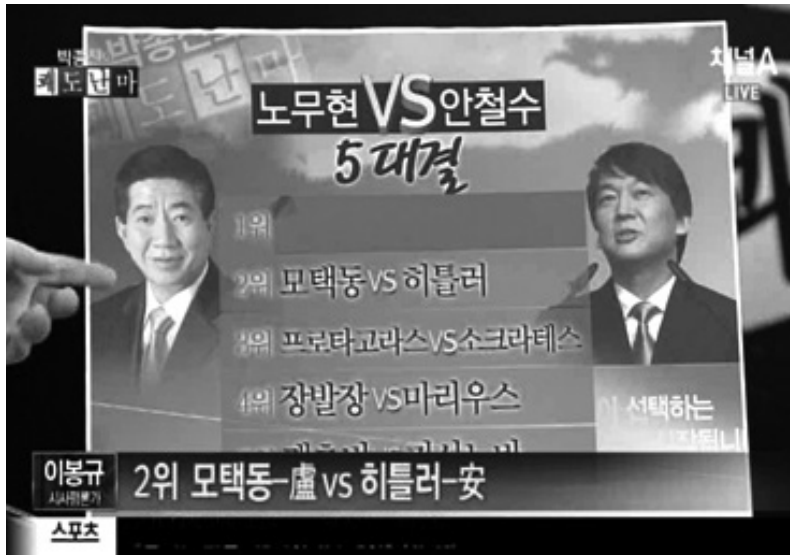


사례 11

- 결정 사항 :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7.11)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2013.5.24, 20:20-21: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내용

시사평론가인 출연자가 진행자와 <노무현 VS 안철수 5대결>이라는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윤창중 前 대변인의 성추문 사건을 거론하면서, 노무현 前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은 윤 前 대변인과 대조되는 이른바 ‘밀고 당기기’에 능한 ‘개츠비’, ‘카사노바’와 유사하다고 발언하는 내용, 안철수 의원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선동한다는 점에서 ‘히틀러’와 닮은 점이 있다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



사례 12

- 결정 사항 :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7.11)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2013.5.30, 20:20-21: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내용

출연자들(가수 장윤정씨 동생과 어머니)이 진행자와 장윤정 씨와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동생의 가산탕진과 관련하여, 장윤정씨의 동생이 공증서를 보여주며 초기 자본 5억을 날렸다는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내용, 어머니에 대한 미행과 정신병원 감금 시도와 관련하여, 본인이 바람피우는 것으로 의심을 한 딸이 미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외삼촌과 외숙모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거론하며 딸이 본인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다고 말하거나, 프로그램 종료 시 진행자가 “이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 싶으면 장윤정씨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출연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



사례 13

- 결정 사항 : 권고(2013.8.14)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2013.7.18, 16:30-18: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제2항
- 심의·의결 내용

유명 배우인 출연자가 진행자와 국방부의 연예병사 폐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물론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를 했을 때, 엄격한 규칙제도를 더 높여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못하게 만들어야지... 저도 뭐 군대 갔다 나오면 다 그런데 가봅시다. 호기심에서도 가보고, 또 남자가 태어나서 뭐 정말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친구들의 그 철없는 그런 실수 하나가 평생을 그 친구들한테 가슴 아프게 한다는 거는 저는 같은 뭐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연예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내용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출연자가 해당 사례를 모든 남성이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화 시키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14

- 결정 사항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경고(2013.7.25)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2013.3.26, 16:50-18: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를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내용

시사평론가인 출연자가 진행자와 <5대 얼짱 여성 정치인>이라는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4위로 선정한 전현희 의원에 대해 출연자가 “전현희 의원 예쁘죠...60 이상 나이 드신 어르신 의원들이 밥 먹고 싶어서 줄 서고 있다고, 그만큼 매력적이라고.”하고, 3위로 선정한 김재연 의원에 대해, “매력적이죠... 연관검색어에 보면 몸매, 미니스커트... 실제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저거 밑에가 미니스커트예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짧은 치마를, 몸매에 자신이 있으시니까 아직도 짧으시고.”라고 하며, 2위로 선정한 나경원 의원에 대해, ”아, 진짜 이쁘죠... 뭐 탤런트 같아요. 실제로 봐도 그리고 목소리도 이뻐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



사례 15

- 결정 사항 :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7.25)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뉴스특보>(2013.7.7, 10:10-11:1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 심의 · 의결 내용

뉴스 진행자들이 아시아나 여객기 착륙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경위 및 관련 사상자 등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부관계자가 사망자 2명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2명이 사망자로 신원이 지금 파악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서 충돌사고 일으킨 아시아나 보잉 777여객기 사고가 우리시각으로 오늘 새벽 3시 반쯤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사망자는 2명이 확인이 됐고요.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행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채널A ‘뉴스특보’ >



사례 16

- 결정 사항 : 권고(2013.5.8)
- 방송프로그램 : MBN <리얼다큐 숲>(2013.1.17, 22:00-23: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 심의·의결 내용

심마니인 출연자들이 이른바 ‘대물 약초’를 캐기 위해 산행하는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야산을 돌아다니며 팽이 등의 도구로 흥더덕, 흑도라지, 지치, 박달상항버섯 등의 약초를 채취하는 장면과 남쪽 해안 절벽 쪽에서 바위를 들춰내고 대형 하수오를 채취하는 장면 등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는 내용 등 「산림보호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30)
- 방송프로그램 : MTN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 시즌2 1부>(2013.10.5, 07:30-08:5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주식시황에 대한 전망과 시청자가 보유한 증권종목에 대해 상담하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특정 종목을 기관들은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들은 다 바보, 병신인가 봐요. 우리나라 기관들은 다 천재고. 우리나라 기관들은 △△를 이렇게 다 내다 파는데, 외국인들은 전부 다 바보, 병신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를 기관들이 다 팔 때 이거를 다 사고 있어요”, “외국인들한테 물량 다 주는 거, 전 이거를 신 매국노라고 불러요, 진짜, 신 매국노. 매국노가 다른 거예요? 나라의 부 빼주는 게 매국노예요. 이게 매국노지, 뭐가 매국노예요?”, “이 반장은 미쳐가지고, △△, 아휴, 저는 미쳤나봐요”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8.22)
- 방송프로그램 : PAX TV <이겨야 산다 주식배틀>(2013.7.10, 12:30-13:3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증권·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심층 진단하고 전문가들 간 수익률을 겨루는 프로그램의 <서호만의 주식 깔때기> 코너에서, 진행자가 한중 FTA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 “중국은 식품 위생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더러움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나라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거 수산물에 들어있는 납붕돌 뿐만 아니라 최근 나오는 플라스틱 쌀, 그리고 화공약품으로 만든 계란, 낙엽까지 섞인 고춧가루 등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죠. 단순한 경제의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 달려 있다는 점들, 정치인들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들이 처먹어 보든지, 에이씨”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PAX TV ‘이겨야 산다 주식배틀’ >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2013.8.22)
- 방송프로그램 : 이벤트TV <리얼토크 여우야담>(2013.7.1, 00:23-01:12)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ARS 전화 연결을 통해 시청자의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에서, 성관계와 관련된 고민을 상담해 주는 과정 중, 남성 상담자가 “저희가 아찔한 곳에서 성관계 하는 것을 좋아해서 고속버스 뒷자리에서 한 적도 있고, 칸막이 쳐진 커피숍 같은 데나 이른 새벽에 동네공원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찔한 곳에서 하는 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모텔에서 하게 되면 발기가 잘 안되더라고요”라고 하고, 상담가가 음경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하며, “제대로 삽입이 안 된 상태에서 여성상위 채위라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딱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응급실을 찾을 수도 있겠죠”라고 설명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고, 상기와 같은 내용을 방송하면서 시청자에게 30초당 1,00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이벤트TV ‘리얼토크 여우야담’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2013.7.11)
- 방송프로그램 : 복지TV <고민해결 프로젝트-말하고 싶어요>(2013.5.8, 00:05-00: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54조(유료정보서비스)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ARS 전화 연결을 통해 시청자의 고민을 듣고 상담하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군대 간 남자친구가 있는데 다른 남자가 마음에 든다는 시청자에게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남자를 만나야 되거든요...”라고 하고, 여성상담가에게 “결혼까지 할 때 남자를 30~40명 만나셨나?”, “대한민국의 남자한테 고백 받아 본 적 없죠?”라고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하고, 이러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시청자에게 30초당 1,000원의 비용이 부과되는 유료정보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복지TV ‘고민해결 프로젝트-말하고 싶어요’ >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2.5)
- 방송프로그램 : 일자리방송 <리얼다큐 시크릿>(2013.10.17, 04:25-04:4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진정한 생활기풍), 제41조(비과학적 내용)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풍수 등과 관련된 현상을 실제 사례로 풀어보는 심령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사업 실패로 무속인을 찾은 사례자가 상담을 받는 과정을 다루며, 무속인이 “돈가스 했어? 아이고 이 사람이 망했지? 그거 망할 수밖에 없어요... 터란 게 그래요 원래”라고 하는 내용, 무속인이 해당 사례자가 운영하는 펜션을 찾아가 주위를 살피며 “여긴 귀신 소굴이야”라고 말하고, 귀신을 접신(接神)하며 “저게(마당에 있는 나무) 나무가 아니여... 저것 좀 어떻게 좀 해줘”라고 하는 내용, 무속인이 고목나무 귀신을 접신하는 의식을 치르다가 갑자기 몸을 떨면서 괴성을 지르는 내용, 고목나무 귀신을 달래는 의식을 마친 뒤 내레이션과 자막으로 “부동산 투자, 이제 터의 비밀까지 알고 접근한다면, 더 이상 부동산 실패로 우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자극적인 음향과 화면으로 방송함.

< 관련자료 : 일자리방송 ‘리얼다큐 시크릿’ >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2013.4.18)
- 방송프로그램 : 일자리방송 <TV속풀이, 만사형통>(2013.3.11, 00:00-01: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41조(비과학적 내용)
- 심의·의결 세부 내용

ARS 전화 연결을 통해 시청자들의 고민을 듣고 타로카드로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외도가 의심되는 시청자의 남편에 대해 “남편이 아마 다른 여자분과 만나는 것 같아요... 아마 남편분이 그 여성분하고 이별을 하는 것으로... 아내분과 다시 한 번 재결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내용, 명예퇴직 압박에 대한 시청자 고민을 상담하며 “두 번째 (카드)... ‘노동’, ‘감봉’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런 처지에 놓이신 거잖아요”, “세 번째 카드... 전화 주신 분이 앞으로 힘을 쓰는 일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첫 번째 카드는) 여기서 떠돌이, 집 내 놓기만 하고 계속 떠돌고만 있잖아요”, “다음 카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시면... 집이 좀 더 빨리 잘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일자리방송 ‘TV속풀이, 만사형통’ >



보
도
교
양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자살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자살방법을 암시하는 표현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① 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 살인, 자살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마약류의 사용 및 이로 인한 환각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 ① 방송은 불가피하게 범죄, 자살 또는 선정적인 내용을 재연기법으로 다룰 때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린이를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 ② 방송은 재연기법을 사용할 때에는 재연상황이 실제상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료행위 등) ①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 ② 방송은 의료목적으로 다룰 때에도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시청자가 증상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방송은 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종합편성·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 1. 23)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뉴스와이드 활 2부>(2012.12.24, 11:00-12: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남·여진행자가 주요 교통사고의 사례와 안전운전 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호대기 상태로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지나가던 할머니가 보행자 신호상태에서 출발한 대형트럭 전면부에 치이며 밀려가다가 쓰러지고, 이후 동일 차량이 쓰러진 할머니를 덮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차량용 블랙박스 화면을 수차례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4.24)
- 방송프로그램 : JTBC <쇼킹 70억>(2013.3.28, 19:10-20: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장례비용을 마련할 때까지 시신(屍身)을 집안에 모셔 두는 인도네시아의 '토자라' 마을의 전통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장례비용을 마련하지 못 해 아버지의 시신(屍身)을 집에 모셔 둔 남성의 이야기를 통해, 집 안에 있는 관 속에 1년여 간 모셔져 미라 상태가 된 아버지의 시신 얼굴을 노출하고, 시신의 머리카락 및 눈·코·입과 작은 벌레들이 시신의 얼굴에 기어 다니는 모습 등을 근접 촬영한 장면, 미라 상태가 된 다른 4구의 시신 사진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3.21)
- 방송프로그램 : MBN <MBN 뉴스 8>(2013.1.17, 20:00-21: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사고로 치고 다시 차로 밟고 달아난 ‘뺑소니 택시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운전자(택시기사)가 도로에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지 못해 차로 밟게 되고, 앞바퀴에 남성이 낀 상태로 차가 이동하는 장면과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사람이 끼인 것을 확인하고 남성이 깔린 채로 다시 차를 몰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가 덜컹거리는 장면 등을 일부 화면 처리하여 방송함.

< 관련자료 : MBN ‘MBN 뉴스 8’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5.9)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모큐드라마 싸인>(2013.3.5, 19:30-20:3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6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특정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형식의 모큐드라마 프로그램에서, 같은 장소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남성의 시체가 발견된다는 에피소드 중 스튜디오에 괴한들이 침입하여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나 흥기 등으로 차량을 부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화재로 사망한 여인에 대한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가족들끼리 몸싸움을 하거나 샅을 들고 위협하는 장면, 모자이크 처리된 피흘리며 쓰러져 있는 시체모습, 자동차가 사람을 치고 지나가는 CCTV화면 등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채널A '모큐드라마 싸인' >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2.7.31)
- 방송프로그램 : JTBC <JTBC 뉴스 9>(2013.7.4, 20:50-21:3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2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유형가의 인적이 드문 아침시간대에 상가의 금고를 손쉽게 열어 현금을 훔친 절도범이 검거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해당 절도범이 금고를 연 방법과 관련하여, 기자가 “이 씨는 또 주점이나 음식점 등 가게에서 쓰는 대부분의 금고 아래에 비상열림장치가 있다는 점을 알고 손쉽게 돈을 훔칠 수가 있었습니다.”라며, 실제 업소용 금고의 바닥면에 있는 비상열림장치를 보여주고, 손가락으로 해당 장치를 살짝 당겨 금고를 여는 방법을 시연하는 장면과 함께 ‘비상열림장치 이용해 손쉽게 금고 문 열어’ 라는 자막을 방송하는 등 범죄 방법을 시연하는 장면과 함께 기자 멘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함.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2.7)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TV조선 주말뉴스 7>(2012.12.22, 19:00-20: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 혐의로 구속 중에 도주한 피의자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자가 “제가 영상을... 여자들이 머리에 꼽는 실핀입니다. 실핀을 이용해서 수갑 열쇠를 만들어서 저렇게 손쉽게 푸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진행자가 “쉽네요?”라고 말하는 내용과 실핀을 특정 모양으로 만들어 수갑을 실제로 푸는 과정이 담긴 참고영상 화면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TV조선 'TV조선 주말뉴스 7' >



사례 7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7.11)
- 방송프로그램 :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2013.5.18, 08:00-08:5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과거의 복수심으로 한 여인을 살해했지만, 추적 결과 피해자는 그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인물이었다는 에피소드 중, 살인사건의 실제 현장검증 장면을 방송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을 재연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피의자가 마네킹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계단에서 미는 과정과 피해자가 죽지 않자 수레에 싣고 바다에 빠뜨리는 장면을 재연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함.

< 관련자료 :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사례 8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5.9)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박근형의 추적자>(2013.3.16, 22:00-23: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미제사건인 '강진 연쇄 아동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실종 아동들의 행방과 용의자 등에 대해 알아 보며, 각종 상황 등을 재연하면서, 한 남성이 대낮에 육교를 이용하는 여자아이의 뒤를 쫓아가다가, 여자아이의 뒤에서 책가방과 옷을 잡아채며 납치하려 하자 아이가 몸을 흔들며 저항하는 장면, 남성이 해당 아이를 납치 한 후 승복을 입혀 앵벌이를 시키고 위협하는 장면, 납치된 여자아이가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껌을 팔며 앵벌이를 하는 장면, 한 남성이 성폭행을 위해 평소 안면이 있던 동네 남자아이를 집으로 유인하고 아이가 이불 위에 쓰러지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TV조선 '박근형의 추적자' >



사례 9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4.18)
- 방송프로그램 : JTBC <여보세요>(2013.3.1, 22:00-23: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귀신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실제 퇴마사를 초대하고, 출연한 퇴마사들이 스튜디오 천정에 귀신이 있다고 하자 연예인 출연자들이 놀라는 장면, 수맥봉을 통해 귀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며 종과 호루라기를 이용해 귀신을 부르고 연예인 출연자들이 본인의 신상과 운세 등에 대한 질문을 하자 수맥봉이 꺾치거나 벌어지는 장면, 귀신의 존재에 대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몸만 없는 혼’ 이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여보세요’ >



사례 10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1.10)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스토리 잡스>(2012.11.23, 00:30-01:3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직업 소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역술인과 무당이 출연하여 연예인 패널들의 관상·사주·점 등을 봐주며 대화하는 과정에서, 무당인 출연자가 연예인 패널의 과거에 일어났던 사고나 개인 신상에 대해 얘기하자 사실이라며 놀라는 내용, 역술인인 출연자가 연예인 패널들의 운세를 예측하는 내용, 무당 출연자가 연예인 패널의 점괘를 보며 과거 사업에 실패했었던 일을 맞추고, 2013년도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며, 무당은 이런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JTBC '여보세요' >



사례 1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6.26)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이영돈PD, 논리로 풀다 시즌2>(2013.5.27, 23:00-24:1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프로포폴에 대한 실체와 효능 등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프로포폴을 맞은 뒤 마취 상태에 빠지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모습과 프로포폴 투약 약 12분경과 후, 진행자와 의사가 다음과 같이 대화하는 내용을 방송함.

- ▷ 진행자 : 되게 개운한 느낌에다가 시간이 무지 오래 잔 느낌이에요... 12분이 아니라 밤새도록 잔 것 같다니까요.
- ▷ 의사 : 그것 때문에... 이 약을 주게 되면 수면 유도가 확 되는 거죠.
- ▷ 진행자 : 제가 그동안 가졌던 피로가 10분 동안에 다 풀린 거예요?
- ▷ 의사 : 다 풀렸다고 할 수 없지만 다른 것보다는 이 약 때문에 많이 풀린 거죠... 잠깐 자도 폭 잔거예요...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약재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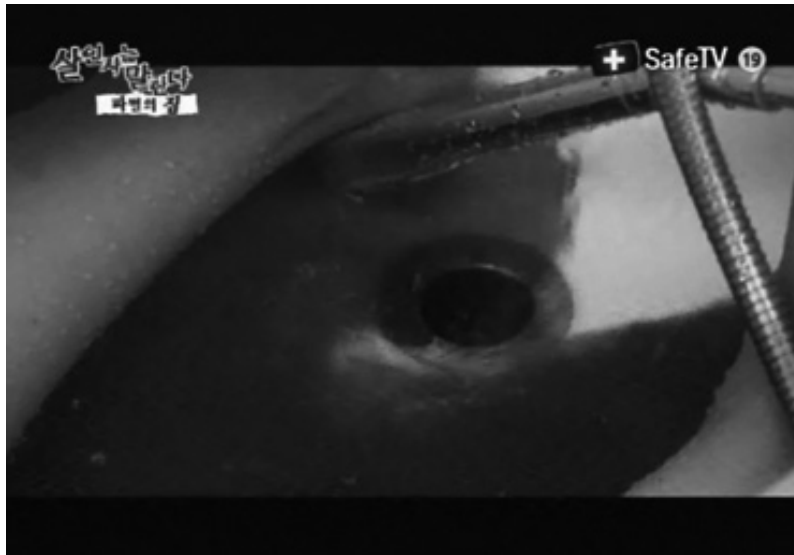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3.7)
- 방송프로그램 : 세이프TV <살인자는 말한다>(2013.1.28, 05:00-05:4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제4호, 제39조(재연기법의 사용)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실제 발생한 살인사건을 범인의 시점에서 재연하고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구박과 친구들의 학대를 받던 가해자가 부모를 살해한 사건을 재연하며, 밤새 술을 마신 가해자가 새벽이 되자 방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를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잠시 후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도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는 장면과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어머니의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간 뒤 욕조에서 톱·칼·망치를 사용하여 토막을 내고 욕조 안에 피가 흐르는 장면 등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세이프TV '살인자는 말한다' >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8.8)
- 방송프로그램 : 서울신문STV <미스터리 쇼크시리즈>(2013.6.19, 21:30-22:1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4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삶과 환경을 다루는 다큐프로그램에서, 탄자니아에서 주술사들이 알비노(색소 백반증) 환자들의 신체 일부(피부, 뼈, 머리카락, 피 등)로 일명 '마법 물약'을 만들 수 있다며, 어린 환자들을 유기·살해하는 현장을 고발하는 과정 중 주술사 일당에게 허벅지 아래 부분이 잘린 뒤 살해된 5세 아이의 유골 전체 모습과 허벅지 아래 절단 부위를 근접으로 촬영한 장면, 지역 경찰이 얼굴에 피가 엉겨 있고 안면이 일그러져 있는 다른 피해 어린이의 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과 없이 방송함.

< 관련자료 : 서울신문STV '미스터리 쇼크시리즈'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6절 어린이·청소년 보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수용수준) ①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②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편성·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1.10)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황상민 교수의 가족 두 개의 문>(2012.11.20, 18:50-19:5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갈등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심리치료 등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에서,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13세 아들이 가족들의 팔을 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가위 등을 들고 위협하는 장면, 아버지에게 “다 아빠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알겠어? 다 옛날에 나한테 했던 거 갚아주는 거야.”라고 하고, 어머니에게 “빨리 줘 돈... 다시 한 번 말해봐. 맞고 싶어?... 닥쳐, 닥쳐, 다시 한 번 ‘안 돼’ 라고 말해봐. 말해봐!... 아프다고 엄살 부리지마... 빨리 정신 차리라고!” 등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함.

< 관련자료 : TV조선 ‘황상민 교수의 가족 두 개의 문’ >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8.8)
- 방송프로그램 : MBN <세상의 눈>(2013.7.8, 09:00-10:1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여름철 카페인 과다섭취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코너에서, 남·여 진행자와 의학 교수인 출연자가 스튜디오에서 일명 '붕붕드링크'의 제조에 필요한 재료인 이온음료, 에너지 드링크, 가루형 비타민제 등을 준비해, '붕붕 그레이트 스위트'와 '하이퍼 붕붕 디럭스' 두 가지 '붕붕 드링크'를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시연·시음하는 내용과 향간에 떠도는 '붕붕 드링크'의 효능을 진행자의 발언과 자막으로 설명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MBN '세상의 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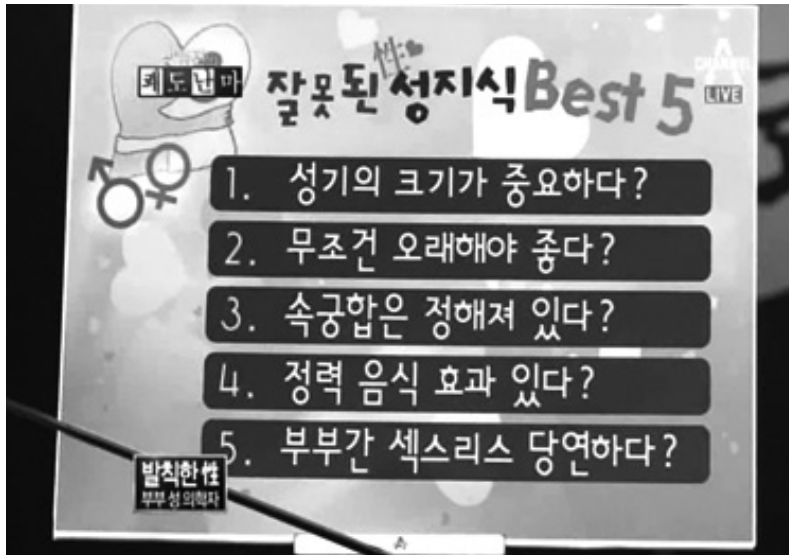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 4. 18)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2013. 2. 20, 16:50-18: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27조(품위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출연자들이 진행자와 <건강하고 행복한 性 이야기>라는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출연자들의 견해를 이야기하거나 이 과정에서 속궁합을 언급하고, 남성의 ‘삽입성애’가 1~2시간 정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평균 5~15분정도 되고, 실제 여성들은 전희를 즐긴다는 내용, ‘성기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성지식에 대해, ‘음경삽입술’을 언급하거나 한국에서 유행하는 시술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8.8)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가족 두 개의 문>(2013.6.24, 20:40-21: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를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부부간의 갈등 상황 등을 다루며, 과거 재연장면 중 남편이 임신한 아내를 때리는 모습, 아내가 “그냥 무조건 (남편이) 주먹으로 때려요... 머리끄덩이 잡아가지고 벽에다가... 심하게 때리면... 갈비뼈도 다치고 그런 식이에요” 등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 아내가 술을 마시는 모습과 이에 화가 난 남편이 발길질 등으로 아내를 위협하거나, “XX, X같은 X야... (생쥐)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진짜! XX, 너 말 그렇게 할래?”라고 욕설 섞인 폭언을 하고, 남편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모습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TV조선 '가족 두 개의 문' >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6)
- 방송프로그램 : tvN <쿨까당>(2013.10.10, 18:00-19:1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군형법」 제92조의6의 항문성교 처벌 조항이 동성애자를 겨냥한 내용 이기에 해당 조항 폐지 및 「군대 동성애자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당 조항이 군인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 토론을 벌이는 내용을 다루며, 출연자들이 계간(鷄姦) 등 항문성교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토론하는 내용, 군대 내 성폭행 및 동성애자 차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군대를 다녀온 동성애자의 인터뷰에서 항문성교 등을 언급하는 내용, 한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에게 “너는 항문성교 하니?” 라고 묻는 장면 등을 2회 차에 걸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7절 광고효과의 제한 등

-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① 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④ 협찬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법 제73조제2항제7호의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7조(정보전달) ①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을 소개할 때에는 경쟁업체나 경쟁상품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산업종 또는 신상품에 관한 생활정보를 소개할 때에는 관련된 업체 및 상품을 필요이상으로 부각시켜서는 아니되며, 일반적인 정보에 한하여야 한다.

- 제50조(상품판매) ① 방송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이외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광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프로그램 중에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 ② 제46조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종합편성·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4.18)
- 방송프로그램 : MBN <MBN 뉴스와이드>(2013.2.24, 15:00-16:3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대중문화 전문기자인 출연자와 진행자가 출연자가 집필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책 내셨다고 하셨는데... 책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릴까요?”라고 하자, 출연자가 “‘사람 속 사람 찾기’라고요,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사람’, ‘길’, ‘인생’ 이야기가 제목에 들어가면 책이 잘 된대요... 나는 변함없는 그 한 사람이고 싶고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진짜 참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 스스로도 힐링을 하면서 ‘사람 속 사람 찾기’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화면 하단에 ‘△△ 대중문화 전문기자 힐링 에세이 ‘사람 속 사람 찾기’ 발간’이라는 자막을 고지하고, 출연자가 책을 들고 있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N ‘MBN 뉴스와이드’ >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5.23)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2013.4.3, 16:50-18: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식품회사 회장인 출연자가 진행자와 자신의 성공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출연자의 저서 표지를 스튜디오 배경으로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장면, 진행자가 “그러면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또 다른 명언 하나... 약속시간 15분 저 건 뭐니까?”라고 묻자, 출연자가 “약속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쓴 책 ‘10미터만 더 뛰어봐’ 책 중에서 157페이지 보면 저 얘기가 돼 있습니다... 10미터 뛰면 10미터 더 도전, 한 단계 한 단계 하면 200미터까지 가는 지침서인데, 저는 정말 제가 책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책이 현재 40만부 정도 판매가 되었는데.”라고 답하자, 진행자가 “초 베스트셀러군요.”라고 언급하고, 출연자가 다시 “네, 자기개발서입니다. 분명히 많이 읽어보면 도움이 엄청나게 저는 많이 된다 라고...”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



보
도
교
양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3.21.)
- 방송프로그램 : 뉴스Y <뉴스Y>(2013.1.29, 17:00-18: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부산에 새로 오픈하는 호텔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자가 “△△ 호텔의 최상위 브랜드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강남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것입니다. 건물은 지상 34층 지하 6층 규모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줄 스위트 룸 69개와 일반 객실 269개가 들어서게 됩니다.” 라고 말하며, 새로 개장하는 호텔의 외부 전경과 내부 인테리어 등을 노출하는 장면, 기자가 “호텔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창밖으로 은빛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가 훤히 내다보이는 전망은 전국 최고입니다. 현대적인 스타일의 실내 장식에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 소재를 사용한 것도 눈에 띕니다.”라고 말하며, 광안대교가 보이는 객실전망을 노출하는 장면, 해당 호텔 관계자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해당 호텔의 장점을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뉴스Y ‘뉴스Y’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9.26.)
- 방송프로그램 : 뉴스Y<뉴스Y 13>(2013.8.3, 13:00-14: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특정 크루즈 여객선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호는... 부산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해 오사카까지 약 19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주변 풍광이 수려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다리 4개를 지나는 사이 장엄한 일몰과 일출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라며, 운항하는 크루즈 여객선의 외부 전경과 상호명을 노출하는 장면, 기자가 “갑판에는 바깥 경치를 볼 수 있는 카페가 있고, 선내에는 레스토랑·면세점·편의점·사우나 시설까지 있습니다. 하룻밤을 보낼 선실도 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스위트 선실부터 단체 손님을 위한 스탠더드 룸까지 다양합니다. 스탠더드 룸은 비행기 일반석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라며 크루즈 여객선의 내부 시설과 객실 인테리어를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뉴스Y '뉴스Y 13' 〉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24)
- 방송프로그램 : YTN <뉴스아이 2부>(2013.8.26, 11:00-12: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정보전달)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국내 맥주 소비량 변화에 따른 국산 맥주와 해외 맥주의 수출입 액수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료 화면으로 할인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국내·외 제조사의 다양한 맥주(MAX, Hite, OB Lager, OB Blue, Cass Light 등)를 노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맥주(Cass Light)를 클로즈업 하여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함.

등록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3,21)
- 방송프로그램 : PAX TV <인사이드 카>(2013,1,14, 12:25-13: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자동차 관련 뉴스와 중고차 매매 정보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중고차 매매 HOW> 코너에서, 출연자가 “중고차 포털 오토인사이드를 운영하고 있는 △△입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 전문가 오토인사이드’라는 문구를 자막으로 고지한 장면, 중고차 매매 정보를 소개하며 매매 대상 중고차의 사진·가격·주행거리 등이 기재되어 있는 ‘오토인사이드(현대캐피탈 Auto inside)’ 인터넷 사이트 화면을 수차례 노출하고, 진행자가 “자세한 내용은 오토인사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등의 발언과 함께 홈페이지 URL을 자막으로 수차례 고지한 장면을 방송함.

< 관련자료 : PAX TV ‘인사이드 카’ >



보
도
교
양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5.9)
- 방송프로그램 : CNTV <新 동의보감 맛기행>(2013.3.19, 06:00-06:3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몸에 좋은 음식 20가지를 선정하여 효능과 요리법 등을 소개하는 정보프로그램에서, 부추의 효능을 소개하고 부추요리 전문음식점을 찾아 시식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특정 음식점의 상호 및 전화번호가 적힌 간판과 메뉴가 적힌 입간판을 가림처리 없이 노출하고, 진행자들이 음식을 시식한 후, 진행자와 음식점 사장이 “맛있다... 부추향이 나네요. 국물에서”, “진짜 느끼함이 없고... 너무 부드러운데다가, 부추향하고 조개하고 너무 다 잘 어우러져 있어요”, “원래 빈대떡에 숙주, 고사리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그걸 안넣고 부추를 넣어요”, “진짜 맛있다. 부추가 되게 탱탱하게 살아있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과자 같은데, 느끼함이 하나도 없어요”라는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 등을 ‘느끼함 zero! 수제비와 부추의 환상 조화’, ‘느끼하지 않고 바삭한 부추녹두빈대떡’ 등의 자막과 함께 방송함.

< 관련자료 : CNTV ‘新 동의보감 맛기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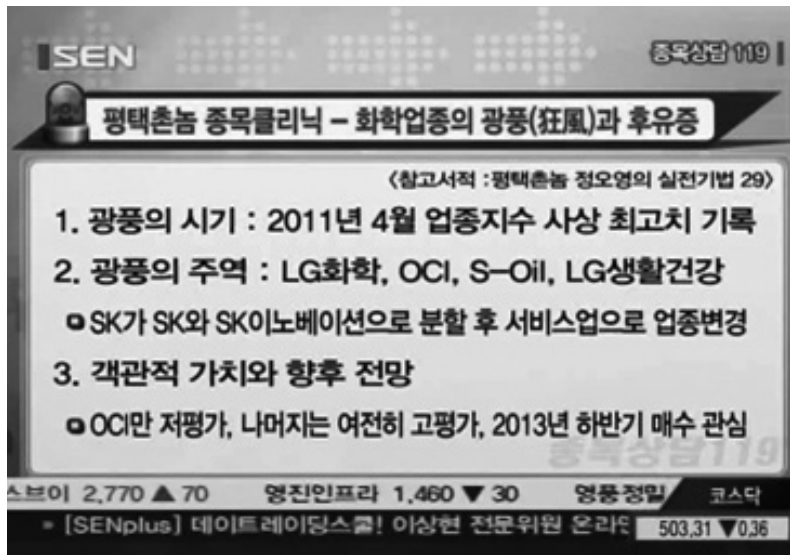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3.21)
- 방송프로그램 : 서울경제TV <종목상담 119>(2013.2.1, 18:00-19: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주식시장을 분석해 설명하고, 시청자가 요청한 증권 종목에 상담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주식 전문가가 “요건 제가 쓴 ‘평택춘남 △△의 실전기법 29’ 라는 책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저는 책을 쓰면서 차트에 관련 되갓고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썼어요. 왜 그러냐 꼭 알아야 될 것만 쓴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써놓은거 있죠. 보조지표 무용론. 아예 보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등의 발언과 함께 ‘참고서적 : 평택춘남 정오영의 실전기법 29’이 포함된 자막을 고지한 장면, 시청자가 요청한 증권 종목을 상담하면서 해당 서적이 포함된 자막을 수차례 고지한 장면, 방송말미에 진행자가 출연한 주식전문가의 SNS 및 카페 이용을 권유하는 발언과 함께, 화면 하단에 SNS 및 카페 URL을 자막으로 고지한 장면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서울경제TV ‘종목상담 119’ >



보
도
교
양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과징금 천만원(2013.4.18)
- 방송프로그램 : PAX TV <친절한 종목상담>(2013.1.31, 11:30-12:3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주식시장을 분석해 설명하는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주식전문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전문가 카페 참여방법 팩스TV홈페이지(www.paxtv.kr) → 상한과하한 김△△' 이라고 안내하는 문구를 자막으로 약 3분간 고지한 장면,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화면 하단에 '모네타 무료 보험비교 전화 1644-5011', '무료종목 추천/진단/리딩, 스타트위터 stocktw.co.kr', '선물옵션 전용 앱, 마켓 '유팍스파생' 검색' 을 흐름자막으로 수차례 고지한 장면을 방송함.

< 관련자료 : PAX TV '친절한 종목상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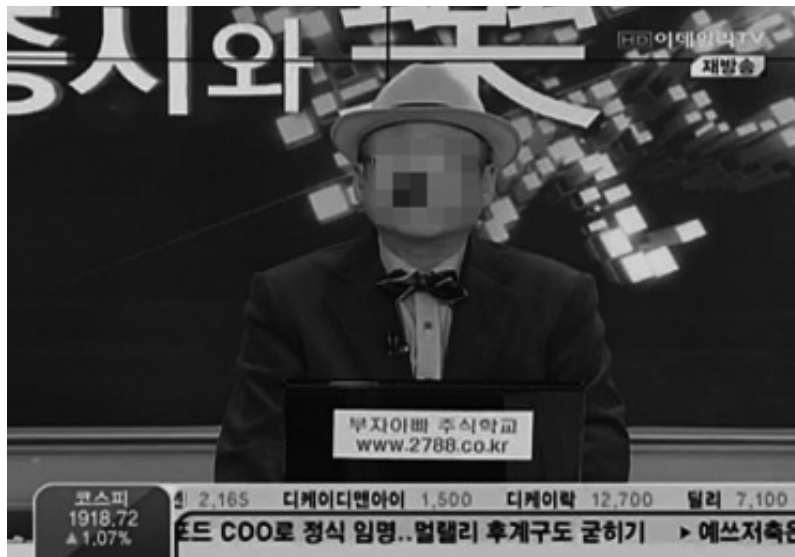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과징금 이천만원(2013. 1. 10)
- 방송프로그램 : 이데일리TV <시장을 즐겨라! 증시와 樂 1, 2부>(2012.11.3, 05:30-07:3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증시·증권에 대한 전망과 분석, 대응방안 등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에서, 출연한 주식전문가들의 사진에 ‘고수로 가는 부자아빠 주식학교’라는 사이트명을 전체화면으로 수시로 노출하는 장면, 주식전문가가 해당 사이트 명칭 및 주소를 컴퓨터 커버에 부착하여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장면, 주식전문가가 자신의 저서 내용을 약 6분 동안 설명하고 해당 서적을 노출하며 “이 책에 다 답이 있어요.”라고 발언하는 장면, 또 다른 주식전문가가 자신의 무료방송 일시와 홈페이지 주소 등을 하단 자막과 함께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이데일리TV ‘시장을 즐겨라! 증시와 樂 1, 2부’ >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6.13)
- 방송프로그램 : D.ONE <해피 창업>(2013.4.23, 16:43-17:07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정보전달)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소자본 창업아이템 소개 프로그램에서 ‘△△피자’ 물류사업을 소개하며, 제품에 대해, “다양한 피자 토핑과 함께 쌀떡 스파게티면이 함께 들어있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탄생한 것이 특징”이라는 내레이션, “가게 매출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라는 위탁판매업주의 발언, “너무 맛있어서 남기기도 싫었어요, 네 가지 맛이라는 것이 포인트 같고요”라는 손님들의 인터뷰 등을 방송하고, 창업아이템에 대해, “전업주부라던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초기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쉽게 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요”라는 창업주의 말과 20곳의 위탁판매점 섭외 및 설치를 해주어 대리점 오픈과 동시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라는 본사 관계자의 설명 등 사업의 장점·전망을 언급하는 내용들을 방송하고, 창업아이템의 특징과 창업비용을 내레이션과 그래픽 화면으로 고지함.

< 관련자료 : D.ONE ‘해피 창업’ >

창업상담 문의
02) 392-7555

<네 가지 피자 물류사업> 창업비용

- ▶ 거래처 20곳 섭외
- ▶ 냉동고 및 초도 물품
- ▶ 지역독점권
- ▶ 각종 홍보 및 판촉물

총 창업비용 890만 원

사례 7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5.9)
- 방송프로그램 : MTN <경제 매거진>(2013.3.15, 17:00-18: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정보전달)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가전 정보를 제공하는 <슈퍼 핫 트렌드> 코너에서, 2013년형 스마트 가전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특정 업체의 스마트TV, 세탁기, 에어컨 제품의 기능들을 시연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업체명·제품명을 내레이션 및 자막 등으로 노출하는 장면을 방송함.

보
도
교
양

< 관련자료 : MTN '경제 매거진' >



사례 8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5.23)
- 방송프로그램 : 부동산 · 경제TV <매물와이드 플러스 1, 2, 3부>(2013.4.8, 15:00-16:3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0조(상품판매)제1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2013년 부동산 시장 전망 및 지역별 부동산 입지여건, 개발수요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전문가가 출연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관계없이, 프로그램 하단에 'RTN정보센터 02)797-8100'의 연락처를 고정된 자막으로 노출하고, 부동산 매물의 대지, 연면적, 매매가, 주소 등과 함께, '급매', '월485만원/5층주인세대', '임대수익율 10%' 등 수익률 및 홍보성 내용을 흐름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총 105건)을 방송함.

< 관련자료 : 부동산 · 경제TV '매물와이드 플러스 1, 2, 3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4.24)
- 방송프로그램 : (주)CJ헬로비전 양천방송 <도전 살림장만퀴즈 시즌2>(2013.3.15, 08:02-08:3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농촌 지역과 시장 등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과 시장 상인에게 퀴즈를 내고 문제의 정답을 맞으면 상품을 지급하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도중 시상품에 대해 소개하면서, 진행자가 “기본적으로 장세트가 3종 세트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생활건강에서 협찬해 드리는 오미자와 안동마, 그리고 레드인 오미자청, 그리고 오색담 오미자청, 문경새재 된장, 찌개양념 맛있는 음식 다담까지 해서 오늘 아주 푸짐한 선물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퀴즈 정답을 맞힌 지역민들에게 시상품을 전달하면서, 진행자들이 “레드인에서 드리는 오미자청과 함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에서 된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문경 오미자차와 안동마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수차례(총 4회)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5.23)
- 방송프로그램 : 현대HCN <푸드매거진 잇>(2013.3.19, 13:00-13:5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유명 레스토랑에 대해 소개하는 코너에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을 소개하면서, ‘서래마을에서 만나는 컨템퍼러리 프렌치 퀴진’이라는 자막과 함께, 유명 방송인인 진행자가 “서울의 프랑스 마을이라고 불리는 서래마을을 찾았는데요. 여기 아주 맛있는,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해당 레스토랑의 상호와 외부 전경 등을 노출하고, “특히 일반 프렌치와는 품격이 다른 컨템퍼러리 프렌치로 유명한 곳인데... 들어서자마자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분위기가 물씬 나죠? 식기며 인테리어며 심플하면서 고급스럽네요. 독특해 보이는 조명은 실내를 더 아늑하고 편안하게 해 줄 것 같습니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레스토랑 내부 인테리어와 테이블 등을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현대HCN ‘푸드매거진 잇’ >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9.26)
- 방송프로그램 : (주)하나방송 <허정도의 사람, 사람들>(2013.7.27, 13:00-14: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경남지역에서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출연자와 진행자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출연자의 운동시연을 보고, “△△ 휘트니스에 가면 대표님께 직접 이제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겁니까?”라고 묻자, 출연자가 “저희 △△ 휘트니스가 6개 지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마산, 창원, 장유 뭐 전 지역에서 지금 다 가능하십니다. 제가 물론 이제 돌아다니면서 트레이닝을 직접 지도도 가능하구요.”라고 답하고, 트레이닝 센터의 위치 및 연락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전화번호를 언급·자막고지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주)하나방송 ‘허정도의 사람, 사람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8절 방송언어

- 제51조(방송언어) ①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종합편성·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5.29)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문갑식의 신통방통〉(2013.5.6, 10:00-10: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진행자와 국회의원 등의 출연자들이 정년연장 이슈에 대해, 국회의원 출연자가 “정년 60세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입니다... 저는 이한구 우리 원내대표가 좀 사회성을 확보하는데 많이 경직돼 있다...”라고 하자, 진행자가 “이한구 원내대표 얘기만 나오면 기를 쓰고 작살내시는 데 관계가 안 좋습니까?... 오늘 이한구 의원 조지러 나오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남양유업 직원의 막말 사건에 대해, 남양유업 직원이 “죽기 싫으면... 이 XX놈아... 개XX야... XX놈아... 죽여 버릴 거 같으니까... 받으라고 XX놈아”라고 말하는 녹취파일을 일부 묵음 처리하여 방송하고, 이어 진행자가 “한마디로 개자식이네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2.7.)
- 방송프로그램 : MBN<뉴스 M 1부>(2012.12.26, 15:00-16: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2항
- 심의· 의결 세부 내용

남·녀 진행자가 대선 후보를 사퇴한 후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정희 전 대선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승려 출연자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이정희도 이정희지만 나라 도둑년이거든요.”, “(고성으로)사기죄라는 게 있어요.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고, 선거에 나왔으면 끝까지 완주를 해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을 횡령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나온 사람이 지, 공정한 룰에서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국민의 심판 받으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도둑년이지 뭐니까.”, “故 박정희 대통령님은 민족중흥의 영웅이고 조국 근대화의 기슭니다. 이정희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처럼 훌륭한 사람 되라고 이름도 정희라고 지어줬는데, 이런 후레이들년이 어딴어요?”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MBN '뉴스 M 1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5.15)
- 방송프로그램 : 티브로드 전주 <시사터치 전북>(2013.4.5, 09:00-10: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기자인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식당의 위생불량 문제 등에 대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에서만 학교 다섯 곳, 식자재 납품업체 네 곳에서 다섯 곳이 (학교 급식 실태 점검에서)적발이 되었는데... 최장 7개월 이상 지난 쇠고기까지 급식재료로 써먹을, 납품하기 위해서 그걸 조작하다가 날짜를, 유통기한을 조작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구요... 그렇고 거기에 적발된 학교들도 아이들 먹일 치즈나 우유, 버터, 그 다음에 떡볶이 이런 것들을, 유통기한이 초과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학교 급식소에 보관하고 있다 적발된, 실제로 아이들에게 먹였는지는 지금 추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 대부분이 행정실장 새끼들이 해쳐먹은 거예요”라고 대화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유료방송 심의사례 (보도교양부문)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장 일반기준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협찬주명의 프로그램제목 사용 금지)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을 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예술행사·스포츠행사(중계 및 관련프로그램)의 명칭을 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이 공익성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할 수 있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종합편성·보도채널 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6)
- 방송프로그램 : MBN <국제암엑스포 2013 캠페인>(2013.10.8, 10:20-10:21)
-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국제암엑스포 2013> 캠페인 종료 시, '이 캠페인은 국제암엑스포 사무국과 △△ 한방병원이 함께합니다.' 라는 내레이션을 방송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병원명인 협찬주명(한방병원)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3.21)
- 방송프로그램 : JTBC <연금복권520 행복캠페인>(2013.2.15, 10:54:52-10:55:21 등)
-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희망과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자는 내용의 캠페인 종료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협찬고지가 금지된 복권 수탁사업자명(한국연합복권)을 자막으로 협찬고지하는 내용을 수차례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연금복권520 행복캠페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6)
- 방송프로그램 : 현대HCN충북방송 <나이스온12시>(2013.9.10, 12:00-13:00)
-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프로그램 종료 시, 협찬주명(ELLE golf, 나이스유틸티니스클럽, 현대스크린골프존)을 고지하면서, 매장 위치를 자막으로 동시에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함.

유료방송 심의사례 (연예오락부문)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2절 객관성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6)
- 방송프로그램 : MBN <신세계>(2013.10.16, 23:00-24:2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최고의 신랑감에 연예인 ‘송해’가 선정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구봉서’, ‘배삼룡’이 인기가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현재 생존해 있는 연예인 ‘구봉서’의 사진 아래에 ‘故 구봉서’라는 자막을 표기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7.25)
- 방송프로그램 : TV조선 <글로벌 토크쇼 헬로헬로>(2013.5.22, 23:00-24:1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출연자들의 한국 경험담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출연자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 조엘 씨는 무려 42년째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서...”라고 하고, 해당 출연자가 “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농사짓기 싫어 갖고 (미국)군대를 지원을 했어요... 71년도에 한국으로 온 거죠.”라고 말하는 내용, ‘한국생활 무려 42년째 ‘△△ 조엘’, ‘미국에서 1971년에 떠나 한국 온지 42년인’, ‘1971년 주한 미군에 자원입대’, ‘이제 영어가 안 돼’ 등의 자막, 출연자가 미국 출신임을 나타내는 성조기가 그려진 명찰을 가슴에 부착하고 나오는 내용 등 실제로는 혼혈 한국인인 출연자를 한국에 오래 거주한 외국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TV조선 ‘글로벌 토크쇼 헬로헬로’ >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5.23)
- 방송프로그램 : 뷰 <모큐멘터리 진짜 사랑>(2013.3.20.수, 23:00-23: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려 허구의 상황을 실제 상황처럼 가공한 모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남성편력이 심하고 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의 사연을 방송하며, 프로그램 시작시 ‘이 프로그램은 모큐멘터리 기법을 도입하여 실제 사례자의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자막 고지하고, 종료시 ‘△△님의 실제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라고 연기자의 이름을 자막 고지하는 장면을 방송하여 연기자가 사연의 주인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연의 주인공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뷰 ‘모큐멘터리 진짜 사랑’ > 사진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8.8)
- 방송프로그램 :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2013.6.21, 18:50-19:3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매주 주제를 정해 1위부터 19위까지 순위를 알아보는 랭킹쇼 프로그램에서,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진행자가 "다른 나라들은 음주운전자들을 어떻게 처벌할까요? 불가리아에서 음주운전 재범자는 교수형에 처해지고, 엘살바도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그 즉시 총살당한다고 합니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는 장면을 방송함.

< 관련자료 :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19조(사생활 보호) ①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부당하게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흥미를 목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 서 녹음 또는 촬영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방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명예훼손 금지) ①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사자(死者)의 명예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 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2)
- 방송프로그램 : JTBC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2013.4.20, 20:45-21:5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조선 시대 인조 집권 당시를 배경으로, 궁궐 내 여인들 간 권력을 둘러싼 암투를 다룬 사극에서, 후궁인 여주인공이 인조의 사랑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아들을 낳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이 낳은 딸과 바꿔치기할 아들을 낳아줄 천민 부부를 물색하는 내용, 여주인공이 딸을 낳자 천민이 낳은 아들과 몰래 바꿔치기 하고, 그 아들을 인조 등이 송선군이라 호칭·지칭하는 내용, 송선군의 출생과 관련하여, 여주인공의 정적(政敵)들이 인조의 친자가 아님을 밝히고자 하고, 여주인공은 이러한 비밀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내용 등 실존 인물의 실명을 사용하면서 해당 인물의 출생배경에 대해 왕실의 자손이라는 역사적 기록과 달리, 천민의 자식이라는 내용을 방송함.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8.22)
- 방송프로그램 : tvN <tvN E news>(2013.7.16, 11:30-12:3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3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연예계가 정보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성형의 어두운 진실'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을 다루며, "턱 교정 수술 중 동맥이 터지면서 과다출혈을 일으킨 20대 여성, 6,000cc의 혈액을 수혈 받고서야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이 여인은 바로 걸그룹 출신 A양이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기자가 A양 학교에서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후 A양과 통화한 내용을 음성 변조하여 자막과 함께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함.

< 관련자료 : tvN 'tvN E news' >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20)
- 방송프로그램 : ETN <연예스테이션>(2013.1.15, 16:00-17: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제1항·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연예계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오락프로그램에서, 가수 '박재범'의 팬사인회 행사소식을 전달하는 과정 중, 민원인이 "○...○...○이요."라고 본인의 이름을 말하자 박재범이 "○○○?"이라고 되물으며 CD에 사인을 해주는 장면과, 민원인의 요청으로 티아라를 머리에 쓴 박재범과 민원인이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장면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절 윤리적 수준

제25조(윤리성) ①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가족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가족 내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 유지) ①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청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 ②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은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거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방송은 제작·편성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시청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며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6)
- 방송프로그램 : MBN <천기누설>(2013.1.17, 23:00-24: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요가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출연자가, 기관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비강(鼻腔)청소법(수트라네티)’을 소개하면서, 식염수로 세척한 고무관을 콧속으로 넣은 후 반대쪽 끝을 입으로 빼내어 고무관의 양 끝을 잡고 앞뒤로 수회 움직이는 장면을 방송하고, 위장 관리하는 비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출연자가 식염수에 적신 붕대를 조금씩 삼키고 “(붕대가) 위까지 내려갔습니다.”라고 말한 뒤, 격렬하게 배를 움직이는 동작을 취하고, “붕대를 먹고 나서 위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나울리라는 행법입니다.”라고 설명한 후, 위에 들어간 붕대를 다시 입으로 빼내어 누렇게 변한 붕대를 보여주며 “(위에) 안 좋은 물질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7.11)
- 방송프로그램 : JTBC <대한민국 교육위원회>(2013.5.2, 18:00-19: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중년 여성들의 성형 열풍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출연자들 간에 “만약 부인이... 남들이 안 보는 곳, 우리가 예전에 ‘이쁜이’ 라고 했던 것도 있었고... 그런 거는 괜찮으세요?”, “이 양반이 다른 건 몰라도, ‘이쁜이’ 는 꼭 시킬 것 같아.”, “저는 ‘이쁜이 수술’ 시켰어요... 그거는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부부관계를 위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라고 말하는 내용과 ‘예쁜이 수술(후질벽 복원술, Posterior vaginal repair) : 출산 따위로 늘어난 질 구멍을 작게 하려고 하는 질 봉합수술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라는 자막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대한민국 교육위원회’ >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7.11)
- 방송프로그램 : JTBC <신화방송>(2013.6.2, 19:40-20: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36조(폭력묘사) 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리얼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무한걸스’ 프로그램의 주요 출연자들(송은이, 신봉선, 김신영, 김숙, 백보람)이 ‘신화’의 한 멤버를 납치하고, 이를 다른 ‘신화’ 멤버들이 구출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납치된 출연자를 밧줄로 묶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내용, 납치된 출연자의 눈을 가린 채 끌고 가면서 성기가 구조물에 부딪히게 하고 웃는 내용, 여성 출연자들이 납치된 출연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목과 성기주변 등에 묶은 고무줄을 당긴 채 끌고 다니거나, ‘가슴터치’, ‘이 짜릿한 손맛’ 등의 자막 등을 사용하여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신화방송’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3.21)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웰컴 투 시월드>(2013.1.31, 23:00-24: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진정한 생활기풍)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결혼식에 얽힌 출연자들의 사연 등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성 출연자가 본인의 결혼식에 대해, “꽃 값이 1,200만 원 들고, 그 다음에 각 테이블 당 와인도 한 병씩 두니까 그게 또 500들고... (드레스가)2,500만원.”이라고 하자, 진행자가 “식비가 1억이 든 거죠?... 2010년 칠레 와인 500만 원... 케이크가 100만 원, 상들리에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대여가 25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650만 원.”이라고 하고, 또한 출연자가 본인의 예물에 대해, “1(캐럿), 1, 2, 1... 가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거는 샤프, 반△△△이고, 1,000만 원 넘었던 거 같아요. 둘 다.”라고 하는 등 출연자가 본인의 초호화 결혼식과 고가 예물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채널A ‘웰컴 투 시월드’ >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9.11)
- 방송프로그램 : 애니원 <짱구는 못말려 NO.3 흑부리 마왕의 야망>(2013.8.23, 16:00-18: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어린이 짱구의 가족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며 시간의 흐름을 파괴한 범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짱구의 가족이 과거 일본인들의 복장을 하고, 다 불에 타버린 주변을 둘러보며 16세기 후반이니까 아마 조선시대일거예요”, “지금은 조선시대니까 아마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경고(2013.8.8)
- 방송프로그램 : tvN <화성인 X-파일>(2013.6.27, 20:10-21: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보통 사람들과 다른 외모 · 성격 · 생활방식 등을 가진 특이한 사람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시스티보이 화성인과 두 누나를 소개하며, 카페에서 작은 누나가 남동생과 입을 맞추고, 자신의 입에 넣었다 뺀 얼음을 남동생에게 먹여주는 장면, 집에서 작은 누나가 남동생과 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장면, 작은 누나가 남동생을 업고 화장실에 데려다주고, 남동생이 배변한 변기를 바라본 후 변기의 물을 내리는 장면, 집에서 큰 누나가 남동생에게 입을 맞추고, 엉덩이를 주무르고, 무릎에 앉힌 후 반복적으로 입 맞추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tvN ‘화성인 X-파일’ >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8.8)
- 방송프로그램 : QTV <어렵쇼!>(2013.7.3, 21:50-22: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중 겪는 난감한 상황을 게임을 통해 체험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들이 방귀를 부르는 간식을 먹고 물속에 들어가 방귀로 많은 기포를 터트리는 게임을 진행하던 중, 출연자가 쭈그려 앉은 자세로 “제가 지금 이게 방귀인지 잘 모르겠어요. 느낌이 방귀인지”라고 말한 뒤 방귀를 끼고 웃으며 쓰러지는 장면, 엉덩이에 봄 마이크가 놓인 상황에서 방귀를 끼자 폭소하는 장면, 물속에서 방귀를 끼었으나 기포가 나오지 않자 웃는 장면,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간이 풀장의 기둥을 넘다가 방귀가 나오자 크게 웃는 장면, 물속에서 쭈그려 앉은 자세로 물방귀를 끼어 기포가 올라오자 박장대소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관련자료 : QTV '어렵쇼!'>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4.18)
- 방송프로그램 : E채널 <용감한 기자들>(2013.3.2, 13:30-14:2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기자들의 황당한 취재이야기를 전해주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의 동영상을 유포한 남성 관련 사건에 대해 “그 남자는 겉으로 보기엔 말 좀 잘하고 그 정도 밖에 없는데요. 영상을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성기확대 비유)이 잘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장면, 금은방에서 반지를 훔친 여성 관련 사건에 대해 “X레이를 찍어보니까 얘기 나오는 그 곳에 반지를 숨겼더라고요.,” “강제로 꺼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먹고 떨어지라며 그것을 꺼내서 경찰 얼굴에...”라고 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20대 여성의 다리에 정액을 뿌리고 도망간 40대 교수 관련 사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여성 출연자가 정답을 맞추기 곤란해 하자 남성 출연자가 “정액이요?”라고 묻고, 남성 진행자가 “정액! 정답입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E채널 ‘용감한 기자들’ >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7.25)
- 방송프로그램 : m.net <M Countdown>(2013.6.13, 18:00-19:3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남성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과정 중, 여성 댄서들이 다리를 벌리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왼손은 바닥을 짚고 오른손은 올린 후 엉덩이를 올렸다 내리고, 오른손을 허벅부에 놓고 엉덩이를 돌리며 춤추는 장면을 카메라 위치(앞, 위)를 다르게 하여 2회,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m.net 'M Countdown' >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10.10)
- 방송프로그램 : MBC SPORTS+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2013.8.10, 18:00-22:1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프로야구 정규리그 'LG vs 두산' 경기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에서, 5회 말 두산의 선수가 친 뜬 볼이 잡힌 뒤 관중석을 보여주는 과정 중, 관중의 상의 등 쪽에 적힌 '존나 시끄러' 라는 글자가 노출되는 장면을 생방송 및 재방송으로 여과 없이 방송함.

< 관련자료 : MBC SPORTS+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



사례 7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2013.2.7)
- 방송프로그램 : tvN <화성인 바이러스>(2012.12.4, 21:00-22: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보통 사람들과 다른 외모·성격·생활방식 등을 가진 특이한 사람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엽기적인 다이어트 화성인’을 소개하며, ‘음식 먹고 바로 토하는 토토즐 녀’가 라면·만두를 먹고, 칫솔을 이용해 구토하거나, 과자를 먹고 비눗물을 이용해 구토하는 장면, ‘약과 주사로 다이어트 하는 먹토주사 녀’가 식욕억제제, 지방분해 약, 기름 빼주는 약 등 총 9가지 다이어트 약을 먹고, 지방분해 주사를 맞는 장면, ‘밥 대신 껌만 씹는 거식껌 녀’가 “(씹는 껌이) 하루에 15통, 보통 150개 정도”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자'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tvN ‘화성인 바이러스’ >



사례 8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 11. 21)
- 방송프로그램 : tvN <화성인 바이러스>(2013. 9. 3, 20:00-21: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3조(준법정신의 고취 등),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보통 사람들과 다른 외모, 성격, 생활방식 등을 가진 특이한 사람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청순 반전 자매'를 소개하며, 언니의 왼쪽 팔에 있는 잉어와 행성 문신, 등에 있는 천수관음 문신을 노출한 장면, 동생의 왼쪽 허벅지에 있는 일본 도깨비 한냐 문신, 종아리에 있는 꽃 문신을 노출한 장면, 자매가 타투 가게를 방문하자, 무면허 타투이스트가 자매의 팔과 다리에 시술하는 장면 등을 일부 흐림 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tvN '화성인 바이러스' >사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5절 표현기법

제35조(성표현)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③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2. 성도착·흔음·근친상간·사체강간·시신앞에서의 성행위와 변태적 형태의 과도한 정사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4. 폭력적인 행위 및 언어를 동반한 강간·윤간·성폭행 등의 묘사장면
5. 어린이·청소년을 성폭력·유희의 대상으로 한 묘사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36조(폭력묘사) ①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스포츠·게임 프로그램 등에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참수·교수 및 지체 절단 등의 잔인한 묘사
2. 자살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나 자살방법을 암시하는 표현
3. 총기·도검·살상 도구 등을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인 신체의 훼손 묘사
4. 훼손된 시신·신체 장면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6. 위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제40조(성기, 성병 등의 표현) 방송은 성기, 성병, 피임 또는 성상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저속한 표현 등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41조(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료행위 등) ①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 ② 방송은 의료목적으로 다룰 때에도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③ 방송은 편지, 엽서,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학상담을 할 때에는 시청자가 증상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에는 시청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방송은 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 및 등급조정 요구(2013.9.12)
- 방송프로그램 : MBN <고수의 비법 황금알>(2013.7.8, 23:00-24:10)
- 적용조항 : 「방송심의를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전문가들과 연예인 패널들이 <부부 관계 불 꺼놓고 하면 암 위험 커진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출연자들이 “한국 여자들은 불을 꺼놓고 할 뿐만 아니라 이불 속에서 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닥 오래 꺼놓지는 않거든요”, “부부 관계를 몇 시간씩 하진 않잖아요... 시각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1시 전에 빨리 끝내시고 주무시면 되고요.”, “남자들은 여자들의 벗은 몸을 봐야 흥분한다고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의 벗은 몸을 보면 웃음을 터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로 방송함.

< 관련자료 : MBN ‘고수의 비법 황금알’ >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3.21)
- 방송프로그램 : JTBC <가시꽃>(2013.2.4, 20:10-20:4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3항제6호, 제26조(생명의 존중)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여주인공이 재벌2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 위기를 맞으며 부모님의 죽음 및 사랑하는 남자의 배신을 경험한 후, 재벌2세를 상대로 벌이는 복수극을 다룬 드라마에서, 재벌2세인 등장인물이 여주인공을 겁탈하고, 그 과정에서 여주인공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내용, 재벌2세인 출연자가 물에 젖은 여주인공을 훑쳐보거나, 또 다른 남자 등장인물이 “아후, ㅎㅎㅎㅎ, 야, 이게 뭐, 아직도 탱탱하니, 오호~ 좋다”라고 하며 식물인간이 된 여자 주인공의 음부로 보이는 부분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가시꽃' >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 및 등급조정 요구(2013.11.7)
- 방송프로그램 : JTBC <마녀사냥>(2013.8.23, 23:00-24: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시청자 연애상담 및 영화 속 여자주인공의 매력 등을 주제로 한 토크쇼에서, 출연자들이 여성의 노브라 차림에 대한 의견이나 성적 판타지를 이야기하며, “많이 했다는 걸 자랑... 친구가 자기가 7번을 했다는 거예요.”, “내 친구들은 횡수보다는 ‘나 거기도 해봤다, 저기도 해봤다.’ 이런 거.” 라고 하고, 스킨십 경험담을 늘어놓는 남성들의 사례를 거론하고, 첫 만남에서의 잠자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로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마녀사냥’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3.21)
- 방송프로그램 : JTBC <이수근 김병만의 상류사회>(2013.1.19, 19:35-20:4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리얼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가 남성 출연자의 뺨을 세게 때려 쓰러뜨리는 슬랩스틱 연기를 하고 출연자들이 웃음을 터뜨리는 내용, 이후 남자 출연자가 고막이 터졌다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내용과 함께, ‘웃음 터지는 소리, 개그에 대한 욕심이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김병만, 녹화 중 후배에게 뺨 맞아 고막 파열’ 등의 자막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이수근 김병만의 상류사회’ >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7.11)
- 방송프로그램 : JTBC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2013.5.4, 20:45-21:5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조선 시대 인조 집권 당시를 배경으로, 궁궐 내 여인들 간 권력을 둘러싼 암투를 다룬 사극에서, 딸을 낳은 후궁인 여주인공이 다른 여인이 낳은 아들로 바뀌치기 하는 과정에서, 난산이 예상되던 여인의 배를 갈라 아이를 꺼내기 위해 단도(短刀)를 들어 임신부의 배에 찔러 넣는 장면, 여주인공이 딸을 낳았다고 소문을 내는 젊은 내관을 또 다른 내관이 포박해 광에 가두고, 몽둥이로 등과 무릎 등을 이십 여 차례에 걸쳐 내려치는 장면, 내관이 피를 흘리며 기절해 앞으로 고꾸라지자 쓰러진 내관의 머리를 몽둥이로 내려치는 모습을 근접 촬영한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 >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1.21)
- 방송프로그램 : 스크린 <은교>(2013.9.30, 09:00-11: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노년의 문학가, 그 제자, 열일곱 소녀 등 세 사람이 서로가 갖지 못한 것을 갈망한다는 내용의 영화 프로그램에서, 문학가가 소녀와의 성행위를 상상하며 글을 쓰던 중, 문학가가 소녀의 팬티를 벗긴 다음 상의 속으로 얼굴을 넣어 소녀의 몸을 만지며 상의를 벗기고, 자신도 상의가 탈의된 채로 서로의 가슴에 있는 해나를 만지는 장면, 소녀의 벌거벗은 뒷모습 노출 장면, 문학가와 소녀가 책상 위에서 성행위하는 장면 등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하고, 제자가 소녀의 옷을 벗기고 애무하는 장면, 소녀가 “여고생이 왜 남자랑 자는 줄 알아요? 외로워서 그래요.”라고 하며, 책상 위에서 성행위하는 모습 등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함.

< 관련자료 : 스크린 '은교' >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5.9)
- 방송프로그램 : 스크린 <사쿠란>(2013.3.13, 11:00-13: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에도 시대의 게이샤들의 일생을 그린 내용의 영화 프로그램에서, 어린 여주인공이 유녀(遊女)들과 목욕하는 과정에서, 유녀들이 “그 시골무사 아침까지 다섯 번이나 했어, 게다가 연달아서”라고 하는 장면과 함께, 가슴을 근접촬영하여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장면, 게이샤가 손님과 기성을 내며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게이샤를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게이샤가 남자의 등 뒤에서 칼로 찌르려하자 남자가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게이샤의 목을 칼로 찔러 피가 솟구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스크린 '사쿠란' >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8.22)
- 방송프로그램 : 애니플러스 <니세모노가타리>(2013.7.12, 01:30-02: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제3항제5호
- 심의· 의결 세부 내용

오빠의 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조건으로 남매가 내기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에서, 남자 주인공이 “칸바루 선생님의 패티쉬죽 아이디어에 패퇴하는 거다”, “이건 몸 바깥이 아니라 몸 속을 자극하는 거야”, “쾌감이 일게 된다”라고 말하며, 여동생을 칫솔질 해주자 여동생이 신음소리를 내며 쾌감을 느끼는 장면, 남자 주인공이 침대에 누워 신음소리를 내는 여동생을 보고 “신음 같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야릇해!, 막 짜릿거려!”라고 말하는 등 성적 흥분을 느끼며 자신과 여동생이 벌거벗은 모습을 상상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애니플러스 '니세모노가타리'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8.22)
- 방송프로그램 : 애니플러스 <변태왕자와 웃지 않는 고양이>(2013.7.12, 22:30-23: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소원을 들어준다는 ‘웃지 않는 고양이’ 상에게 극 중 인물들이 자신들의 겉치레와 솔직함을 제물로 바치며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다룬 애니메이션에서, 여자 주인공이 “변태(남자 주인공의 별명)가 배꼽을 만졌으면 좋겠어”라고 빌자, 갑자기 돌변한 남자 주인공이 비키니 차림의 여자 주인공을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눕혀 배꼽을 만지고, 발버둥치는 여자 주인공의 하복부가 근접하게 노출되는 장면, 다른 여자 주인공이 식사자리에서 남자 주인공을 유혹하기 위해 목욕가운을 벗어 가슴을 일부 노출하고 투명한 젤리형의 음식물을 가슴골에 넣어 남자 주인공에게 “할짝할짝 해라, 어서!”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애니플러스 ‘변태왕자와 웃지 않는 고양이’ >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7.25)
- 방송프로그램 : OCN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2013.5.16.목, 05:00-06:2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1항·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불륜을 소재로 한 2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영화 프로그램에서,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는 불륜녀의 옷을 벗기며 가슴을 애무하고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 불륜녀가 잠든 남편의 손가락을 빨며 반지를 빼내는 장면, 아내가 “왜 안서노? 나랑은 이제 안 되나!”라고 말하며, 남편의 입에 약과 술을 강제로 먹이고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 불륜녀가 벌거벗은 채 개줄에 묶여있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교수가 여제자의 옷을 벗기며 애무하고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 두 사람이 소파 위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있는 장면, 결혼식을 마치고 온 여제자와 교수가 다양한 체위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OCN '붉은 바캉스 검은 웨딩' >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11.21)
- 방송프로그램 : CH,CGV <전망 좋은 집>(2013.10.9.수, 00:10-02: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제3항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두 여성의 성(性)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 프로그램에서, 공인중개사인 여 주인공이 아파트를 보러온 여러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아파트를 보러 온 한 남성이 여성을 눕히고 옷을 벗기는 장면, 이후 여성의 가슴 등을 애무하며 성행위를 하는 장면, 아파트를 보러 온 또 다른 남성과 여성이 화장실에서 서로 옷을 벗기며 키스하고, 기성을 내며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CH,CGV '전망 좋은 집' >



사례 7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 11. 21)
- 방송프로그램 : MBC Every1 <가정부 미타>(2013. 10. 20, 08:28-09:2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엄마를 잃은 4남매와 아빠가 사는 가정에 정체불명의 가정부가 들어와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가정부가 날카로운 식칼을 꺼내 들고 청소년인 큰 딸에게 다가가는 장면, 가정부가 큰 딸을 향해 여러 차례 식칼을 휘두르며 찌르려고 하는 장면과 두 손으로 식칼을 잡고 내리찍자 식칼이 바닥에 꽂히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큰 딸이 바닥에 꽂힌 식칼을 빼서 가정부를 향해 겨누고, 가족이 들어오자 자신의 목에 식칼을 겨누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관련자료 : MBC Every1 '가정부 미타'>



사례 8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4.17)
- 방송프로그램 : 스크린 <친구>(2013.3.18, 10:40-12:5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어린 시절 친구였던 남자 주인공들이 서로 다른 폭력조직에 가담하게 되어 폭력조직의 이권 다툼에 휘말리고, 결국 친구를 살해하게 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주인공들이 고등학생 시절에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과 유리창·소화기 등을 사용하여 집단적으로 싸우면서 피 흘리는 장면, 폭력조직에 가담하게 된 주인공이 칼로 얼굴에 상처를 입어 피 흘리거나 발목을 부러뜨리고 칼로 사람을 수차례 찌르는 장면, 주인공 등 다수의 등장인물들이 고등학생 시절 롤러스케이팅장·계단·방 등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들을 방송함.

사례 9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4.4)
- 방송프로그램 : FOX <워킹데드 3>(2013.2.1, 22:00-24: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등장인물들이 좀비들을 피해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 교도소를 점령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좀비들의 머리를 관통하게 낡은 칼로 이마를 찔러 죽이는 장면, 칼로 좀비들의 가슴을 찌르고 목을 베어 머리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장면, 좀비에게 물린 등장인물의 다리를 수차례 도끼로 찍어 절단하는 장면, 쇠파대기로 좀비의 눈을 찔러 쓰러뜨리는 장면, 일행들을 고의로 좀비에게 노출시킨 남자의 머리를 칼로 찍어 죽이는 장면 등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함.

< 관련자료 : FOX '워킹데드 3' >



사례 10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2.21)
- 방송프로그램 : FX <NEW 엑소시스트>(2013.1.3, 20:55-21:5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이상 증상으로 고통받는 일반인들을 엑소시스트(퇴마사)가 퇴마를 통해 치료하는 프로그램에서, 사례자가 뱀에게 쫓기듯이 소리 지르고 울며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숨으려는 장면, 사례자가 자신의 몸을 손으로 끊임없이 긁거나 칼로 팔등을 긁는 장면을 일부 흐림 처리한 장면을 방송하고, 사례자의 몸속에서 영적 존재를 없애기 위한 퇴마의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퇴마의식을 지켜보던 사촌동생이 갑자기 제작진을 향해 공격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는 장면, 퇴마사가 백반을 사례자의 몸에 뿌리거나 밧줄로 사례자의 몸을 감는 장면, 퇴마의식 후 사례자가 가족들과 함께 장을 보고 식사하며, “그러게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왜 못 보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FX ‘NEW 엑소시스트’ >



사례 11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3.21)
- 방송프로그램 : MBC Queen <매거진 퀸>(2013.1.28, 11:26-11:56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성형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내레이션으로 “짧은 시술 시간외 붓기의 부담이 없는 뽀띠 성형이 요즘 대세이죠?”라고 언급하고, 자막으로 ‘간단한 시술로 변신이 가능한 뽀띠 성형이 대세~’ 라고 고지하는 장면, 전문의가 “필러나 보톡스, 레이저 시술은 붓기가 적고 멍도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주부님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장면, 체험자가 “성형 수술 보다 시간도 적게 걸리고 비용도 적게 드니까 저 같이 바쁜 사람들은 뽀띠 성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관련자료 : MBC Queen ‘매거진 퀸’ >(사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6절 어린이·청소년 보호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며,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수용수준) ①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②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는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의 교육적 효과를 위한 방송에서는 진행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경품이나 상품을 주게 될 때에는 사행심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출연) ①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그 품성과 정서를 해치는 배역에 출연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인대상 프로그램의 방청인으로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그들의 신분으로서 부적합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흡연·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 방송은 범죄피해를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피해상황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는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입회하여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방송은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복장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출연시키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20)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니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2012.12.29, 23:00-24: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제1항, 제45조(출연)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어린이의 눈을 통해 어른의 세계를 바라보는 <깜놀 유치원> 코너에서, “주말내내 어린 여자애랑 놀다 오니까 아주 좋아죽겠지?”, “멀쩡히 여친까지 있는 놈이 딴 기집애랑 어깨동무까지 하고 사진을 찍어?”라며 여자 어린이가 남자친구를 추궁하는 내용, 여자 어린이가 남자친구가 사준 고급 가방을 자랑하고 친구들이 이를 부러워하는 내용, 자동차 놀이를 하는 어린이 출연자들이 여자 어린이 운전자를 비난하거나 ‘자해공갈단’을 묘사하는 등 성인의 대화와 행동을 흉내 내는 배역에 어린이들을 출연시켜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2.21)
- 방송프로그램 : JTBC <패밀리팡>(2013.1.4, 09:50-10:4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코미디 프로그램 중 콩트를 통해 부부 간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부비부비> 코너에서, 아내가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하고 싶은 상황을 보여주며, 아내가 “뭘야 저 양말은, 또 거기만 씻고 나왔구만!”이라고 하고, 술이 덜 깬 남편이 새벽 4시에 옷을 입으며 “집에... 나 외박하면, 나 마누라한테 죽어.”라고 하자, 아내가 내레이션으로 “왜! 가슴에 돈도 꽂아주지 그러냐! 술만 취하면 덩비는 남편이랑은 합방사절!”이라고 하는 장면, 잠자리 도중 TV를 시청하거나 관리비 납부 얘기 등을 하는 아내에 대해 남편이 불만을 토로하는 장면 등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장면과 대사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패밀리팡’ >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2.7)
- 방송프로그램 : JTBC <무자식 상팔자>(2012.11.10, 20:45-21:5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드라마에서 남·녀 출연자가 연인관계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여자가 남자의 옛 연인에게 들었 다며 “너, 끝나면 바로 일어나 옷 입는다면서?... 너 잘한다더라? 현재까지는 니가 최고래.”라고 하는 장면, 첫 잠자리 후 여자와 남자가 “별 거도 아니다.”, “헌신했습니다.”, “똥 밟았다, 야.”, “차마 여자를 모욕할 순 없었어요... 이건 사고예요... 야한 옷 입고 나와서 술 먹여놓고 저의 뻘히 보이게, 어떤 빙충이가 사양합니까?... 그만둡시다. 교통사고 당한 셈 치면 되니까.”, “암마, 너 얼 마만이냐? 허둥지둥 형편없었어. 어떻게 진짜 삼돌이야. 힘만 세가지고...”라고 대화를 나누는 장 면, 두 번째 잠자리 후 여자와 남자가 “저번보단 낫더라.”, “점수 매겨요?”, “아직 B- 밖에 안 돼. 좀 더 노력해라.”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무자식 상팔자’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4.18)
- 방송프로그램 : JTBC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2013.3.23, 20:45-21:5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35조(성표현)제2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조선 시대 인조 집권 당시를 배경으로, 궁궐 내 여인들 간 권력을 둘러싼 암투를 다룬 사극에서, 청나라 군사가 치마가 벗겨지고 가슴이 반쯤 드러난 조선 여성 위에 올라앉아 겁탈하려는 장면과 나체의 기생 등과 골반 부위가 노출된 장면, 세자빈이 저고리를 풀어 젖히고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과 세자빈의 가슴과 유륜의 일부가 노출된 장면, 인조가 상궁과 잠자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궁의 가슴 등을 애무하고 키스하는 장면, 여주인공이 청나라 군사의 목을 칼로 찌르자, 청 군사의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 여주인공의 얼굴에 튀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JTBC '궁중잔혹사, 꽃들의 전쟁' >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6.13)
- 방송프로그램 : MBN <아궁이>(2013.4.9, 21:00-22: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토크쇼에서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과거 유흥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소위 제비족들이 여성들을 유혹하기 위해 주머니에 탁구공을 넣고 다녔다는 이야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남·여 반응의 차이, 여자들에게 돈을 받아 방을 3~4개씩 얻었다며 카바레에서 만난 여자들에게 용돈을 받아낸 방법을 출연자가 상세히 언급하는 내용, 출연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외모에 대해 평가하고, “(논현동이나 역삼동에서)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생머리 날리면서 소위 쪽쪽빵빵한 여자가 택시 기다리는 사람들은 70%가 업소 나가는 아가씨들...”이라고 일반화하는 내용, 일명 ‘호스트바’의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함.

< 관련자료 : MBN ‘아궁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부문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13)
- 방송프로그램 : CMB충청방송 <CMB스페셜>(2013.10.4, 19:10-23:3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댄스경연 대회에서 한 참가팀의 곡으로 사용된 ‘Baaam한 그녀들’ (다이나믹 듀오의 ‘Baaam’과 ‘GD&TOP’의 ‘백이가요’의 편집곡)에서, “백이가요 백이가 아주 백이가요 백 백”, “아주 백이가요 아주 백백백백 백이가요”, “둘만 보면 나도 몰래 백이가요 아니 손이가요”, “우리가요? 넌 백이가요” 등 비속어를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제2011-8호, 2011-815, 2011.2.28.)된 가수 ‘GD&TOP’의 노래 ‘백이가요’의 일부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2.11)
- 방송프로그램 : m.net <2013 MAMA in Hongkong>(2013.11.22, 20:00-24: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홍콩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음악시상식 프로그램 중 국내 가수의 공연내용을 방송하면서, 남녀 가수가 앞뒤로 서로의 몸을 밀착한 채 춤추는 장면, 허리·골반 등을 만지며 춤추는 장면, 가터벨트를 착용한 여가수와 여성댄서들이 다리를 벌리며 춤추는 장면, 바다에 엎드린 여가수의 엉덩이를 남자 가수가 손으로 누르며 내렸다 올리는 장면, 서로 입을 맞추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9.4)
 - 방송프로그램 : 어린이TV <돌려라 지구본>(2013.8.23, 16:46-16:47)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등급분류)·제5조(등급표시)
 - 심의·의결 세부 내용
- 각 나라의 귀신을 소개하는 필러 영상에서, 미국의 좀비를 소개하며, 내레이션으로 “미국에서 주로 나타나며 시체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면 공격해서 잡아먹거나 자기 들처럼 좀비로 만들어버려요”, “와, 좀비, 무섭다, 무서워”, “무기로 좀비의 머리를 겨냥하면 좀비를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라고 언급하는 장면, 음향효과와 함께 좀비를 형상화한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등급 분류·표시 없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11.21)
- 방송프로그램 : 푸드TV <심야식당>(2013.9.29, 14:25-14: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35조(성표현)제3항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자정에 문을 여는 ‘심야식당’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그린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식당에 남성 AV(Adult Video)모델이 방문하자, 남성 AV모델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고 나체의 여성 5명이 남성 AV모델 옆에서 몸을 만지는 장면과 남성 AV모델이 “자 어때?”라고 하며, 여성 배우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연출하자, 여성 배우가 기성과 함께 “대단해. 너무 세. 안 돼. 같 거 같아.”라고 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관련자료 : 푸드TV ‘심야식당’>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4.18)
- 방송프로그램 : KBS W <노홍철의 올댓리빙>(2013.3.12, 07:10-08:15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리빙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부부 금슬을 높이는 침실 인테리어>를 주제로 이야기 하면서, 진행자가 “결혼해서도 남편들이 야동을 봐요”라고 묻자 방청객들이 “저는 의외로 동영상을 좋아해요. 신랑하고는 안 해도”, “저희 신랑은 의외로 그것을 싫어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못 느끼는 것을 다른 데서 느끼는 것을 싫어하는지 질투를 하더라고요.”라고 말하는 장면, 진행자의 ‘내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 침실에 변화를 준 적 있다?’ 라는 질문에 방청객들이 “술상을 보고 샤워를 하고 안 입던 티팬티에 레이스...”, “씻고 나왔는데 신랑은 아무 것도 안 걸치고 나왔어요.”, “같이 살던 사람이고 볼 것은 다 봤는데 다른 것을 걸칠 필요가 있나요? 거추장스럽게”라고 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관련자료 : KBS W ‘노홍철의 올댓리빙’>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4.4)
- 방송프로그램 : 애니플러스 <소드 아트 온라인>(2013.2.19, 21:00-21:3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가상 현실 게임 ‘소드 아트 온라인’ 속에 갇힌 주인공과 게임 플레이어들이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펼치는 이야기를 다룬 일본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악당이 여성의 상반신을 손으로 더듬어 올라가는 장면, “네가 얼마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 30분? 1시간?”이라고 말하며 여성의 상의를 손으로 들춰 가슴이 일부 노출되는 장면, 여성의 가슴 부분을 들추며 상의를 찢어 던지는 장면, “여기서 맘껏 즐긴 후 네 병실을 찾아 갈거야. 이 장면을 녹화해서 대형 모니터에 튼 채 너랑 다시 한 번 천천히 즐기려고.”라고 말하며 여성의 얼굴과 몸을 쓰다듬는 장면, 여성의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키스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애니플러스 ‘소드 아트 온라인’ >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과징금 천만원(2013.5.23)
- 방송프로그램 : tvN <SNL 코리아 4>(2013.3.16, 23:00-00: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5조(출연)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제2항,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형아! 어디가?> 코너를 방송하며, 개그맨 출연자가 어린이들과 축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머리에 축구공을 던지고, 태클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장면, 개그맨 출연자가 배개를 잡고 있는 어린이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 아이들이 슈퍼에서 초콜릿을 훔쳐 뛰어나오며, 슈퍼 밖에 숨어 있던 개그맨 출연자와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 개그맨 출연자가 오락실 게임 기계의 동전 넣는 부분을 조작하여 게임 기계를 작동시키는 장면, 개그맨 출연자가 “그럼 나도 아이스케키”라고 하며 여성의 치마를 들추고 치마 속을 바라보자, 여성이 “미친 ××”라며, 뺨을 때린 후 지나가고, 개그맨 출연자가 어린이에게 “재밌냐? 재밌어?”라고 하며 뺨을 2회 때리는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tvN ‘SNL 코리아 4’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7절 광고효과의 제한 등

-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① 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④ 협찬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적법한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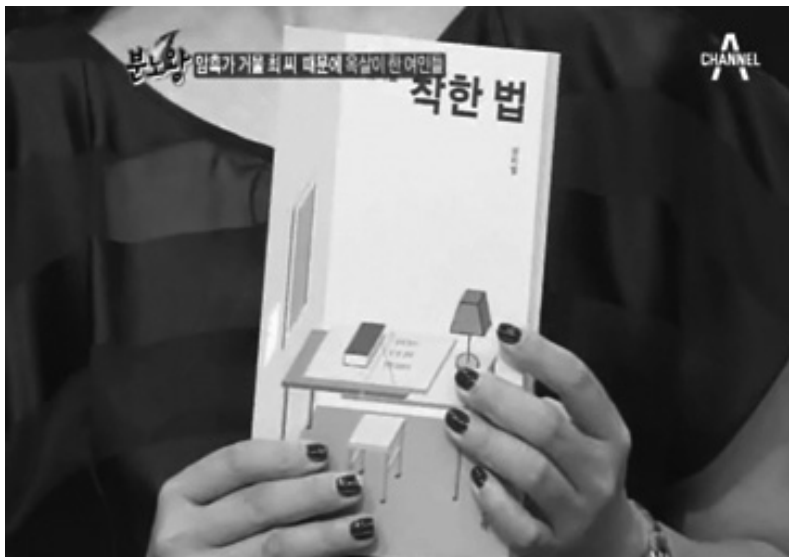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3.21)
- 방송프로그램 : 채널A <분노왕>(2013.2.13, 23:00~24: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진행자들이 변호사인 고정 출연자가 최근 출간한 저서에 대해 소개하면서, “분노왕의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책을 또 쓰셨다고...”, “제목도 ‘착한 법’ 이에요”라고 소개하고, “일반인에게 법을 쉽고 재밌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라는 출연자의 설명과 함께, ‘분노왕에서처럼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률 서적’이라는 자막을 방송하며, “모르는 사람한테도 쉽고 재밌게 알 수 있게끔”, “근데 사실 집에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기본 상식적인 이런 법률 정도는 알고 있는 게...”라는 진행자들의 말과 함께, ‘가정에 꼭 구비해야 할 법률 상식서!’ 라는 자막을 방송하고, 진행자가 해당 서적의 내·외부를 보여주는 장면을 수차례 클로즈업하여 방송함.

< 관련자료 : 채널A ‘분노왕’ >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4.18)
- 방송프로그램 : 올리브네트웍 <홈 메이드 쿡>(2013.2.14, 07:00-07:4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2항
- 심의· 의결 세부 내용

요리 프로그램에서 <내 아이의 생일 파티>라는 주제로 컵케이크를 만들면서, 요리연구가가 “요즘은 자일로스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강한 설탕이 있어요. 몸에 설탕흡수도 줄여주고 건강한 설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설탕을 한 번 써보려고 해요. 그리고 잘 녹여져야 하는데 굉장히 잘 녹거든요.”라고 하며, 협찬주이자 간접광고주인 특정 업체의 ‘△△ 자일로스 설탕’을 노출한 장면을 방송함.

<관련자료 : 올리브네트웍 ‘홈 메이드 쿡’>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3.7)
- 방송프로그램 : 스토리온 <김수로, 김민종의 마이퀸>(2013.1.2, 23:10-00:1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고 있는 10인의 한국 여성을 만나보는 프로그램에서,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전화하며, 휴대폰으로 협찬주이자 간접광고주인 특정 회사의 국제전화 발신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건 할인 혜택이 커가지구요. 오래 통화해도 괜찮아요. 특히, 중국은 굉장히 저렴합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상하이에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진행자들이 “△△△, 할인 혜택이 상당히 큼니다.”, “상해에서 거의 시내 통화하는 듯한 느낌으로”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관련자료 : 스토리온 '김수로, 김민종의 마이퀸' 사진>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4.18)
- 방송프로그램 : tvN <The Phone : Korea>(2013.3.3, 21:00-22: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제2항,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출연자들이 하루 동안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성공 여부에 따라 상금을 받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협찬주이자 간접광고주인 회사의 상품인 핸드폰의 특정 기능을 부각시켜 사용하는 장면과 프로그램 중간에 제목 노출 장면과 함께 하단에, 'SPONSORED BY □□□ ○○○ ◇◇◇ II'라고 협찬고지한 장면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tvN 'The Phone : Korea'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9.26)
- 방송프로그램 : SBS E! <서인영의 스타뷰티쇼2>(2013.8.13, 23:00-00: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와 제한)제1항·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뷰티 노하우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특정 브랜드명이 적힌 헤어 상품들을 근접 촬영하여 노출한 후, 출연자가 “이 샴푸가 실리콘이 없는 샴푸예요.”, “저는 두피 건강을 위해서 이 샴푸를 쓰고, 그 다음에는 트리트먼트도 같이 쓰죠”라고 하는 장면, 진행자가 “이 샴푸를 쓰면 웬지 시원할 것 같아요”라고 하자 출연자가 “제가 그런 샴푸들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써봤는데 이 샴푸가 제일 맘에 들더라고요”라고 답하거나, “무엇보다도 이 샴푸 같은 경우는 무실리콘 샴푸잖아요. 세정을 했을 때 두피가 뽀득뽀득하거든요. 굉장히 가볍다는 느낌이죠”라고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관련자료 : SBS E! ‘서인영의 스타뷰티쇼2’>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6.27)
- 방송프로그램 : On Style <British Memories>(2013.4.29, 22:33-22:41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2항
- 심의· 의결 세부 내용

On style, XTM, Mnet을 통해 30분 간격으로 릴레이 방송되는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간접광고주 상품의 광고 문구를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고, 방송 내내 왼쪽 상단에 고지하면서, 간접광고주 상품 광고에 출연한 남녀 주인공이 광고와 동일한 의상을 착용한 채, 간접광고주 상품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들고, “아, 예쁘다. 완벽한데. 아... 이거 예쁘다.”라고 하는 장면, 남녀주인공이 빨간색 2층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 상품의 광고 화면을 노출한 장면, 간접광고주 상품 광고음악과 함께 간접광고주 상품을 노출한 장면 등을 방송함.

<관련자료 : On Style ‘British Memories’>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과징금 천만원(2013.4.18)
- 방송프로그램 : ETN <심은진의 Feeling up>(2013.2.18, 20:00-21: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최신 유행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화장품 업체 관계자가 출연해, “이런 기능성 성분의 제품은 국내에 저희가 최초로 선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달 사용 시 피부 탄력, 피부 톤, 주름은 물론 색소 침착, 붉은 기둥이 40%이상 호전되는 놀라운 효과를 가진 제품입니다.”라고 하는 장면, <짧은 시간 효과만점 퀵 성형> 코너에서, 의사인 출연자가 입은 가운을 통해 병원명이 노출되는 장면, 출연 의사가 ‘울트라V리프팅’ 시술에 대해 소개하며, “하자마자도 리프팅 효과를 느끼시지만 한 달 후에 더 좋아지시고, 두 달 후에 더 좋아지시고, 세 달 후에는 더 좋아지십니다.”라고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관련자료 : ETN ‘심은진의 Feeling up’> 사진



사례 7

- 결정 사항(의결일) : 과징금 천만원(2013.6.27)
- 방송프로그램 : MBC MUSIC <손담비의 뷰티풀데이즈>(2013.4.4, 23:00-00: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를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라이프스타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봄에 어울리는 NEW 레스토랑' 을 소개하면서, “추천메뉴는 △△△ 브런치 & ○○○ 브랜드 마일드커피” 등 특정 식당의 상호명·메뉴명을 자막과 내레이션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고, 소개 업소의 내부전경과 음식 등을 보여주는 장면을 방송함.

<관련자료 : MBC MUSIC '손담비의 뷰티풀데이즈' > 사진



사례 8

- 결정 사항(의결일) : 과징금 이천만원(2013.1.10)
- 방송프로그램 : J Golf <Volvik 제4회 동호회 챔피언십>(2012.11.14, 23:00-23: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Volvik 제4회 동호회 챔피언십’ 16강 매치플레이 마지막 경기인 3040골프 vs 금란회’의 경기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에서, 선수·캐디 출연자들이 협찬주명이 새겨진 모자·티셔츠·자켓 등을 착용한 채, 협찬주명이 새겨진 입간판과 티마커를 배경으로 티샷을 하는 장면 등을 방송함.

<관련자료 : J Golf ‘Volvik 제4회 동호회 챔피언십’>



사례 9

- 결정 사항(의결일) : 과징금 삼천만원(2013.3.21)
- 방송프로그램 :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2013.2.5, 22:56-23:59)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2012년 상·하반기 통합챔피언전 ‘울산공고 vs 김천고’의 경기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에서, 6명의 출전선수들과 다수의 응원단원들이 전면에는 협찬주의 명칭, 측면에는 특정 상품명이 새겨진 모자를 착용하고, 등·어깨·가슴 부분에 협찬주의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착용하고 있는 장면 등을 방송함.

<관련자료 : SBS Golf ‘키움증권배 고교동창 골프최강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8절 방송언어

제51조(방송언어) ①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어린이·청소년을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바른 표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20)
- 방송프로그램 : Y star <얼짱시대7>(2013.1.20, 18:30-19:3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소위 얼짱 출연자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자신들의 루머에 대한 글들을 소개하면서, “△△ 언냐 ○○오빠한테 개 차이고 멘붕와서 클럽 죽순이 됐다고 함. 혈개불쌍”, “요새 ▲▲ TV 나오 더니 이미지 관리 찌는 듯”, “그때도 완전 개싸가지 없었다고 함”, “왕따 찌질이인거 뽀록남”, 등의 내용을 직접 읽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를 소개하는 코너에서, “오빠 내 뉴사에 애들이 악플 달았어. 그렇게 내 열사랑 생얼이랑 달라?”, “그거 다 열폭이야, 넌 걸바라 니까”, “이 움짤은 네티즌들이 완전 안구웰빙 갑이라고 찬양쩨드만!”, “맞아! 열평들이 완전 다 훈 내야”, “제 팬들이 좀 짜세라서 그래요” 등의 내용을 자막과 함께 소개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3.7)
- 방송프로그램 : 씨네프 <오늘>(2013.1.19, 19:40-22:0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영화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한 딸이 “씨발 좆까지 말라 그래”라고 소리 치거나, 일부 흐림처리한 상태에서 칼을 들고,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는 장면과 “좆같은 애 비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깐 그만 말을 하지”, “죽여버리고 싶은 걸 얼마나 많이 참았는 줄 알아?”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아버지가 딸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단을 내려와 방문에 딸의 머리를 수차례 박거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장면, 아버지가 쇠파이프로 딸을 폭행하거나 발로 걷어차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함.

< 관련자료 : 씨네프 ‘오늘’ >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9.12)
- 방송프로그램 : ongame.net <한판만>(2013.7.19, 18:00-18:50)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연예인 출연자들이 온라인게임을 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에게 혼수를 하며 “야 가르쳐 주면 가르쳐 주는데로 하라고, 이 닭대가리야!” 라고 하는 장면, 다른 남성 출연자와 여성 출연자가 승부를 펼치는 중에, ‘똥(그림)진과 닭(그림)초희의 초박빙승부’, ‘똥(그림)진이냐’, ‘닭(그림)초희이냐’ 라는 자막 등을 노출하는 내용, 남성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를 응원하며, “죽여, 죽여, 그래 죽여, △△형 죽여, (고성을 지르며)죽여! △△△ 죽여!” 라고 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내용, 남성 출연자가 게임을 못한 것에 대해, 방귀소리 음향과 함께 ‘똥(그림)치우기 바쁘다’, ‘엄습하는 탐똥(그림)의 냄새 설사주의보’, ‘뿌지직’, ‘기저귀 필요한 똥(그림)싸개 동진’ 이라는 자막을 노출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 관련자료 : ongame.net ‘한판만’ >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9.26)
- 방송프로그램 : tvN <SNL 코리아 4>(2013.8.3, 23:00-00:0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코미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잔혹한 면접 <미생>과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코너를 방송하며, 출연자들이, “좇같은 동료다. 이 새끼야.”,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 서비스, 일오××에 십팔십팔”, “이 펠리컨같이 생긴 새끼야, 니가 왜 지랄이야, 이 새끼야. 니 하관이 풍년이다. 이 개새끼야. 이 풍년 새끼야.”, “이 또라이 같은 년야. 이런 거지같은 년을 봤나!”, “이런 싸가지 없는 개××쌍놈의 개 호로××를 봤나, 십팔 새끼, 턱주개리를 주먹으로 날려버리기 전에 똑바로 해. 개×끼, 이 마징가 새끼야.”라고 하는 장면 등을 일부 묵음 처리하여 방송함.

< 관련자료 : tvN 'SNL 코리아 4' >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4.18)
- 방송프로그램 : 쿠키건강 TV <김수용의 19쇼>(2013.2.6, 03:15-04:00 등)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남녀 성(性) 심리에 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친구의 애인을 빼앗아도 문제될 것 없다?> 라는 주제로 찬성 쪽 대표와 반대 쪽 대표인 일반인 출연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찬성 쪽 대표가 “남편을 뺏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인간 이하?”라고 대화한 뒤 서로 고성을 지르며 다투는 장면과 함께, ‘18’, ‘색××’, ‘개××’ 라는 자막을 방송하고, 찬성 쪽 대표가 친구인 반대 쪽 대표의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 진 뒤, 반대 쪽 대표가 “염병~ 지랄하고 있네! 야! 너 죽어볼래? 진짜!... 근데 너 (남자 친구와) MT는 왜 갔어? MT는 왜 갔냐고! 넌 진짜 나한테 나쁜 년이야!”라고 말하는 내용과 함께, ‘염병(!?) 지랄하고 있네~’ 라는 자막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쿠키건강 TV ‘김수용의 19쇼’ >



유료방송 심의사례 (연예오락부문)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위반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장 일반기준 및 제3장 방송사업자별 기준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한국마사회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이 공익성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할 수 있다.

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① 캠페인협찬의 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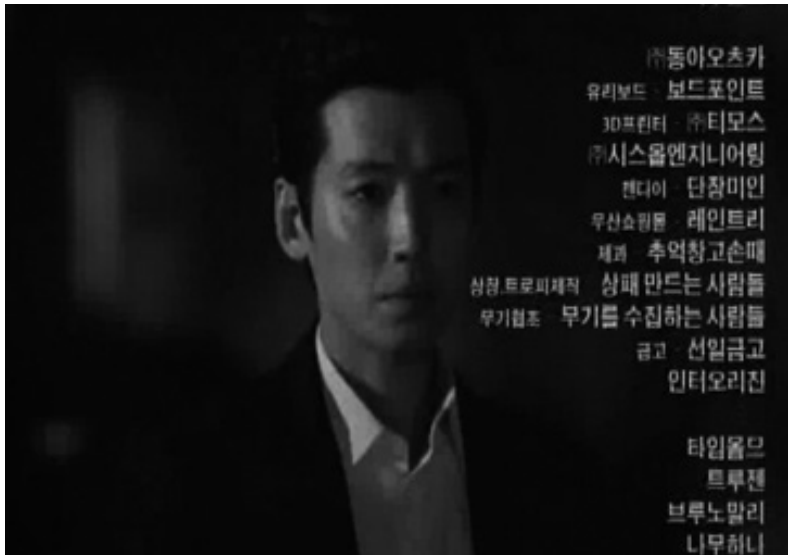
1. 캠페인 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행사협찬의 고지는 행사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 ③ 프로그램제작협찬의 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 ④ 행사 및 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프로그램 예고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예고종료시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 중 택일하여 협찬주명 또는 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시상품등의 협찬고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종료시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및 시상품명을 고지할 수 있으며, 해당 고지자막의 크기는 화면 하단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고지시간은 협찬주 한 건당 5초를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고지시간은 30초 이내로 제한한다.
 3. 협찬주명 고지시에 광고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이 아닌 기업표어, 위치중 택일하여 시상품명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고지할 수 있다.
- ⑥ 장소등의 협찬고지는 프로그램 종료시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등의 협찬의 경우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 결정 사항 :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013.7.11)
- 방송프로그램 : JTBC <무정도시>(2013.5.27, 21:55-22:55 등)
-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제2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 심의·의결 내용
경찰과 마약조직 보스 등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마약조직의 보스 등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골프채로 때리고, 사람의 머리를 유리컵으로 내려치거나, 빌딩 옥상에서 매단 채 협박하는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하고,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매회 무기(武器) 관련 협찬주명을 고지함.

< 관련자료 : JTBC '무정도시' >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부문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 5. 9)
- 방송프로그램 : 스토리온 <보이스 코리아 2>(2013. 2. 22, 23:00-00:30 등)
-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3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 및 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남들하고 다르게 태어났대요. 성대가, 목에 도움이 될까 해서 먹는 거예요”라고 하며 특정 의약품을 먹는 장면, 또 다른 출연자가 “오빠, 이게 꿀이랑 레몬이 들어가서 목에 아주 좋다고, 이거 먹으면 블라인드를 통과할거야. 어때? 목이 좋아지는 거 같지?”라고 하며, 동일한 의약품을 건네주는 장면을 방송하고, 프로그램 시작시 제목 노출 장면과 함께 하단에 ‘SPONSORED BY ○○○○’ 이라고 협찬고지한 장면 등을 방송함.

<관련자료 : 스토리온 ‘보이스 코리아 2’>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5.9)
- 방송프로그램 : KBS N sports <2012-2013 KB국민카드 프로농구>(2013.3.15, 18:50-21:00)
- 적용조항 :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5항1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시상품)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2012-2013 프로농구 경기를 생중계하면서, 진행자가 “정답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에서 제공하는 ○○○ 용품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 ○○○○에서 제공하는 ○○○ 용품을 드립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시상품 제공업체의 명칭·로고 및 시상품 실물 사진을 하단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 등을 4회에 걸쳐 방송하고, 경기 종료 후 퀴즈 정답과 함께 시상품 제공업체의 명칭·로고를 하단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함.

〈관련자료 : KBS N sports 네-2013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상품판매방송 심의사례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 제5조(일반원칙)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거 불확실한 표현 및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가격 등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5.8.)
- 방송프로그램 : GS SHOP <레이어스 선블럭>(2013.4.21, 14:00-14:55)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이미용품을 소개 · 판매하면서, 방송 종료 후 방송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용량이 포함된 동일한 구성으로 제품 구입이 가능함에도, 소용량은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31.)
- 방송프로그램 : NS홈쇼핑 <정관장 홍삼활력>(2013.7.3, 21:40-22:45)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식품을 소개 ·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 뒤로 홍삼농축액을 떠서 내리는 장면 등 해당 제품이 홍삼 농축액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9.)
- 방송프로그램 : GS SHOP <일동 알칼리 이온수기>(2012.11.20, 18:40-19:35)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의료기기를 소개 · 판매하면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우리 몸은 특히 피곤하면 산 성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알칼리성 물은 이를 중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준다”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 효능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2.20.)
- 방송프로그램 : NS홈쇼핑 <댕기머리 진기현 샴푸>(2013.1.6, 19:30-20:35)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의약외품을 소개·판매하면서, ‘1세트 구성’과 ‘3세트 구성’ 두 종류로 판매하고, ‘3세트 구성’ 구입 시에 한해서만 특별 구성품인 장지갑을 제공하는 것임에도, 모든 구매고객에게 장지갑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4.3.)
- 방송프로그램 : 롯데홈쇼핑 <에넥스 휴대폰>(2013.3.12, 20:35-21:35)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휴대폰을 소개·판매하면서, 휴대폰과 TV의 결합 패키지임에도, 자막과 멘트를 통해 결합상품인 ‘TV’를 ‘한 대 더’, ‘덤’ 등으로 표현하여 사은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5.8.)
- 방송프로그램 : NS홈쇼핑 <공류보감 원데이>(2013.4.13, 15:50-16:5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소개·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8주 동안 1일 한 포 섭취만으로 체지방이 감소하고, 일반적인 단백질 다이어트 원리와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표현하여, 효능에 있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7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6.26.)
- 방송프로그램 : GS SHOP <대상 다이어트 303>(2013.5.15, 14:40-15:4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건강기능식품을 소개 · 판매하면서, 제품 주요 성분인 L-카르니틴의 효능을 과장하고, 동물시험과 시험관시험의 결과를 인체시험의 결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8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17.)
- 방송프로그램 : 현대홈쇼핑 <아이스 블루잼>(2013.6.27, 13:40-14:3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화장품을 소개 · 판매하면서, '63빌딩 210개 높이를 쌓을 수 있는 놀라운 기록' 등 해당 제품이 아닌 전체 시리즈의 판매실적을 강조하여 브랜드 판매 현황을 제품 판매 현황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9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8.7.)
- 방송프로그램 : CJ오쇼핑 <ONE DAY 특가쇼-삼성스마트에어컨Q>(2013.6.9, 15:30-17:2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에어컨을 소개 · 판매하면서, 자사 인터넷몰에 비해 높은 판매가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무이자 36개월 혜택 강조 등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할부금융 계약에 대해 충분한 고지 없이 방송하고, 실제보다 가격 혜택을 더 받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10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9.4.)
- 방송프로그램 : 롯데홈쇼핑 <아이오페 에어쿠션>(2013.8.3, 19:20-20:2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화장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시중에서 ‘정품+리필’ 세트 구성으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품+리필’ 세트의 가격을 정품 1개의 가격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1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2.4.)
- 방송프로그램 : 롯데홈쇼핑 <틸만 전기렌지>(2013.10.22, 23:50-01:0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전기렌지를 소개·판매하면서, 자사 온라인몰 가격이 더 저렴함에도, “아마 구매를 하신다면 이거 보다 더 비싼 돈을 내셔야 되고...”, “렌탈 기간 내내 내시는 금액들을 다 더하셔도 이 제품을 따로 구매하시는 거 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지거든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함.

사례 1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2.4.)
- 방송프로그램 : GS SHOP <3M 스카치 보온시트>(2013.11.13, 13:40-14:1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보온시트를 소개·판매하면서, 보온력 시연과정에서 온도계 등 단순계측기를 이용한 임의시험 장면을 연출하여, 중요한 정보인 보온효과에 대해 시청자가 해당 수치를 일반적 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13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17.)
- 방송프로그램 : CJ오쇼핑 <상해여행 3박 4일>(2013.7.6, 01:00-02:1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여행상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중국단체비자 비용과 유류할증료 등 상품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비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방송함.

사례 14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8.21.)
- 방송프로그램 : 현대홈쇼핑 <LG 헬스케어 정수기>(2013.8.5, 15:50-16:4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정수기를 소개·판매하면서, ‘선납금별 월 렌탈료’, ‘중도해지 시 등록금 환수’ 등 중요 정보에 대해 충분한 고지 없이 방송함.

사례 15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2.26.)
- 방송프로그램 : CJ오쇼핑 <삼성 아티브북4>(2013.11.26, 20:35-21:4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노트북을 소개·판매하면서, 고급팩은 블랙 색상만 구입이 가능함에도 “색상은 화이트 외에도 블랙컬러 있구요, 그리고 요즘 굉장히 인기 올라가고 있는 레드컬러까지 세 가지 색상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등 세 가지 색상 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16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6.27.)
- 방송프로그램 : 현대홈쇼핑 <하유미팩 시즌6>(2013.5.25, 13:00-14:05)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화장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기능으로 먼저 출시된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팩 최초! 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등 사실과 다른 표현을 방송함.

< 관련자료 : 현대홈쇼핑 ‘하유미팩 시즌6’ >



사례 17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0.10.)
- 방송프로그램 : 현대홈쇼핑 <LG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2013.8.20, 21:40-22:5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냉장고를 소개·판매하면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3등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전의 등급인 1등급 라벨을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현대홈쇼핑 'LG 디오스 양문형 냉장고' >



사례 18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2.7.)
- 방송프로그램 : 현대홈쇼핑 <존슨즈 베이비 수딩내추럴>(2012.12.21, 15:50-16:4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이미용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임상실험 결과 자료가 아닌 해당 제품 체험단의 개인 블로그에 게시된 제품의 사용 전후 비교화면을 인용하고, “7일 후에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사진과 자료를 통해서 아주 세세하게 부위별과 나아진 정도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라고 하는 등 해당 자료화면이 임상실험 결과 자료인 것으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현대홈쇼핑 ‘존슨즈 베이비 수딩내추럴’ >



상품 판매 방송

사례 19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3.7.)
- 방송프로그램 : CJ오쇼핑 <adlife by ADABAT>(2012.12.12, 16:40-17:4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골프웨어를 소개 · 판매하면서, ‘ADABAT’의 서브브랜드임을 자막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갤러리아에도 웨스트가 아니고 이스트에 명품관에 입점된 ADABAT adlife를 오늘 정품으로 만나시는 데...”라고 하는 등 상위 브랜드인 ‘ADABAT’ 제품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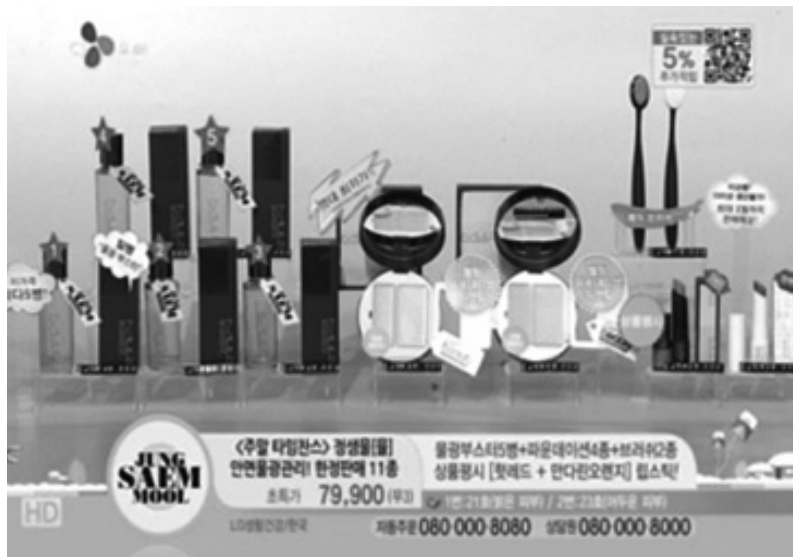
< 관련자료 : CJ오쇼핑 ‘adlife by ADABAT’ >



사례 20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3.21.)
- 방송프로그램 : CJ오쇼핑 <물>(2013.2.3, 13:30-14:3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화장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정품 파운데이션 2개에 무료 체험분 2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파운데이션 4종’이라고 소개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CJ오쇼핑 ‘물’ >



사례 21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4.18.)
- 방송프로그램 : 홈앤쇼핑 <다소다 메이크업>(2013.2.24, 16:35-17:35)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화장품을 소개·판매하면서, 객관적인 자료 없이, “디올, 켈랑 등 루이비통 그룹에 완제품을 공급한다”고 자막과 멘트로 소개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홈앤쇼핑 ‘다소다 메이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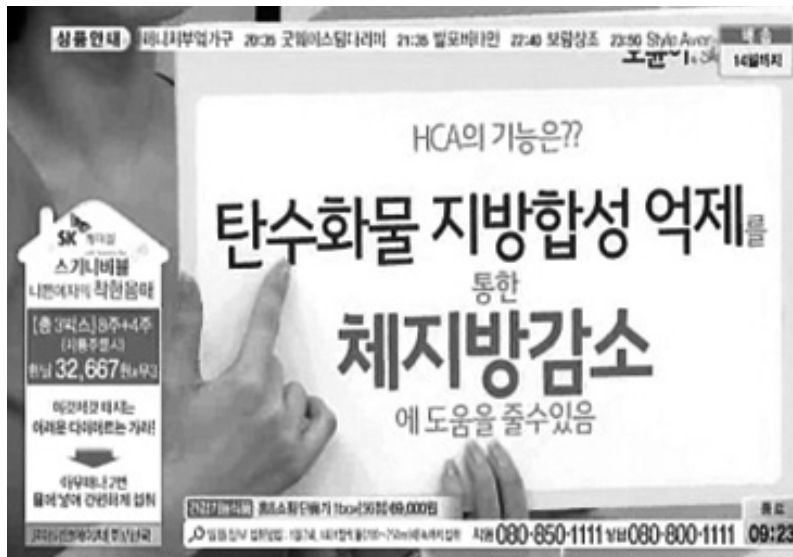


사례 2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7.11.)
- 방송프로그램 : 홈앤쇼핑 <스키니버블 다이어트>(2013.5.12, 14:35-15:45)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판매하면서, 제품 원료(HCA)의 효능에 대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준다는 내용과 운동으로도 감소시키기 힘든 체지방을 해당 제품 섭취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 등 제품의 효과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홈앤쇼핑 '스키니버블 다이어트' >



사례 23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9.12.)
- 방송프로그램 : GS SHOP <에스칼리에 모시터치 이불>(2013.7.29, 14:55-15:35)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침구를 소개·판매하면서, 제품 소재가 폴리에스터 100%임에도 불구하고, “소재 자체는 우리 옛 전통의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마스크 패턴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뭔가 이렇게 유럽과 한국의 느낌을 믹스매치해서요”, “예전에 모시를 임금에게 진상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귀한 섬유잖아요. 그 맛을 재현했습니다.” 등 소재에 대해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GS SHOP ‘에스칼리에 모시터치 이불’ >



사례 24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1.7.)
- 방송프로그램 : CJ오쇼핑 <픽시온 심리스 브라 팬티>(2013.9.12, 14:40-15:28)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속옷을 소개·판매하면서, 봉제선이 있는 제품임에도, 자막과 멘트를 통해 ‘봉제선 FREE’, ‘봉제선이 없는 부드러운 착용감’, ‘봉제선 조차 없어요’ 등 단정적인 표현을 방송함.

< 관련자료 : GS SHOP ‘에스칼리에 모시터치 이블’ >

모든 구성 NO 와이어! NO 피본! NO 봉제선! 1,000원 할인

Lafiore 라피오레 힐링 심리스 브라세트 *10% 신규가입 특가쿠폰

무려 13종 파격 기획 69,900원(무5)

심리스 브라 4종 + 심리스 팬티 4종 + 심리스기입팬티 4종 + 볼륨패드 1종

최대오래 입을 심리스 브라세트 13종 초특가 기획 69,900원(무5)

달린트 "오운어"의 Lafiore 본정 특집전 100%원데이 / 50%

늘 오온 구성 NO 와이어! NO 피본! NO 봉제선! 자유주선 080-815-7700 상담선 080-500-7700

상품판매방송

사례 25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10.10.)
- 방송프로그램 : CJ오쇼핑 <피델리아 아이스윙 더블업 리프팅>(2013.8.18, 22:40-23:5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속옷을 소개·판매하면서, 8세트 중 4세트만 아쿠아로드 원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전 라인 모두, 오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라인에서, 노와이어, 그리고 아쿠아로드, 그리고 더블 리프팅 다 들어갑니다”, “8세트 모두 똑같은 사양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등 구성품의 소재에 대해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CJ오쇼핑 ‘피델리아 아이스윙 더블업 리프팅’ >



사례 26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2.7.)
- 방송프로그램 : 롯데홈쇼핑 <실크테라피>(2012.11.15, 21:35-22:4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4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헤어 에센스를 소개·판매하면서, 방송일 이후에 더 많은 구성으로 방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성은 11월뿐만 아니라 2012년 통틀어서 이 구성은 이전 없어요”, “2012년 다 통틀어서 이 구성은 오늘부로 종료할거예요” 등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롯데홈쇼핑 ‘실크테라피’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6조(소비자보호)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해결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2.5.)
- 방송프로그램 : GS SHOP <옵티머스 뷰2 LTE>(2013.10.27, 17:20-18:25)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소비자보호)제1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휴대폰을 소개 · 판매하면서, LTE-A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자막과 멘트를 통해 'LTE보다 두 배 빠른 게 광대역 LTE-A', '더욱 빠른 LTE-A' 등의 내용을 방송함.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수량에 제한이 없음에도 한정판매 등의 표현을 허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사실과 다른 “처음”, “마지막”, “단 한번” 등의 한정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9.12.)
- 방송프로그램 : NS홈쇼핑 <세제혁명 지엘>(2013.8.6, 20:30-21:35)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생활용품인 세제를 소개·판매하면서, 방송 종료 후 방송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방송 중에만 반값찬스’ 등 사실과 다른 한정표현을 사용함.

< 관련자료 : NS홈쇼핑 ‘세제혁명 지엘’ >

NS 홈쇼핑

세제혁명 GIEL 초대박 구성! 오직 방송중에만 반값!

세제혁명 GIEL WASH28 + 리필용 WASH 18

기존가 79,800원

▶ 50% 파격 할인가! 38,900원! (자동주문시)

15일

고객님 감사드립니다. 빠르고 할인혜택

자문주선 080-815-7700 상담 080-500-7700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9.26.)
- 방송프로그램 : 홈앤쇼핑 <싱거 미싱 2250>(2013.8.19, 10:20-11:3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5조(한정판매 및 판매조건)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미싱을 소개·판매하면서, 방송 종료 후 방송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구성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방송중! 2013 단 하루 특별 사은품!’, ‘이조건 오직 방송중! 방송 종료후 모두 사라집니다!’ 등의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홈앤쇼핑 ‘싱거 미싱 2250’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 제34조(비교의 기준)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 또는 기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비교는 판매상품과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상품을 비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비교나 실물제시에 있어 특성, 성분, 규격 등 비교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④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의 비교는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여야 하며,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 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당해 기업, 상품, 서비스의 우수 또는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밖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기업 전체까지도 우수하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상품의 특정 부분에서 우수한 것을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우수 또는 특성을 비교 주장함에 있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비방 또는 중상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3.13.)
- 방송프로그램 : 현대홈쇼핑 <신일 에어 워셔>(2013.1.10, 17:40-18:2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제4항· 제7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생활가전인 에어 워셔를 소개·판매하면서, 자연필터와 기습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제품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잉크가 풀어져 있는 물을 이용해 해당 제품과 기습기를 동시에 비교하며, 기존 제품을 폄하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6.12.)
- 방송프로그램 : 롯데홈쇼핑 <제트솔레 썬 스프레이>(2013.5.22, 11:30-12:4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제7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화장품인 스프레이를 소개·판매하면서, “LPG사용, 가연성, 화기주의 빨간색, 불나는 표시 보이시죠”, “기내에도 못 갖고 타요.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LPG 가스를 마실 이유는 없잖아요”, “LPG 가스라면 차에 넣는 것 아니에요” 등 그 내용은 사실이나, 기존 LPG충전 스프레이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6.26.)
- 방송프로그램 : 홈앤쇼핑 <미네랄 썬킬>(2013.6.7, 09:20-10:2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제7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화장품을 소개 · 판매하면서, “이거 진짜 주변 잘 살피셔야 되구요. 숨 못 쉽니다, 말 못해요”,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왜 멀리서 뿌리라고 할까요? 왜 밀폐된 공간에서 쓰면 안 된다고 할까요?”, “끈적이니까 애들이 이걸 바르려고 하나요?”, “어우 세상 먼지 다 뒤집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등 LPG충전 스프레이 또는 크림 유형의 자외선 차단제를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20.)
- 방송프로그램 : 롯데홈쇼핑 <삼원온스파 온수매트>(2013.9.26, 18:40-19:35)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제7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온수매트를 소개 · 판매하면서, 모터가 없는 무동력 방식인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모터가 있으면 징징징징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자는 내내 들린단 말이죠”, “모터 방식으로 시끄럽고 뭔가 소음이 있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등 동력 방식의 온수매트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1.7.)
- 방송프로그램 : GS SHOP <동양매직 가스레인지>(2013.9.24, 07:15-08:1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가스레인지를 소개·판매하면서, “굉장히 이게 불이 세보이지만 빨간불이 올라오는 거 자체가 불 안전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불안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등 기존 가스레인지와 부당한 방법으로 비교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GS SHOP ‘동양매직 가스레인지’ >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5.9.)
- 방송프로그램 : GS SHOP <LG 헬스케어 정수기>(2013.3.12, 17:40-18:4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제1항, 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렌탈 정수기를 소개·판매하면서, 저수조가 있는 일반 정수기물은 ‘저수지의 고인 물’로, 저수조가 없는 직수형 정수기물은 ‘흐르는 계곡물’로 비유하면서, 저수조가 있는 일반 정수기물에 대해 폄하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GS SHOP ‘LG 헬스케어 정수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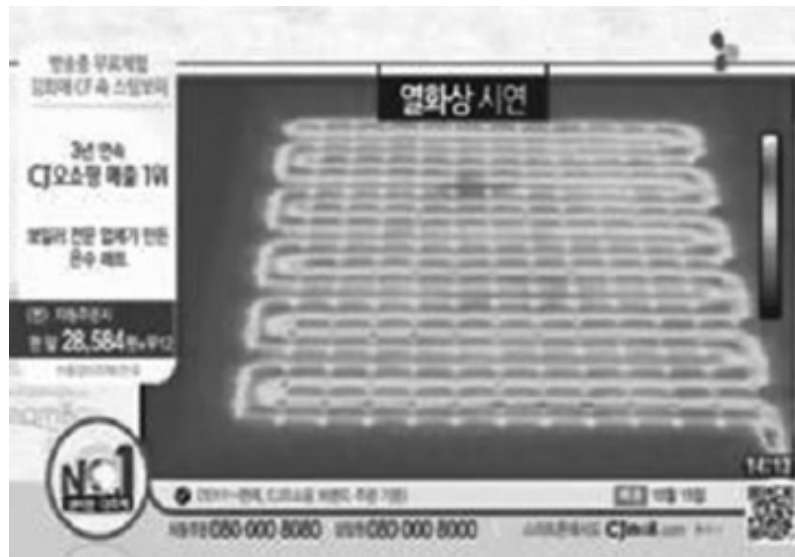


사례 7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2.5.)
- 방송프로그램 : CJ오쇼핑 <스팀보이 온수매트>(2013.10.10, 11:30-12:4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4조(비교의 기준)제7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온수매트를 소개·판매하면서, 모터가 있는 동력 방식인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을 힘 있게 뽑어주느냐가 동력과 무동력의 차이다”, “대부분의 온수매트는 무동력인데 소음을 적게 해서 만들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등 무동력 방식의 온수매트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CJ오쇼핑 ‘스팀보이 온수매트’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장 품목별 기준

제51조(의료기기) ①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의료기기”라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다음 각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
2.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의료기기를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의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료기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효능이나 성능을 표현함에 있어서 사용 전·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 증상을 위협적인 내용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표현
4. 효능·효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 또는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5.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을 이용하거나 구입, 주문쇄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현

③ 의료기기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제품의 효능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정한 효능의 범위 내에서 표현하여야 하며, 범위 이외에 구체적인 질병명을 언급하거나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건강보조기구 등) ① 건강보조기구 등의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거나 효능, 효과를 과신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건강보조기구 등에 관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6.27.)
- 방송프로그램 : NS홈쇼핑 <해피시스템 에어마사지>(2013.5.7, 09:20-10:25)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의료기기)제2항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의료기기를 소개·판매하면서, “이불을 딱 박차고 일어나는 그 느낌이 아 나는 봄 안타는구나, 나는 춘곤증, 식곤증 올해는 없나보다”, “계단을 올라가실 때 ‘손잡이를 잡지 않고서는 끝까지 올라가기 힘들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혈액순환에까지 도움을 드리는 에어마사지 강력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NS홈쇼핑 ‘해피시스템 에어마사지’ >

The advertisement is for a product called 'Happy System Air Massage'. It features two main boxes: '혈액순환에 도움' (Helps with Blood Circulation) and '강력한 에어마사지' (Powerful Air Massage). Below these boxes are buttons for '마사지' (Massage), '지압' (Acupressure), '복부관리' (Abdominal Care), and '손·팔저림' (Hand/Wrist Stiffness). The price is listed as 24,800 KRW. The ad also includes a 'SALE' badg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NS Home Shopping.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1.7.)
- 방송프로그램 : CJ오쇼핑 <애플힙 셰이퍼 렌탈> (2013.10.1, 17:40-18:40)
- 적용조항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건강보조기구등)제1항, 제5조(일반원칙) 제3항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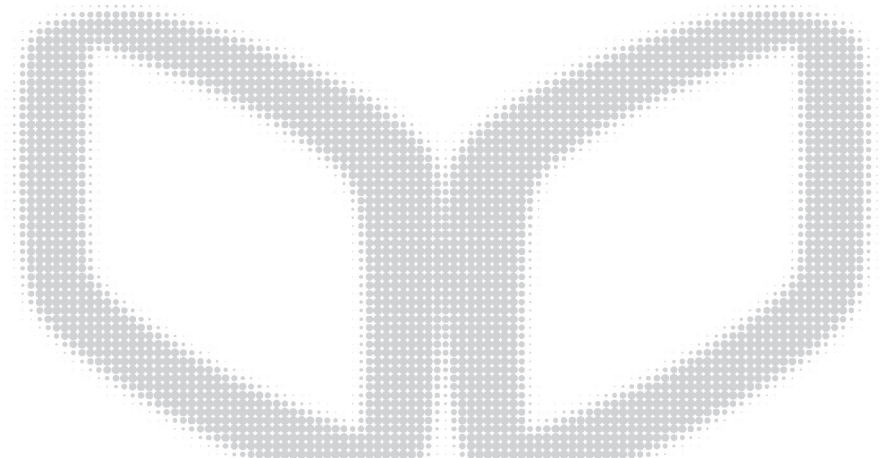
안마의자를 소개 · 판매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출산 후 골반이 벌어진 여성, 상반신, 한 쪽 어깨가 올라가 있는 분, 좌우 엉덩이 높이가 다른 분, 짝다리 또는 O 다리형...” 등 교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고, 중도해약시 위약금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지 않음.

< 관련자료 : CJ오쇼핑 ‘애플힙 셰이퍼 렌탈’ >



방송광고 심의사례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위반 관련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4조(품위등) 방송광고는 시청자의 정서를 해치거나 방송의 품위를 손상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경시하는 표현
2.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3.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4.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5. 신체적 결함, 약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는 표현
6. 지나치게 비속하거나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
7.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표현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10.)
- 방송광고 : <예감-낮 문화편(15초)>(2013.6.26, 19:14-19:14)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조(품위등)제4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가공식품을 광고하면서, 수영복을 입은 남녀가 출연하여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하는 등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예감-낮 문화편(15초)'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① 방송광고는 방송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방송프로그램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설정이나 기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73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가상광고 및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고정출연자를 등장시킨 방송광고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6.12.)
- 방송광고 : 〈기아자동차-AUTO Q(30초)〉(2013.5.25, 19:59-20:00)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자동차를 광고하면서, 뉴스 프로그램 시작 전에 프로그램 촬영현장에서 대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0.10.)
- 방송광고 : 〈후시딘(15초)〉(2013.8.27, 09:42-09:42)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의약품을 광고하면서, 축구 경기 후 축구대표팀 감독과 인터뷰하는 형식의 기법을 사용하여 방송 프로그램처럼 보이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8.22.)
- 방송광고 : 〈olleh ALL-IP(30초)〉(2013.7.14, 13:47-13:47)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제1항·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이동통신상품을 광고하면서, 특정 방송프로그램(금 나와라 뚝딱)의 고정출연자를 등장시켜, 방송프로그램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한 방송광고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로 방송함.

〈 관련자료 : 'olleh ALL-IP(30초)'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18조(진실성) ①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분, 재료, 함량, 규격, 효능 등에 있어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내용
2.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최상급의 표현
4. 공신력 없는 단체의 자료 또는 발표내용 등을 인용하는 표현
5. 난해한 전문용어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
6. 제조국가등에 있어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③ 방송광고는 중요한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1.6.)
- 방송프로그램 : <위닉스 에어워셔 슝(15초)>(2013.10.16, 20:27-20:27)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기습기를 광고하면서, 4가지(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균 미검출을 근거로 ‘구조적으로 안전한 무결점기습’ 과 같은 다소 과장된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3.6.)
- 방송프로그램 : <LG U+ LTE 데이터 무제한(30초)>(2013.1.26, 14:30-14:31)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이동통신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LTE 데이터 무제한’ 이라 방송하고 있으나, 기본 데이터 용량 초과 시 속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제한 조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방송함.

사례 3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4.10.)
- 방송프로그램 : <LG U+ O70 player II (30초)>(2013.3.19, 07:29-07:30)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통신서비스를 광고하면서, 해당 제품은 실시간 드라마 시청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HDTV’ 자막과 함께 해당 제품 스크린에 MBC 드라마 장면이 노출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 내용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4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9.)
- 방송프로그램 : <경동나비엔(15초)>(2012.10.30, 09:51-09:52)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3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보일러를 광고하면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국가대표’, ‘콘텐츠 기술의 차이로 지켜온 대한민국 1등’ 등의 표현을 방송함.

사례 5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8.14)
- 방송프로그램 : <캐리비안 베이(15초)>(2013.7.19, 21:56-21:56)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워터파크를 광고하면서, ‘옥타곤 파티’는 입장 제한과 별도 입장요금이 있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6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5.19.)
- 방송프로그램 : <원더허리케인(8분)>(2013.3.27, 01:23-01:31)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운동보조기구를 광고하면서, 지방연소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버터 녹는 장면과 임의시험을 통해 측정한 53도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관련 기능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원더허리케인(8분)' >



사례 7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7.11.)
- 방송프로그램 : <매직아이스(10분)>(2013.6.10, 00:48-00:59)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
- 심의 · 의결 세부 내용

쿨링 수건을 광고하면서, 디지털온도계 등 단순 계측기를 이용한 임의시험을 통해 제품표면의 온도를 측정해 도출된 수치를 노출하여 해당 수치를 일반적인 체감온도 및 온도저하 효과로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매직아이스(10분)' >



사례 8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8.22.)
- 방송광고 : <인프레스 X 리믹스(15초)>(2013.7.12, 23:00-23:00)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골프채를 광고하면서, “25m이상 늘은 것 같습니다”, “20m가 증가되었다” 등 비거리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소개하여, 해당 수치를 일반적인 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인프레스 X 리믹스(15초)’ >



사례 9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9.12.)
- 방송프로그램 : <코웨이(30초)>(2013.8.23, 00:41-00:42)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정수기를 광고하면서, 하루 8잔 물마시기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여학생의 여드름이 없어진 장면과 일반인 광고 모델들이 “얼굴이 깨끗해졌나?”, “물을 꾸준히 섭취해가면서 보니까 얼굴에 혈색도 밝아지면서...”, “너 얼굴 진짜 좋아졌다”라고 하는 등 해당 제품의 효능에 있어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코웨이(30초)' >



사례 10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2.19.)
- 방송광고 : <이자녹스 X2D2 링클A440세럼(15초)>(2013.10.17, 23:45-23:45)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주름이 멈췄다”, “주름을 멈추세요” 등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객관적 임상시험이 아닌 리서치 조사자료를 근거로 제품의 효과를 언급한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이자녹스 X2D2 링클A440세럼(15초)’ >



사례 11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4.18.)
- 방송프로그램 : <효원상조(8분)>(2013.2.17, 16:44-16:52)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상조회사를 광고하면서, 수의에 대해 작은 자막으로 ‘제조방법 : 기계식’ 이라고 표시하였으나, 멘트와 자막으로 ‘한땀 한땀 정성스레 지은’ 이라고 표현하여 시청자가 수제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효원상조(8분)’ >



사례 12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9.12.)
- 방송광고 : <부모사랑 상조(15초)>(2013.8.5, 09:57-09:57)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상조사를 광고하면서, ‘2년만에 연봉 9천’, ‘2년반만에 1억5천’, ‘3년만에 2억5천’ 등 연봉에 대한 개인적 수령예상 금액을 언급하여, 해당 연봉이 일반적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부모사랑 상조(15초)’ >



사례 13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10.10.)
- 방송프로그램 : 〈SK-II 피테라 에센스(30초)〉(2013.8.31, 21:11-21:11)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일반인 체험자가 출연하여 개인의 체험을 언급하며, ‘매직링 피부나이 지수 10살 어려짐’ 등 공인되지 않은 실험기기의 측정 결과를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SK-II 피테라 에센스(30초)’ 〉



사례 14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3.21.)
- 방송프로그램 : 〈아놀드파마 방한부츠(8분)〉(2012.12.17, 06:44-06:52)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제2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방한화를 광고하면서, 소재에 대해 자막으로 ‘패딩 부분은 탄성과 발목보호를 위해 합성피혁 사용’ 이라 고지하고 있으나, ‘100% 통소가죽 방한부츠’ 라는 내용을 멘트와 자막으로 수차례 언급하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100% 소가죽제품으로 오인하게 하고, 미끄럼방지 기능에 대해 ‘미끄럼 걱정 없이!’, ‘빙판길, 눈길에도 끄떡없이!’ 라는 과장된 표현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아놀드파마 방한부츠(8분)’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21조(언어) ① 방송광고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표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방송광고는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광고는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단,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어투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음악) ① 방송광고에서는 외국어로 된 광고노래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외국어 방송채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방송광고는 동요 또는 민요(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 민요를 포함한다)를 개사하거나 편곡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7.25.)
- 방송광고 : 〈Volvik white color(20초)〉(2013.5.9, 10:08-10:08)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언어)제3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골프공을 광고하면서, “I am white collar. I only choose the best. This is my No. 1 choice...” 등의 멘트와 함께, “나는 화이트 칼라다. 나는 최고만을 선택한다...”라는 자막을 방송하는 등 불필요한 외국어를 과다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2.4.)
- 방송광고 : 〈박가부대(15초)〉(2013.11.13, 19:57-19:57)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2조(음악)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부대찌개 전문점을 광고하면서, 동요 ‘팽이치기’를 다음과 같이 개사·편곡하여 사용함. ≪수제햄이 맛있는 박가부대찌개/ 국물맛이 시원깔끔 박가부대찌개/ 맛있어요 수제햄 국물맛이 시원해/ 정성가득 건강가득 박가부대찌개/ 부대찌개 수퍼스타 박가부대찌개≫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23조(어린이·청소년) ① 방송광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품성과 정서, 가치관을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송광고는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어린이가 상품과 관련된 상업문이나 광고노래, 또는 제품의 특징을 전달하는 표현
2. 상품의 소유로 어린이의 능력이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표현
3. 상품을 소유하지 못하면 열등감을 갖거나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표현
4. 상품을 구입하도록 어린이를 충동하거나 부모등에게 상품 구매를 요구하도록 자극하는 표현
5. 어린이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6. 어린이를 위험한 장소에 있게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표현
7. 어린이의 건전한 식생활을 저해하는 표현

③ 장난감, 게임기 및 기타 어린이들의 관심을 끄는 상품에 대한 방송광고는 어린이의 판단과 경험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크기와 비례를 실제 이상으로 보이게 하는 표현
2. 장난감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지 분명하지 않은 표현
3. 장난감과 실제 물건이 혼동될 수 있는 소리나 표현

④ 어린이대상 방송광고에서는 주된 상품 이외의 부수적인 제품이나 경품을 강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6.27.)
- 방송광고 : <듀오덤(30초)>(2013.5.5, 21:53-21:54)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어린이·청소년)제2항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의료기기를 광고하면서, 어린이 모델이 “내일이면 다시 이빠질거야” 등 광고노래의 일부분을 전달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듀오덤(30초)’ >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2.19.)
- 방송광고 : <또봇 놀이펜(20초)>(2013.11.19, 07:15-07:15)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3조(어린이·청소년)제2항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교육완구를 광고하면서, “또봇하고 공부할래요”와 같이 어린이가 해당 제품명 일부를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또봇 놀이펜(20초)’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제24조(경품류 및 할인특매) ① 경품류 및 할인 특매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행기간 및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행사에 관한 방송광고에서 경품류 및 사은품을 언급한 경우에는 허위·기만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8.21.)
- 방송광고 : <다우닝(30초)>(2013.7.22, 07:59-07:59)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4조(경품류 및 할인특매)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가구전문점을 광고하면서, 자막으로 '다양한 혜택 여름 정기 바겐세일 - 카우치형 가죽소파 189만원, 20조 한정특가' 등 할인특매 행사를 안내하면서, 행사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방송함.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장 품목별 기준

제26조(건강기능식품) ①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건강기능식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최고”, “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현. 이 경우 외국어 중 “베스트”, “모스트”, “스페셜” 등도 또한 같다.
3.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하고 있다는 내용. 다만,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 포함)의 표현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7.25.)
- 방송광고 : 〈팻 다운(15초)〉(2013.6.27, 19:50-19:50)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건강기능식품)제1항· 제2항제2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면서,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하지 않고, 사전심의 내용 중에 포함되지 않은 최상급 표현인 '다이어트 마스터' 라는 멘트가 포함된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팻 다운(15초)'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장 품목별 기준

제27조(의약품) ①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과 성능을 오인하게 할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명칭·품질·제조방법·용량·효능 또는 성능 등에 대하여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한 표현,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또는 의약품집에 실려있는 내용이나 의학적·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효능이나 성능을 광고하는 경우, 사용 전·후의 비교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거나 적응증상을 위협적인 표현으로 표시 또는 암시하는 내용

3.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하는 표현 또는 “구입·주문해도” 기타 이와 유사한 표현

4.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학적인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5.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 다만, 국민보건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효능·효과에 대하여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등의 내용이나,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

7. 주성분이 아닌 성분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

③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2. 광고대상을 효능·효과와 무관하게 특정 대상자에 한정하는 표현

3.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④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품명을 노래가사로 사용하거나, 제품명을 연호하는 표현 또는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2.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관련되는 질병의 증상이나 수술장면등의 위협적 표현

3. 질병에 대한 불안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저속한 표현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 또는 암시하는 내용

⑤ 의약품에 관한 방송광고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및 보조인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자(모델의 분장포함)를 광고모델로 사용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의약품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대상 의약품

2. 성병, 성기, 부인과 질현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

⑦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12.26.)
- 방송광고 : <이기탄(15초)>(2013.11.27, 09:01-09:01)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의약품)제7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일반의약품을 광고하면서, 관계 법령에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심의 받은 사실(광고심의필 : 광고심의 받은 번호)을 표시하지 않고 방송함.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장 품목별 기준

제31조(화장품) 화장품에 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제품의 명칭과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2. 화장품의 부작용을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3.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현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10.24.)
- 방송광고 : <자윤수 진(6분)>(2013.9.17, 08:48-08:54)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1호, 제31조(화장품)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잡티, 기미, 주름, 처짐, 수분부족’ 노화의 대표문제 5가지 이제 복합처방 헤드 립니다’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고, ‘기미완화’ 등 근거가 불확실한 제품의 효능을 언급하였으며, 한의사 복장을 한 화장품 개발자가 출연하여 제품의 효능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자윤수 진(6분)’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장 품목별 기준

제37조(여행·관광등) ① 여행·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해당 상품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요금, 숙박요금, 식사요금, 가이드 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와 여행지에서 선택에 의하여 지출하게 되는 선택경비(선택관광 경비, 안내원 봉사료 등)의 유무·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유류할증료의 경우 별도로 그 금액을 표시할 수 있으며, 변동 가능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행 및 관광 등에 관한 방송광고는 일부에만 적용되는 최저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색, 크기 및 모양 등으로 구별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8.22.)
- 방송광고 : <제주 명품 2박3일 여행(8분)>(2013.7.14, 10:44-10:52)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여행·관광등)제1항·제2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비용 및 숙박 기준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여행상품 이용 시즌에 따라 가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일부에만 적용되는 가격을 일반가격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함.

< 관련자료 : '제주 명품 2박3일 여행(8분)'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장 품목별 기준

제38조의3(대부업) ①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시청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대부업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로 정한 사항

② 대부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등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및 대부업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 경고 문구 등은 상호 글자 크기와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그 밖에 대부업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2.21.)
- 방송광고 : 〈러시앤캐시(15초)〉(2012.12.11, 10:54-10:54)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의3(대부업)제1항제5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대부업을 광고하면서, “즐거운 금융 빠른 금융”, “중국인이 필요했던 선진금융이로다” 등의 멘트와 ‘러시앤캐시 러진콰이진은 러시앤캐시의 중국진출 브랜드입니다. “등의 자막 만을 방송하고,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지 않고 광고를 방송함.

〈 관련자료 : ‘러시앤캐시(15초)’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3장 품목별 기준

제40조의3(상조업) ① 상조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2.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수감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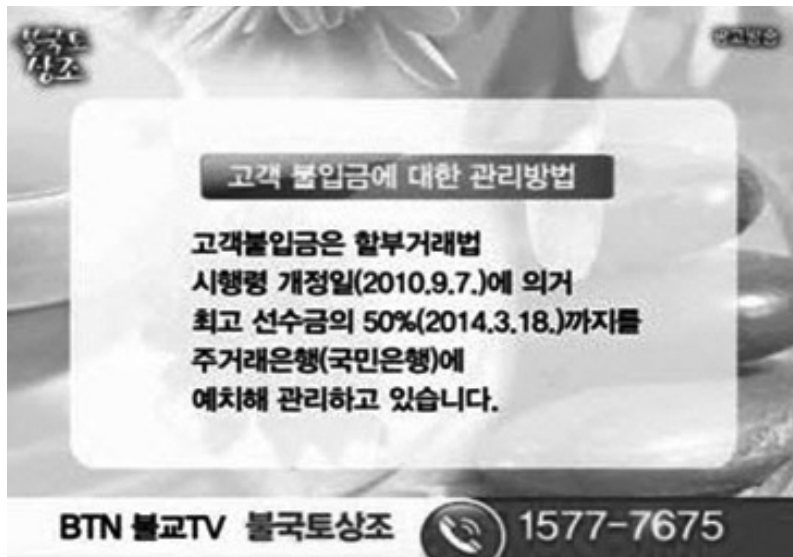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상조업에 대한 방송 광고(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

1. 2분 미만의 방송광고의 경우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화면의 1/60이상의 크기로 방송 시간의 1/5 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화면(화면의 1/2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 1/150이상(최소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사례

- 결정 사항(의결일) : 주의(2013.10.24.)
- 방송광고 : <불국토상조(4분)>(2013.9.23, 11:19-11:23)
- 적용조항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의3(상조업)제1항제1호「제2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상조업을 광고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인 중도해약환급금의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재무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지 않고 방송함.

< 관련자료 : '불국토상조(4분)'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제9절 기타

제56조(방송광고의 제한) ①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인물주인공 또는 만화주인공을 이용한 방송광고는 당해 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방송하여 어린이에게 방송 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내용의 방송광고는 예외로 한다.

② 어린이를 주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어린이 의약품의 광고 및 유료전화정보서비스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토막광고시간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상품 등의 방송광고를 편성·방송하여 시청자에게 방송프로그램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방송광고시간의 제한)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규칙에 따라 방송광고가 허용된 주류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시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1. 텔레비전 방송광고: 07:00 - 22:00

2. 라디오 방송광고: 17:00 - 익일 08:00 다만, 08:00-17:00의 시간대라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전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② 청소년유해매체물(영화, 음반, 비디오, 간행물 등을 포함한다)의 광고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광고시간 또는 전후 토막광고시간에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례 1

- 결정 사항(의결일) : 권고(2013.6.26.)
- 방송광고 : <뽀로로 보리차(15초)>(2013.5.31, 09:43-09:43)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제56조(방송광고의 제한)제1항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음료를 광고하면서,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뽀롱뽀롱 뽀로로) 전 토막광고시간대에 프로그램의 만화주인공이 등장하는 광고를 방송함.

사례 2

- 결정 사항(의결일) : 경고(2013.9.12.)
- 방송광고 : 〈Cass Light(15초)〉(2013.8.24, 21:34, 21:41, 21:45)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7조(방송광고시간의 제한)제1항제1호
- 심의·의결 세부 내용
주류를 광고하면서,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시간대(07:00-22:00)인 21시 34분경 등 3회에 걸쳐 방송함.

〈 관련자료 : 'Cass Light(15초)' 〉



2013년 The Deliberations of 2013 Broadcasting Contents
방송심의 사례집

발행일 | 2014년 2월

발행인 | 박 만

발행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우)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5~19층

전화 | 02)3219-5232

인쇄처 | 크리홍보(주) 02)737-5377

이 사례집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발간되었습니다.